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6.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1. 세　입 ····· 1

2. 세　출 ····· 3

가. 개　요 ····· 3

나. 전　용 ····· 3

다. 수입대체경비 ····· 4

라. 이　월 ····· 5

마. 불　용 ····· 6

3.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주요 특징 ····· 7

※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 11

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 17

1. 개　요 ····· 17

2. 총　괄 ····· 19

3. 한반도 평화 조성 ····· 24

가. 개　요 ····· 24

나.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26

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 31

라.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 38

마.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 43

바. 동북·중앙아시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47

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53

4. 정상외교 ····· 58
가. 개 요 ····· 58
나. 정상 및 총리외교 ····· 58

5.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61
가. 개 요 ····· 61
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62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66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70
가. 개 요 ····· 70
나.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71

7. 국제기구분담금 ····· 76
가. 개 요 ····· 76
나. 기타 의무분담금 ····· 77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79

8. 다자관계 협력 ····· 87
가. 개 요 ····· 87
나. MIKTA 중견국 외교 ····· 88
다.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92

9. 국제 안보 협력 강화 ····· 97
가. 개 요 ····· 97
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 98
다.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 105

10. 국제개발협력 ····· 109
가. 개 요 ····· 109
나. 인도적지원(ODA) ····· 113

11. 국제법적 대응 강화 ····· 120
가. 개 요 ····· 120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 121

12.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 125
가. 개 요 ····· 125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126
다.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 139
라. 디지털 공공외교 ····· 142

13.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 147
가. 개 요 ····· 147
나. 재외국민 보호 ····· 148
다. 영사서비스 지원 ····· 152

14. 경제외교 ····· 156
가. 개 요 ····· 156
나. 2025 APEC 의장국 ····· 157
다.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 163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 170
가. 개 요 ····· 170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 171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 185
가. 개 요 ····· 185
나.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 187
다. 국내외 교육훈련 ····· 195
라.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 206
마.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 212
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219

17. 재외공관 운영 ····· 224
가. 개 요 ····· 224
나.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 225
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232

18. 외교행정지원 ····· 235
가. 개 요 ····· 235
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 240

19. 한국국제협력단 ····· 243
가. 개 요 ····· 243
나. 총 괄 ····· 246
다. 국별 협력사업 ····· 254
라. 글로벌 프로그램 ····· 267
마.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 272

20. 한·아프리카재단 ····· 278
가. 개 요 ····· 278
나. 수 입 ····· 278
다. 지 출 ····· 278
라. 검토의견 ····· 281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 296

1. 총 괄 ····· 296

2. 검토의견 ····· 307
가. 수 입 ····· 307
나. 지 출 ····· 319

Ⅳ.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 355

1. 총 괄 ····· 355
2. 재정상태표 분석 ····· 356
3. 재정운영표 분석 ····· 359
4. 순자산변동표 분석 ····· 364

Ⅴ.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 367

1. 총 괄 ····· 367
2. 성과체계 현황 ····· 370
3.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373

Ⅵ.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76

I.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526	610	609	-	2	83	115.8
경상이전수입	7,203	19,920	19,292	-	628	12,089	267.8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61,745	208,454	208,451	-	3	46,706	128.9
수입대체경비 수입	104,205	129,029	129,029	-	-	24,824	123.8
합 계	**273,679**	**358,013**	**357,381**		**633**	**83,702**	**130.6**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36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573억 8,1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837억 200만원이 증가(130.6%)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수입 120억 8,9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67억 6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48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366**	**284**	
51항 관유물대여료	7	284	국유재산 건물 임대 수입액 감소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액 증가
511목 토지대여료	7	-	
512목 건물대여료	-	284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59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359	-	
12관 경상이전수입	**12,088**	-	
56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	-	
564목 징계부과금	12	-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24	-	국고보조금(분담금) 반환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액 증가
571목 변상금	20	-	
572목 위약금	4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12,052	-	
593목 법정부담금	3,722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8,330	-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6,706**	**-**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38,696	-	사증 및 공증 수수료 및 출국 수수료(질병퇴치기금 폐지)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38,696	-	
69항 잡수입	8,010	-	
691목 기타잡수입	8,010	-	
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	**24,824**	-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4,824	-	여권 수수료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24,824	-	
합 계	**83,984**	**284**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4,221,776	4,196,209	4,107,895	98.4	97.9	2,677	85,637

※ 예산현액(4,196,209) = 당초예산액(4,221,776) - 추경(△49,601) + 전년도 이월액(1,934) +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22,100)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1,962억 900만원, 이 중 4조 1,078억 9,500만원을 집행(97.9%)하였고, 26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56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환차손 및 물가인상	5,293
	적정비목으로의 예산 조정	2,116
	국내외 출장여비 부족	629
	연수생 체재비 부족	311
	노후화 장비 교체	270
	통합인사성과과리시스템 재구축	267
	기타	187
합 계		9,073

2025년도 전용액은 총 90억 7,300만원으로, 환차손 및 물가인상 53억, 국내외 출장여비 부족 6억, 연수생 체재비 부족 311백만원, 노후화 장비 교체 등에 전용되었음.

다.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초과지출 승인액					
외교·통일	123,893	63	-	-	22,100	146,056	145,915	-	141	22,100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123,893	63	-	-	22,100	146,056	145,915	-	141	22,100

2025년도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238억 9,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3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221억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1,460억 5,600만원임.

이 중 1,459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라.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	2,677
	소　　계	**2,677**
합　　계		**2,677**

2025년도 이월 규모는 26억 7,700만원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26억 7,700만원) 발생 등이 주요 사유임.

마.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4,578
	소 계	**4,578**
계획변경 또는 취소	행사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1,346
	소 계	**1,346**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298
	소 계	**1,298**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78,415
	소 계	**78,415**
합 계		**85,637**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856억 3,7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45억 7,8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13억 4,600만원, 예산 절감 12억 9,800만원 및 집행잔액 784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3. 2025년도 외교부 소관 결산 주요 특징

□ 2025년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결산 심사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외교부는 대통령령인 직제가 아니라 부령을 근거로 여러 센터·팀을 운영하여 정원 외 공무직 인력으로만 운영하는 등 직제를 우회한 조직 운영 관행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통한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정원 부재를 이유로 공무직 연구원으로 전담 인력을 대체·고착화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번 1번)

□ 둘째,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집행률의 편차가 매년 크고 집행액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국가재정법」 상의 성과주의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번 5번)

□ 셋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은 세부 내내역사업이 연도별로 집행률의 편차가 크거나 최근 집행 내역이 부재한 사업, 외교부 내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용역 내용 및 비목 편성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내역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함. (연번 6번)

□ 넷째, 한-인도양 협력기금, APEC 미래번영기금, AfCFTA 협력기금 의 경우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분담금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외교부는 일괄적인 배분 방식을 벗어나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분기별 집행 소요에 맞추어 분담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연번 12번)

□ 다섯째, 「MIKTA 중견국 외교」 사업은 MIKTA 회의가 평년에도 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져 예측이 가능함에도 의장국 수임 관련 예산 추계 부족으로 불용이 과다 발생한바, 일정 주기로 돌아오는 의장국 수임 사업 등에 대해 예측 가능한 외교 일정과 집행 여건을 치밀히 분석하여 과다 편성 및 집행 부진의 연례화를 막도록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연번 13번)

□ 여섯째,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이 사실상 고정된 구조임에도 매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관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불합리한 예산 편성 요소를 차단하고 엄격한 정산·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 실질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번 20번)

□ 일곱째, 2025년 APEC 의장국 사업의 경우 만찬장 선정 후 행사 규모 확대 및 운영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본래의 만찬장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바, 외교부는 향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천년미소관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번 26번)

□ 여덟째, 국립외교원은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운영 시 교육생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위탁교육비를 세입 조치 없이 자체 계좌로 직접 집행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법정 세입·세출 절차를 준수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타 기관 사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를 참고하여 동 교육비를 '수입대체경비'사업 등으로 전환·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38번)

□ 아홉째,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의 일환인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이 참석인원 및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양안보 심포지움」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적법한 과업 변경 및 감액 정산 절차 없이 행사대행 용역 이월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관련 계약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번 39번)

□ 열째,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관련 국회는 2008년부터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등 반복적으로 환차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외교부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바, 외교부는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용 등으로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번 40번)

□ 열한째, KOICA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운영 전반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 장기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

업을 수탁할 경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KOICA는 신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용역의 내용 및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번 54번)

□ 열두째, 한·아프리카재단 감사 공석 장기화 등 관련, 외교부는 재단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정 결산 절차의 준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임명된 감사가 조속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석인 상임·비상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임명하며, 재단은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번 55번)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일반회계	총괄		외교부 내 직제를 우회한 각종 센터 및 팀의 인력 운영 개선 필요	외교부는 주요국 정세 분석 및 외교지원 등 상시·지속성이 검증된 기능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통한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운용할 것	'24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				소모품 단가계약의 법령 위반 및 사무용 기기 임차료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향후 소모품 단가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년도 계약으로 공고 및 체결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모품 구매 단가계약과 사무기기 임차 방식이 이중 운용되는 행정적 모순을 정비하여 매년 반복 집행되는 임차료 예산을 단계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전환·편성하는 등 조달 방식을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3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북핵 문제 집행 부진 관련 시정요구 이행 미흡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사업 효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	'24년 시정요구 (주의)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647	한반도 평화공존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대행 용역 집행 부적절	외교부는 행사 용역계약에 있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목적외 지출을 지양하고, 인쇄비 등 부분에 있어 예산 절감을 노력하며, 행사기획업무 위탁 범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5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34	제주포럼 및 제주평화연구원 사업 보조의 법적 근거 명확성 부족 시정 필요	외교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지자체로의 완전 이관 등 전면적인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6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특별협력관계 강화	5,133	'미중 관계 관련 유관국 협의회 개최' 연례적 예산 미집행 시정 필요	외교부는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세 변화를 이유로 실집행 없는 예산 편성을 지속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가재정법」상의 성과주의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7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616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 구조조정 필요	외교부는 다년간 집행이 부진하고, 외교부 내 타 부서와의 업무중복이 우려되며,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비목 편성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23년 시정요구 (주의)
8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420	추경 편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외교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철저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라는 원칙을 준수할 것	'22년 결산 지적사항 (예결위) '25년 예산안 지적사항 (외통위)
9		정상 및 총리외교	29,557	대통령 해외순방 취소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의 필요	외교부는 정상외교의 보안성과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숙박·차량·용역 등 관련 계약 체결 시 취소조건과 환불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방 취소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10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908	해양 및 대륙동남아 중소국가 관계 유지 및 관리 사업 집행 부진	당초 편성하였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르러 단발성 고위급 방문으로 예산 일부를 집행한 것은 집행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외교부는 동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11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11	한-러대화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외교부는 경상 운영비의 과도한 포함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사업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2	일반 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515	안정적인 한-아랍 관계 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보조사업 관리 필요	외교부는 부적정한 집행 및 재단 심의지침 위반으로 지적이 수 차례 있었지만 외교적 중요성이 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하여 충분한 외교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	'21년 결산 지적사항 (예결위) '16년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
13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83,253	한-인도양 협력기금 등 2025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 집행 저조	외교부는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분기별 집행 소요에 맞추어 한-인도양 협력기금, APEC 미래번영기금, AfCFTA 협력기금 등 분담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14		MIKTA 중견국 외교	244	의장국 수임 관련 예측 부실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및 대규모 불용 발생에 따른 향후 정밀한 예산 추계 필요	외교부는 일정 주기로 돌아오는 의장국 수임 사업 등에 대해 다자회의 계기 개최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교 일정과 집행 여건을 분석하여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제고할 것	
15		분쟁 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51	장기적 집행 부진 및 저성과 사업 대상 구조조정 필요	외교부는 장기간 집행 부진 및 그에 따라 성과가 적은 내내역 사업들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16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05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정확성 도모 필요	외교부는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정당한 비목을 설정하고, 사후적 예산 전용을 통한 관행적 예산 소진을 지양할 것	'25년 예산안 지적사항 (예결위)
17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문제 조속 해결 필요	외교부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나포 선박 관리 예산을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선박 억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24년 결산 지적사항 (예결위)
18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43	국외여비로의 지나친 전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예산 편성 필요	외교부는 정상, 장관급 참석 고위 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의전실-주요 실국 간 예산집행 관계를 재정립하여 지나친 전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를 달성할 것	
19		인도적지원 (ODA)	677,503	인도적 지원 사업 성과 관리 개선 필요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준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20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23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지원 계획 조기 수립 필요	외교부는 향후 입후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노력할 것	
2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12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관례적 용역계약의 부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전환 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형태의 정책연구용역(260목) 사업을 민간경상보조(320목) 과목으로 개편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정산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제고할 것	'23년 결산 지적사항 (외통위)
22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설치) 사업' 의 집행관리 개선 필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사업 추진 시 재외공관 예산 송금 단계에서의 환율 산정을 철저히 하여 과다 교부 및 불필요한 반납·정산 절차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 초기 수요조사와 현지 협력기관의 규격 및 단가 검증을 정교화하여 예산 과다 편성과 집행 잔액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23	일반 회계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2,153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기념행사의 예산 집행 개선	양자 외교계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가 기념일 행사나 공관 신설 개소 행사에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타 세부사업 예산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할 것	
24		디지털 공공외교	1,952	모파 스튜디오(MOFA Studio) 촬영 실적 저조 및 정례 기획 제작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모파 스튜디오의 이용 실적 급감 등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수동적 촬영 지원에서 벗어나 콘텐츠 기획 및 편성을 정례화하는 등 스튜디오 가동률 제고와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5		재외국민 보호	13,959	해외위난 대응 예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해외 위난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하되, 최근의 집행실적과 국가별 위험도, 지역별 위난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긴급대피 지원 등 예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	
26		영사서비스 지원	720	재외공관 영사민원 전자결제 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공관별 전자결제 이용실적과 실제 수수료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주재국의 제도적·기술적 여건 및 실제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할 것	
27		2025 APEC 의장국	118,105	APEC 만찬장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외교부는 향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천년미소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 방알을 면밀히 모색할 것	'25년 전체회의 지적사항 (외통위)
28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549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시정요구 이행 미흡	외교부는 직제 반영, 인력운영 구조 개선 및 청사 내 입주 등 미이행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24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9				경제안보외교센터 사업 위탁 부적절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하여 본연의 고유 업무는 가급적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외부 위탁을 지양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30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소관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불일치 및 편성 정확성 제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다자 회의 일정 및 현지 여건을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할 것	
31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채용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 및 인건비 편성 현실화 필요	공관별 현지 물가 및 임금 수준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여 현실적인 인건비를 산정하고, 대상국별 채용 여건과 현지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용·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집행률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것	
32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극복 한시 특례 규정 적용의 부적정성 개선 및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에 긴급성이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극복 한시 특례 규정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회계연도 말 예산 불용 회피를 목적으로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연초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	
33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등 연례적 다자회의 예산 추계 및 편성의 정교화를 통한 자체 전용 최소화 필요	정례적·하반기 집중 다자 회의의 집행 실적, 필수 참석 규모, 예상 출장 경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 단계부터 예산 요구액을 현실화하고, 사업 간 빈번한 자체 전용 관행을 개선할 것	
34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 전용 최소화 및 편성 정확도 개선 필요	다자 회의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요구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편성 정확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내내역사업 간 전용을 최소화할 것	'24년 시정요구 (주의) '24년 결산 지적사항 (외통위)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35	일반 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04	연구 성과물 온·오프라인 배포 비율 조정 및 디지털 홍보 강화를 통한 예산 집행 효과성 제고	주요 발간물 수혜 기관 대상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오프라인 배포 부수를 축소하고 온·오프라인 배포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인쇄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이메일 뉴스레터 등 디지털 확산 채널을 확대 적용하여 연구 성과의 효과성과 정책 환류성을 제고할 것	
36				국립외교원 연구부 산하 연구센터의 구조적 중복성에 따른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연구부 소속 인력의 단순 중복 편성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센터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부 본부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하거나 차별성이 없는 센터의 존속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37		국내외 교육훈련	7,132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강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외국어 전임강사강사 간 실제 강의 실적 차이가 크고 제2외국어 강사의 강의 시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부내 직원 대상 외국어 교육과정(비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전임강사의 신규 과업으로 도입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22년 결산 지적사항 (외통위)
38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3	위탁교육비 처리 방식의 적정성 검토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의 위탁교육비를 세입 처리 없이 자체 계좌로 수령·지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식 세입·세출 절차를 거치거나 '수입대체경비'로 지정·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탁교육비 집행의 절차적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9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100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행사 축소·변경 개최에 따른 변경계약 및 감액정산 절차 미준수	향후 외교 행사 추진 시 사정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변경 등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과업 내용의 실질적 축소·변경에 따른 철저한 감액 정산 등 회계 처리를 엄정히 이행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	'24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40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90	외교정보기획국 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정밀도 제고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조직 신설 이후 대폭 증액된 사업 예산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과 실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을 최소화할 것	'24년 시정요구 (주의)
41				정책연구용역의 이월 관행 개선 필요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연속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연구 완료 및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42				해외공관 주재관 정보활동 지원 등 내내역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필요	해외공관 주재관 정보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당초 취지인 현장 정보 수집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관별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여 예산 집행률과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43	일반 회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48,954	환위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교부는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용 등으로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지양할 것	'22년 결산 지적사항 (예결위)
44				일반연구비 이월 부적절	외교부는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일정을 적기에 관리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	
45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24,367	재외공관 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	외교부는 최근 집행실적과 실제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46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1,617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반복적 집행부진에 따른 운영계획의 정밀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향후 청년인턴 운영계획 수립 시 부서별 인력수요와 채용 가능 규모,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정밀성을 제고할 것	
47	일반 회계 (한국 국제 협력단)	총괄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배당 및 이사회 정상화 노력 필요	KOICA는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배당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회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에는 있으나 공석인 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할 것	
48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개최 필요	KOICA는 환위험관리위원회 의사결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서면보다 대면을 통한 환위험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내실 있는 환위험 관리	
49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관련 규정 제정 필요	KOICA는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관련 명시적 기준이 없어 계약별·현지 관행별로 처리가 상이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보증금 보관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근거를 마련할 것	
50		국별협력사업	81,926	정부 감액 기조에 따른 국별 협력사업 취소 및 예산 처리 부적절	KOICA는 국별협력사업의 우리 정부 단독 결정에 따른 취소를 지양하고, 사업취소 관련 구체적인 요건, 예산 반납 등 절차 및 잔여예산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51				지나친 사업계획 변경 지양 및 실효적 사업관리 필요	KOICA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무분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 사업계획 변경 심의 기준을 엄격히 하며, 연례적인 사업계획 변경 현황을 사업 정기점검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유형의 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분야 및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52				베트남 대상 국별협력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KOICA는 베트남 대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수원국 내 절차 및 사업 중복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가능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21년 결산 지적사항 (외통위)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53	일반회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ODA)	143,026	해외봉사단 홍보 등 관리 체계화 필요	외교부와 KOICA는 물리적인 예산 통합에서 나아가 시행기관 간 운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54		민관협력사업 (ODA)	65,00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용역의 특정 기관 장기 독점적 수행 개선 필요	KOICA는 신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용역의 내용 및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할 것	
55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총괄		감사 공석 장기화 및 이사회 구성 부실 문제 해결 필요	외교부는 재단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정 결산 절차의 준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임명된 감사가 조속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석인 상임·비상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임명하며, 한·아프리카재단은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 방안 등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24년 결산 지적사항 (외통위)
56				임직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철저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임직원의 규정에 따른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7				아프리카 측 인사 초청 지원 관련 규정 마련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향후 초청 인사 경비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 지원 확인 절차, 중복 확인 시 공제 또는 조정 기준, 확인 근거자료 보관 방법 등을 명문화할 것	
58				행사장 관련 임차 예산 절감 노력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행사장 선정에 있어 공공기관의 시설 임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	
59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764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 기업 선정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검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등 17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4조 2,217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을 통해 496억 100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3,400만원 및 수입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221억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4조 1,962억 900만원임.

이 중 4조 1,07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56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외교부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4 결산	2025년				2026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3,911,217	4,221,776	4,196,209	4,107,895	97.9	3,562,057
1. 한반도 평화 조성	13,470	22,101	16,557	14,095	85.1	23,625
2. 정상외교	26,058	29,557	30,320	25,142	82.9	28,993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397	4,680	4,680	3,853	82.3	4,267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4,945	11,501	11,501	10,948	95.2	15,006
5. 국제기구분담금	707,173	826,224	798,335	782,670	98.0	681,795
6. 다자관계 협력	25,733	21,585	21,636	20,946	96.8	21,268
7. 국제 안보 협력 강화	4,795	4,848	4,875	4,150	85.1	5,148
8. 국제개발협력	1,893,806	1,967,014	1,933,644	1,929,160	99.8	1,487,103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6,310	6,523	6,523	6,108	93.6	6,774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0,812	22,475	22,489	20,813	92.5	25,561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711	14,679	14,816	12,061	81.4	14,862
12. 여권업무 선진화	158,899	123,893	146,056	145,915	99.9	139,383
13. 경제외교	11,171	112,566	129,841	120,833	93.1	14,014
14.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10,386	2,698	2,698	2,448	90.7	3,021
15.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3,057	14,945	15,213	13,298	87.4	15,962
16. 재외공관운영	744,765	801,182	801,506	775,055	96.7	833,781
17. 외교 행정지원	212,727	235,305	235,519	220,401	93.6	241,494

2. 총괄

□ 외교부 내 직제를 우회한 각종 센터 및 팀의 인력 운영 개선 필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대통령령) 은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인 직제에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조직의 무분별한 확장과 변칙적인 인력 증원을 통제하고, 공무원 정원의 적정 관리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부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 단순 명칭 및 업무분장 규정만을 근거로 여러 센터・팀을 운영하여 해당 기구를 전담할 공무원 정원은 직제(대통령령)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정원 외 공무직 인력으로만 대체하거나[2],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력으로만 운영하고 있음[3].

---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중국 정세분석팀, 일본 정세조사분석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국제기구・원자력국) ① 국제기구・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이에 지난 20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등”[4]에 대해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요구[5]한 바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부처 간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직제 개정을 우회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6]이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여러 실국에서 여전히 이와 유사한 방식의 직제를 우회하는 조직 운영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4년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경우 외교부는 “수시 직제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심사과정에서 불추진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함.

위와 같은 문제점에 해당하는 각종 센터 및 팀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5.8., pp.126~129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8., p.758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출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4.11., pp38~40

< 외교부 내 주요 센터 및 팀 운영 현황 >

구분			국제기구 인사센터	중국 정세 분석팀	일본 정세 조사분석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센터장/팀장			0명[7]	0명	0명	1명[8]
연구원	공무직	가급	0명	0명	0명	0명
		나급	2명	2명	0명	2명
		다급	0명	2명	2명	1명
계			2명	4명	2명	4명

(2025년 5월 말 현원 기준, 자료: 외교부)

위 센터 및 팀은 모두 센터장 및 팀장이 부재하거나 전담 인원이 아닌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인력은 전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직제 개정을 통한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원외 기구가 상설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정규 공무원의 경우 부처 내 전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적인 보충이 가능한 반면, 공무직 인력은 센터·팀별 개별 채용 절차(공고, 서류, 면접 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결원에 따른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함.

이에 인건비의 집행 부진과 그에 따른 불용이 되풀이되는 등 예산집행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7) UN과장이 센터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음.

8) 중남미국 심의관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음.

< 최근 4개년 외교부 내 주요 센터(팀)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국제기구 인사센터	55	46	9	83.6	55	54	1	98.2	111	85	26	76.6	114	105	9	92.1
중국 정세 분석팀	466	366	100	78.5	477	383	94	80.3	490	407	83	83.1	252	187	65	74.2
일본 정세 조사분석팀	137	99	38	72.2	140	103	37	73.6	144	88	56	61.1	148	92	56	62.2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114	97	17	85.1	116	102	14	87.9	113	107	6	94.7	186	198	0	106.5

(자료: 외교부, 단위: 백만원, %)

또한 해당 센터 및 팀은 정식 하부조직 및 정원의 부재로 정규 기본경비 내 인건비를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일반 주요사업비 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부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러한 편성은 총액인건비 한도 규제[9]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의 정원·인건비 통제를 회피하면서 사실상 정원외 인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

아울러 순수한 정책·외교 사업 수행에 투입되어야 할 주요사업비에 조직 유지용 경비가 은닉·혼재됨으로써 사업 성과의 착시를 일으키는 결과도 낳고 있음.

다만, 외교부는 국제지구 인사센터의 경우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정기직제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정원을 확보하지

9) "총액인건비제도는 정부가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지급할 인건비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보수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한시적 인력 증원(기준정원의 3~5% 이내)이나 직급 상하향 조정을 시행기관 자율로 할 수 있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자율항목 예산을 절감하여 성과상여금 확대나 맞춤형 복지 점수 지원에 활용 가능함."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026.3.

못했다고 밝힘.

이에 향후 외교부는 주요국 정세 분석 및 외교지원 등 상시·지속성이 검증된 기능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통한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정규 정원 부재를 이유로 공무직 연구원으로 전담 인력을 대체·고착화하는 방식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한반도 평화 조성

가. 개 요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지속 추진, 동북아·중앙아시아지역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본예산은 221억 100만원, 추경에 따른 예산 현액은 164억 8,400만원이고 이 중 85.5%에 해당하는 140억 9,500만원이 집행됨.

< 한반도 평화 조성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평화조성				13,470	22,101	16,484	14,095	23,625
	[113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828	988	988	732	919
		[11] 일반	[40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828	988	988	732	919
	[1132] 평화체제구축지원			2,636	3,090	3,090	2,648	2,962
		[11] 일반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517	647	647	538	574
		[11] 일반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78	834	834	834	892
		[11] 일반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241	1,609	1,609	1,276	1,496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88	5,133	5,133	4,825	7,500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88	5,133	5,133	4,825	7,500
	[1134] 동북 · 중앙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813	9,470	2,853	2,110	9,397
		[11] 일반	[401] 동북 · 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813	2,616	2,616	1,998	2,637
		[11] 일반	[40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6,854	237	112	6,760
	[113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005	3,420	4,420	3,780	2,847
		[11] 일반	[401]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975	3,420	4,420	3,780	2,847
		[11] 일반	[404]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30	-	-	-	-

나.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주요국 협의를 통해 북핵 대화 여건 마련 및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를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 촉진 전략 수립 및 향후 비핵화 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9억 8,800만원이고, 이 중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988	-	-	-	988	732	-	256	74.1
- 북핵문제 관련 협의	476	476	-	26	-	502	409	-	93	81.4
-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272	272	-	△26	-	246	154	-	92	62.6
-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240	240	-	-	-	240	169	-	71	70.4

□ 북핵 문제 집행 부진 관련 시정요구 이행 미흡

세부사업「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2024년 외교부 직제개편에 따라 「북한 핵문제 대처」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2025년 본예산 9억 8,800만원 중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통합 경과 >

(단위 : 백만원, %)

2016~2024					2025~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북한 핵문제 대처」 (1131-401)	북핵수석대표 및 실무협의	248	164	66.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1131-401)	북핵문제 관련 협의	476	409	85.9
	북핵문제 관련 양·다자 협의	282	197	69.9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1131-402)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	75	53	70.7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272	154	56.6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210	162	77.1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24년 신설 내역사업	254	252	99.2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240	169	70.4

(자료: 외교부)

국회는 2024년도 결산에서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에 대해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과 지속적인 집행률 부진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한계의 방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국민적 관심 유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용성 등 북핵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절차를 재정비할 것에 대한 주의를 시정요구하였음.

외교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음.

< 2024년 결산 북핵 문제 집행 부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 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지적사항]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된 반면, 집행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불용률은 28.5%로 매우 높음. - 2024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행정비용이 일부 감소했다고 하나, 장기간 누적된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결과임. - 조직 개편에 따라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구체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하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국민적 관심 유도 부족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절차를 재정비할 것	주의	○ '25년 하반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북핵문제 관련 협의 내역사업 실집행률을 81.4%로 제고 - 고위급 협의 및 북핵수석대표·실무그룹협의는 참여국 간 일정 등 협의하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국내외 정세·여건 변화에 특히 민감한바, 올해 ▲탄핵 및 대선 국면 ▲미·일 신행정부 출범 상황 고려, 상반기에는 협의가 활발히 개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각종 외교행사(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및 주요국과의 각급 협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우리 대북정책 설명 및 지지 확보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함. -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 관여 및 공조 의지 강화로 인해 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자료: 외교부)

그러나 세부사업「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사업의 불용률은 25.9%로 여전히 높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시정요구사항에서 언급한 북핵수석대표 활동에 해당하는 내내역사업 “북핵수석대표 협의”[10]의 경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30.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7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통합 경과>

(단위 : 백만원, %)

2024년					2025년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북핵수석대표 및 실무협의」	북핵수석대표 협의	198	146.5	73.9	「북핵문제 관련 협의」	북핵수석대표 협의	160	49	30.6
	실무그룹 협의	50	17.5	35		실무그룹 협의	36	121	336.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25년의 경우 북핵수석대표인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석이어서 고위급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실무그룹 협의 등에 예산집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내역사업[11]의 집행률이 제고되었다는 입장임.

10) 내내역사업 “북핵수석대표협의”

11) 2024년도 세부사업 “북한 핵문제 대처”에 해당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효용성의 확보가 조치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은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2024년 75.4%[12]에서 2025년 56.6%로 감소하였으며,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9.2%에서 70.4%로 감소하였음.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사업 효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2) 2024년도 기준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과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에 해당

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며,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6억 4,700만원이고, 이 중 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647	647	-	-	-	647	538	-	109	83.1
-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	499	499	-	-	-	499	413	-	86	82.8
-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148	148	-	-	-	148	125	-	23	84.5

□ 한반도 평화공존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대행 용역 집행 부적절

‘2025 외교부-EAI(동아시아연구원)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주최하는 여러 국내외 세미나 중 하나로, 2025년 12월 11일 “세계질서의 변동과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개최됨.

동 행사는 주관기관인 EAI(동아시아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약금은 1,800만원임.

동아시아연구원은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를 수행하는 독립 민간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이며, 이사장은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원장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맡고 있음.

<2025년 외교부-EAI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요>

과업명	2025년 외교부-EAI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회의 운영 대행 용역
수탁자	동아시아연구원
계약금액	1,800만원
계약기간	2025. 10. 30. ~ 2026. 1. 31.
주요 과업	· 행사 사전 준비 및 당일 운영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후속 업무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용역의 집행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동 행사는 과업지시서 및 결과보고서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형식으로 기획 및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서 상 전체 예산의 33.3%에 해당하는 6백만원이 ‘대외홍보용 기고문 원고료(총 12명)’로 지출되었음.

행사의 기획 취지가 “동아시아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와 전면 상충되는 “대외홍보” 목적의 원고료를 집행한 것은 일반용역비의 목적 외 지출에 해당[13]할 우려가 큼.

더욱이 과업지시서상 계획되었던 ‘발표자 사례비 지급’이 정산내역서 상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이 정산 단계에서 기고문 원고료로 왜곡되어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실제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전문가는 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2배 많은 12명에게 원고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초과 집행되었을 여지가 있음.

구분	과업지시서	정산내역서
발표자 사례비	O	X
대외홍보용 기고문 원고료	X	O

(외교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례비의 경우 참여자 수행 내용 확대·시간 연장에 따른 상향조정에 따라 한반도정책국이 직접 집행하였고, 행사의 의의를 높

1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대외홍보용 기고문을 작성하여 EAI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답변함.

그러나,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로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위와 같이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14]에 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근거상 사업목적과 실제 집행 세부내역의 상이함이 확인 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교부 답변과 같이 사례비가 본부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면 본래 과업지시서상 계약금액 산정에 포함되어 있던 사례비 항목이 계약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계약금액 총액(1,8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집행 왜곡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발표자(6인)의 2배인 12명에게 기고문 원고료가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측 행사 참여자 및 소속 연구원 등 12인”이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EAI는 이미 용역 수행주체로서 만약 해당 연구원이 계약대금 내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다면 동일 용역 수행 과정의 산출물에 대해 별도로 원고료를 추가로 받는 구조가 되어 일반용역비와 일반수용비(원

1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료)의 사실상 이중 지급 우려의 가능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정부 홈페이지가 아닌[15] 민간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 “대외홍보”라는 명목에 부합하는지, 결과물의 저작권・활용권 귀속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음.

둘째, 소규모 비공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출력비가 과도하게 정산됨. 당초 과업지시서상 참석인원은 12명, 결과보고서상 참석 인원이 총 16명으로, 총예산이 1,800만원인 계약 중 3백만원(약 16.7%)을 인쇄 및 출력비로 집행한 것은 비현실적임.

이를 참석자 1인당 소요 비용으로 환산 시 약 18.8만원에 해당하는데, 단 하루 개최되는 세미나의 당일 배포용 책자나 단독 자료집 인쇄 단가로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결과보고서 상 전문가 참석자 16명 외에도 외교부 본부 및 EAI 측 행사 참여 희망자들도 참여하여 총 30여명 정도 규모의 행사였고, 해당 내역의 상세 집행 내역에는 본행사 홍보물(현수막・X배너・명패・명찰) 제작 등의 비용이 합산된 것이고, 참석자의 명망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고품질 제작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

15) 외교부 홈페이지 내에는 관련하여 해당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보도자료만 존재할 뿐, 행사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등은 부재함.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880

그러나, 현수막이나 X배너 제작 비용은 통상 대외 노출을 전제로 한 홍보물 성격이 강한데 이것이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의 출력물로 포함된 점은 행사의 성격과는 다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근거라고 볼 수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를 최대한 절감”하라고 한 취지를 용역비 집행을 통해 우회하는 편법적 집행의 여지가 있음.

셋째,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이 타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동 용역의 과업 중 행사 현장 장비 확인 및 참석 내빈 안내 등 행사 운영에 대한 과업의 경우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으로 대행시키는 비용”[16]이라는 일반용역비의 특성상 부합하나,

참석자 선정 및 의제 구성 등 행사의 기획 업무까지 용역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더욱이, 2025년 외교부가 진행한 우리 정부 대북・대한반도 정책 관련 주요국 전문가・여론주도층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관련 타 라운드테이블의 경우 용역계약 없이 외교부가 직접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동 행사의

16)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61

경우에도 용역이 필요했는지 검토가 필요함.

<2025년 외교부가 용역 없이 수행한 타 한반도정세 라운드테이블 집행내역>

시기	행사명	집행액
'25.10월	• 한-뉴질랜드 라운드테이블	400만원
'25.11월	• 한-영국 라운드테이블	2,520만원
'25.11월	• 한-호주 라운드테이블	1,120만원
'25.11월	• 한-캐나다(몬트리올)라운드테이블	80만원
'25.12월	• 한-태국 라운드테이블	580만원
'25.12월	• 한-캐나다(오타와) 라운드테이블	100만원
'25.12월	• 한-중국 라운드테이블	360만원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행사 용역계약에 있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목적외 지출을 지양하고, 인쇄비 등 부분에 있어 예산 절감을 노력하며, 행사기획업무 위탁 범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라.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국제평화 및 협력에 관한 연구 활동,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유엔 및 아태지역 개도국 등과의 협력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8억 3,400만원이고, 이 중 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34	834	-	-	-	834	834	-	-	100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95.8	95.8	-	-	-	95.8	95.8	-	-	100
-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03.4	603.4	-	-	-	603.4	603.4	-	-	100
-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34.8	134.8				134.8	134.8	-	-	100

□ 제주포럼 및 제주평화연구원 사업 보조의 법적 근거 명확성 부족 등 시정 필요

동 세부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35조[17]에 근거하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을 지원하는 민간 및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임.

외교부는 2006년 이래 동 조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8억 3,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사업의 근거 및 구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포괄적 조항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지나치게 기대고 있음.

현행 「제주특별법」 제235조제7항은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계평화의 섬' 관련 사업 유형과 실제 외교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역사업 간에는 법적 일치성이 부족함.

---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의 경우, 동법 제235조제2항제2호가 ‘연구소의 설립’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3월 설립 완료된 제주평화연구원의 지속적인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근거는 법률에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민간보조의 경우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2025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고려할 때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지자체보조인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역시 동항제3호가 국제회의의 ‘유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의 ‘운영 및 개최비용 지원’에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동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대응되는 조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내 제주포럼 관련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제주특별법」제235조제2항에 명시된 사업이며, 이를 내역사업과 대응시켜 검토한 결과 1호(기구 유치)와 2호(연구소 설립)는 기 추진된 것이고 동 사업은 운영과 관련된 것임에 따라 내역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과 내역사업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로서 한계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둘째, 국고보조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법」 제2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제주자치도”이며 동조제7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는 국비의 완전 보조나 일정 비율의 영구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제주특별법」 제23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와 같이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나, 제주포럼과 제주국제연수센터의 경우 이미 사업비의 대부분을 제주자치도가 부담하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정착된 만큼, 「지방자치법」[18]에서 규정하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에 따라 단계적인 국비보조 감축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5년도, 2016년도,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20년 결산 검토보고[19]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 하에 국고보조금의 연도별 단계적 감축을 권고하였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역시 일정 수준의 감축을 권고하였으나, 최근 5년간 국고보조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

---

1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1.8., p.405

<제주포럼 등 관련 국고보조율 및 지원 금액[20]>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22	100	116	100	116	100	100.8	100	95.8	100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33	29.7	668	28.2	668	32.3	635.2	31.7	603.4	27.6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98	12.3	150	17.6	150	17.6	142	16.8	134.8	17.6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예산당국의 예산 감축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근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나 사업 구조 재편 없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되풀이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지자체로의 완전 이관 등 전면적인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함.

마.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한미 간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 급 교류·협의, ▲한미동맹 기반 공고화, ▲한미 간 안보협력 심화,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개선 및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캐나다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51억 3,300만원이고, 이 중 4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33	-	-	-	-	5,133	4,825	-	308	94.0
-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581	-	-	13	-	594	577	-	17	99.3
- 동맹기반 강화	2,380	-	-	82	-	2,462	2,387	-	75	100.3
- 한미 안보협력 강화	653	-	-	△58	-	595	506	-	89	77.5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및 국방협력·민군관계 강화	1,225	-	-	△13	-	1,212	1,119	-	93	91.3
-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294	-	-	△24	-	270	236	-	34	80.3

□ **‘미중 관계 관련 유관국 협의회 개최’ 연례적 예산 미집행 시정 필요**

‘미중 관계 관련 유관국 협의회 개최’ 사업은 미국 관련 주요 현안 발생 시 제3국과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사업 내 내내역사업임.

미・중 경쟁의 구조화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 기반의 균형 잡힌 외교가 절실해지는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유럽・러시아 등 주요국 관련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적 자율 공간 확보[21] 차원에서 동 사업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됨.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25년에는 우리 신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양자 고위급・실무급 교류・협의 및 한미일 3자 협력 활동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 제3국과의 협의를 위한 별도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22]임.

하지만, 동 사업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예산 집행이 전혀 없는 등 집행 부진이 2025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21)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對)주요국 전략」, 2025.12.29.

22)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

<미중 관계 관련 유관국 협의회 개최 사업의 최근 집행 현황[23]>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A)	76	100	79	77[24]	73	50
집행액 (B)	42	0	113	166	0	0
집행률 (B/A)	55.3	0	143	215.6	0	0

(자료: 외교부가 매년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 표를 참고할 때, 2025년에 우리 신정부 출범에 따라 별도의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동 사업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예산집행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외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제3국과의 긴밀한 협의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집행 실적이 수년간 전혀 없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성과주의 재정 운용 원칙에 위배[25]될 여지가 있음.

---

23)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24) 2023회계연도 이전에는 동 사업명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유관국 협의회 개최'였음.

25)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향후 외교부는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세 변화를 이유로 실집행 없는 예산 편성을 지속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가재정법」 상의 성과주의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동북아시아지역국가(중국·몽골)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의 교류 사업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26억 1,600만원이고, 이 중 1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동북 · 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16	-	-	-	-	2,616	1,998	-	618	76.4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786	-	-	-	-	755	562	-	193	71.5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482	-	-	-	-	519	481	-	38	99.8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314	-	-	-	-	308	232	-	76	73.9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609	-	-	-	-	609	510	-	99	83.7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121	-	-	-	-	135	102	-	33	84.3
- 한중앙아 포괄적 협력 증진	304	-	-	-	-	290	111	-	179	36.5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 구조조정 필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은 한중관계 발전의 유용한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중국 지방정부 고위인사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 및 지방 고위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도 집행 부진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주의'로 시정요구가 있었음.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은 40~70%대이고,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61.8%로 전반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자료: 2023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특히 동 사업은 최근 각 내내역사업의 집행률 편차가 크고, 대부분의 경우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음.

<최근 3년간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 집행률[26]>

(단위: 백만원,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우리 지자체-중국 지방정부간 교류 내실화 지원	58	8	13.8	65	102	156.9	34	71	208.8
· 중국 지방정부 인사 방한초청	207	0	0	207	102	49.2	166	91	54.8
· 중국지역 신규공관 개설 추진	1	4	400	1	0	0	1	0	0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88	14	15.9	88	12	13.6	78	33	42.3
· 한중교류 데이터 분석	80	70	87.5	35	35	100	35	36	102.8
합 계	434	96	22.1	396	251	63.4	314	232	73.9

첫째, '중국지역 신규공관 개설 추진' 사업은 우리 공관 미개설 지원 교민 지원을 위한 신규공관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집행률이 매우 부진하며 2026년 역시 예상 집행률이 30%에 그침.

해당 사업은 100만원에 불과한 예산도 거의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타 지역의 경우 신규공관 개설을 위한 별도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편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둘째, '우리 지자체-중국 지방정부간 교류 내실화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간 협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도록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외교 활성화 지원 업무를 위해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2024년 6월 24일 외교부 기획조정실 내 비직제 조직으로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

26)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이 한중지사성장회의[27] 개최 지원 등 양국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협력 증진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공무국외출장 협조 및 우호·자매도시 결연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지원 등 지자체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의 업무분장을 고려해야 함.

셋째, '한중 교류데이터 분석' 사업은 한중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제반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용역 내용 및 비목 편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따른 연구 내역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분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연구가 대다수임.

<최근 3개년 한중 교류데이터 사업 연구 내역>

시기	연구 명	집행액
23.2~12월	• 2023 한·중 교류데이터 분석	7,000만원
24.6~10월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안보·경제를 중심으로	2,000만원
24.8~11월	• 美 대선 이후 미-중 관계 전망 및 대응 방안	1,500만원
25.2~7월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0만원
25.4~8월	• 중국의 서해 동경 124도 주장 관련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1,500만원

(외교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7) 한국과 중국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중 지방정부 공동 발전과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6년 인천에서 첫 회의가 열리고, 2018년 베이징에서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후 7년만에 2015년 10월 서울에서 열림.

사업의 비목에 있어서도, 외교부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을 모두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함.[28)]

동 사업의 연구용역 중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29)]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정의하고,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음.

'일반연구비(260-01)'의 경우 '정책연구비(260-02)'와 달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서의 심의 및 사후평가가 부족할 수 있음.

---

2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87

29)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 비교>

구분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정의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단,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별도 계상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사업명을 '정책연구'로 통일)
예시	- 기술용역 - 전산용역 - 임상연구용역 - 기타 연구용역	-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 - 계약직 연구원 관련 경비
정책연구 용역심의 위원회	X	O
정책연구 결과평가	X	O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외교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내역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주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20	4,420	73	-	-	4,493	3,780	-	713	110.5
-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1,143	2,143	-	△44	-	2,099	1,679	-	420	146.9
-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599	599	-	-	-	599	450	-	149	75.1
-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322	322	-	69	-	391	349	-	42	108.4
-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28	28	-	△11	-	17	17	-	-	60.7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30	30	-	△8	-	22	19	-	3	63.3
- 한-인도 카라반 사업	82	82	-	-	-	82	66	-	16	80.5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	302	302	-	△37	-	265	220	-	45	72.8
- 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340	340	73	99	-	512	507	-	5	149.1
- 중소국협력강화	133	133	-	-	-	133	117	-	16	88.0
- 동아시아협력포럼	441	441	-	△68	-	373	356	-	17	80.7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제2차 추경 증액분 1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3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 9,300만원이고, 이 중 3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추경 편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동 세부사업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2개의 사업 중 하나로, 내역사업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에 대해 10억원 증액이 있었음.

증액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그 취지를 내내역사업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에서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함이라고 논의한 바 있음.[30)]

당시 외교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201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양국의 젊은이들이 조선통신사가 과거 가던 길을 자전거로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행사를 하여 2025년도 동일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해당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편성·집행상 문제가 있음.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해야 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31)]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전쟁, 재해, 경기침체

30) 제22대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06.27.) pp.2-3
제22대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30.) pp.49-50

3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

등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사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와 무관하며,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2022년도 결산 심사 검토보고에서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대비한 사업집행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지적[32]을 이미 한 바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도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50주년 기념 사업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님을 감안하여, 외교부는 동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33]을 한 바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외교부는 당초 신청 여부가 불확실하며 2025년 본예산으로 하지 않은 것은 시일이 하반기에 짧은 관계로 추정하고 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기념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였음[34].

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3.8, pp.43~45

3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11.pp.39~42

34)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당초 신청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일단은 금년 예산으로 초기부처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시일이 하반기에 짧은 관계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2대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30.) p.50

해당 행사는 이미 2015년에도 50주년 사업으로 개최된 바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교부의 면밀함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둘째, 해당 행사의 수의계약 관련 특례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교부는 해당 행사의 대행용역(계약액 6억 7,500만원)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35]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함.

동 행사의 대행용역은 2025년 9월 2일 실시된 1차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36]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를 통해 같은 조 제3항의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을 근거로 재공고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시담[37] 방식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37) 전자시담이란, 공공 입찰 및 계약 절차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그러나, 해당 조항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38]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한 예산집행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 행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특례 제도를 그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에 외교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철저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라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격 및 계약 조건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의미함. 대면 투찰, 직접 방문 협상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음.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4. 정상외교

가. 개 요

“정상외교” 프로그램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행사·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외빈방한 영접을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협력 강화 및 다각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정상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1200] 정상외교				26,058	29,557	29,557	25,142	28,993
	[1231]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			26,058	29,557	29,557	25,142	28,993
		[11] 일반	[401] 정상 및 총리외교	26,058	29,557	29,557	25,142	28,993

2025년도 예산액은 295억 5,700만원이고, 25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정상 및 총리외교

「정상 및 총리외교」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을 통한 국가 간 상호협력관계 심화, 우리 정부의 공식초청 및 상대국 정부의 공식 방한요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

행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정상 및 총리외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9,557	29,557	763	-	-	30,320	25,142	-	5,178	85.1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295억 5,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303억 2,000만원 중 51억 7,800만원이 불용되고, 251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5.1%임.

□ 대통령 해외순방 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의 관리 필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중 대통령 해외순방에는 당초 235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190억 9,100만원임.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대통령 해외순방행사는 총 5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실제 실시된 순방 이외에도 추진 과정에서 취소된 해외순방이 있었으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보임.

<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 29,557백만원 **ㅇ 대통령 해외순방 23,589백만원** ㅇ 총리 해외순방 2,737백만원 ㅇ 외빈접수 및 주한 외교단 초청행사 2,256백만원 ㅇ 외빈차량 교체 975백만원	□ 25,142백만원 **ㅇ 대통령 해외순방 19,091백만원** ㅇ 외빈접수 및 주한외교단 초청행사 4,288백만원 ㅇ 외빈차량 교체 1,763백만원(이월 763백만원 포함)

(자료: 외교부)

취소된 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 집행내역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정상 해외순방은 상대국과의 일정 협의와 함께 대표단 숙소, 항공, 차량 등 각종 소요자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므로, 순방이 임박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미 예약하거나 계약한 사항에 대한 취소수수료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외교의 특성상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및 정상외교 수행의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별·행사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국내외 정치·외교 상황에 따른 순방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대통령 해외순방에는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교부는 정상외교의 보안성과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숙박·차량·용역 등 관련 계약 체결 시 취소조건과 환불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방 취소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ASEAN[39]) 및 동남아 지역 국가, 유럽 내 각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 채널의 확충 및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은 2025년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부사업 중 「유라시아 협력 추진」이 2026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 內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어 2026년에는 2개의 단위사업 및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46억 8,000만원이고, 이 중 82.3%에 해당하는 38억 5,300만원이 집행됨.

<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397	4,680	4,680	3,853	4,267
	[1331]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505	2,908	2,908	2,321	2,525

39)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2025 결산	2026 예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1]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505	2,908	2,908	2,321	2,525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892	1,772	1,772	1,532	1,742
		[11] 일반	[40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507	1,411	1,411	1,228	1,423
		[11] 일반	[402] 유라시아 협력 추진	171	97	97	67	-
		[11] 일반	[403] 대러 전략외교 강화	214	264	264	237	319

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각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해양동남아 및 메콩지역과의 소다자 차원의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아세안 관련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아세안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908	2,908	-	-	-	2,908	2,321	-	587	79.8

2025년도 예산액 29억 800만원 중 5억 8,700만원이 불용되고 23억 2,1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9.8%임.

□ 해양 및 대륙동남아 중소국가 관계 유지 및 관리 사업 집행 부진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 중 '해양 및 대륙동남아 중소국가 관계 유지 및 관리' 사업은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동티모르 등 동남아 중소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에는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운영'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운영'은 전직 외교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친선단을 구성하여 동남아 중소국가에 파견하고, 상대국 정부 관계자 면담, 정책협의, 싱크탱크·대학과의 교류, 공공외교 활동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임.

<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운영 사업 개요 >

- (**친선그룹 추진 경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2023년부터 각 지역국별 관리 대상 중소국가를 선정, 해당국 대상 친선그룹을 출범하여 특사 파견 및 고위급 교류 추진 -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파견국 선정**) 동남아 국가 중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리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동티모르, 라오스, 브루나이 3개국을 우선 선정(2023), 양국 관계 중점 관리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 상기 3개국에 한정하지 않고, 추후 여타 동남아 중소국가(미얀마, 캄보디아 등) 대상 활동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 구상 - (**파견 형식**) '장관특사'급으로 친선그룹을 구성, 대상국 방문을 통한 교류 실시 ※ ▲고위급 면담, ▲양국 잠재 협력 분야 수요 파악 및 발굴 등 해당국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에는 동티모르, 라오스, 브루나이에, 2024년에는 동티모르와 브루나이에 친선그룹을 파견하였음. 그런데 2025년에는 당초 계획되었던 친선그룹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운영 사업 실적 >

연도	파견국가	파견일정	파견자	파견실적
2023	동티모르	3.15.(수) -17.(금)	김창범 前주인도네시아대사,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ㅇ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면담, 공무원 대상 강연 및 새마을운동현장 시찰 등 - 양국 실질협력 강화 의지 확인 및 맞춤형 개발협력 방안 모색 등
	브루나이	6.4.(일) -6.(화)	서정하 前주싱가포르대사,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ㅇ 공주(외교부 특임대사) 예방, 외교차관 면담, 한-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한-BIMP EAGA 워크샵 개최 - 국제기구 선거지지 협조 당부 및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 방안 논의
	라오스	4.27.(목) -29.(토)	이혁 前주베트남·필리핀대사, 김홍구 前 부산외대 총장	ㅇ 외교부 및 산업부 차관 면담, 외교연구원 세미나 및 국립대 강연 등 -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양국 협력 강화 방안 협의 논의 등
2024	동티모르	5.5.(일) -7.(화)	서정인 前 주아세안대사, 배기현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ㅇ 외교장관 예방, 국립대 총장 면담 등 -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 의지 전달
	브루나이	5.7.(화) -9.(목)	서정인 前 주아세안대사,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ㅇ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라오스	ㅇ 미추진 - 2024 아세안 의장국으로, 아세안 정상행사 등 계기 우리 정상 방문 등 다양한 고위급 교류 실시		
2025	ㅇ 친선그룹 미파견 - 다만, 중소국가 관계유지를 위하여 아세안국 심의관이 동티모르 출장을 통하여 대통령 예방, 아세안 차관 면담 등 실시			

(자료: 외교부)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 8,500만원 중 11.8%인 1,0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동 예산은 아세안국 심의관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동티모르 외교부와의 면담 등 고위급 협의를 위한 출장 목적으로 집행되었음.

외교부는 2025년 상반기 국내 사정으로 친선그룹 등 파견이 불가하였으며,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또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들의 정세가 불안정한 점도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이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남아시아 친선그룹 운영' 사업은 공식 정부대표단 방문에 비해 상대국 정치적 상황이나 정세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며, 또한 미얀마 등 동남아 중소국가의 정세 불안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상시적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당초 편성하였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르러 단발성 고위급 방문으로 예산 일부를 집행한 것은 집행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외교부는 동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한 우리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범유럽지역 회의체 및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다층적 외교를 심화하려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4억 1,100만원이고, 1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411	1,411	-	-	-	1,411	1,228	-	183	87.0

□ 한러대화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동 세부사업 내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한-러간 교류협력 사업'은, 한-러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민간 차원의 대러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외교법」 제9조[40]에 근거를 두고 있음.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치·국제관계, 경제·통상 등 6개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공동연구,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문화 행사 등 교류 행사 진행임.

동 사업은 기존에 민간 위탁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주도 성격을 가짐을 고려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41]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중이며,[42] 사단법인 '한러대화'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 KRD)는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4년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우호협력 증진 및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에는 2억 6,900만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

40)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1) ① 2011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1. p.92
② 2010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8., p.119
③ 2012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11. p.79

42) 동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음.

하여 실집행률은 100%임. 다만 동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먼저, 보조사업비 중 상당수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비중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조금이 단체의 상시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한러대화가 집행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총 1억 8,041억원으로 한러대화 전체 보조금의 67.1%에 달함.

< 2025년도 한러대화 보조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고용부담금	합계
107,286 (39.9%)	73,126 (27.2%)	41,216 (15.3%)	39,147 (14.6%)	8,208 (3.1%)	268,983 (100.0%)

(자료: 외교부)

따라서 직접적인 사업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경상 운영비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조사업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한러대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다년간 한러대화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홈페이지 내의 자료가 장기간 갱신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매년 개최하는 '한러대학생 대화' 참가자 공모글은 2019년이 마지막이며, 주요사업보고서 역시 2021년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게시되어 있음.

외교부는 보조사업 관련 자료가 적기에 게시·갱신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중남미지역 및 아중동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대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 외교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115억 100만원이고, 109억 4,800만원이 집행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4,945	11,501	11,501	10,948	15,006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71	3,337	3,337	3,108	3,559
		[11] 일반	[40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71	3,337	3,337	3,108	3,559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41,474	8,164	8,164	7,840	11,447
		[11] 일반	[40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139	3,515	3,515	3,191	6,727
		[11] 일반	[402]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25	4,649	4,649	4,649	4,720
		[11] 일반	[403] 2024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33,910	-	-	-	-

나.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아중동지역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아중동지역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35억 1,500만원으로, 이 중 3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515	3,515	-	-	-	3,515	3,191	-	324	90.8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186	2,186	-	△37	-	2,149	1,981	-	168	90.6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035	1,035	-	△74	-	961	827	-	134	79.9
-아중동외교정책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294	294	-	111	-	405	383	-	22	130.3

□ 안정적인 한-아랍 관계 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보조사업 관리 필요

외교부는 중동지역 국가와의 관계 증진 및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통해 다차원적 교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08년 민·관 합동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를 설립[43]하였으며, KAS 창립 국제회의(2008.5.26.)에서 양측 정부 및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우리 정부가 기여금을 매년 납입할 것을 약속함[44].

<2026년 5월 기준 KAS 기금 출연 현황>

한국측(12개)	출연액	아랍측(12개)	출연액
제주특별자치도	10억원	UAE	100만불
한국무역협회	10억원	오만	100만불
SK	20억원	카타르	50만불
GS칼텍스	15억원	Ras Gas(카타르)	30만불
실크로드시앤티	5억원	알제리	25만불
S-OIL	10억원	쿠웨이트	25만불
STX	5억원	수단	20만불
대우건설	5억원	사우디	15만불
두산중공업	5억원	모로코	15만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5억원	올라이얀 그룹(사우디)	2만5천불
현대해상화재보험	3억원	이라크	5만불
대한항공	3억원	나하스 그룹(시리아)	2만5천불
소계 ①	96억원	소계 ②	390만불(약 44억원)
합계 (①+②)		약 140억원	

(자료: 외교부)

---

43) 외교부 비영리법인이며, 이사장은 주한 오만대사로, 부이사장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될 예정(현재 선출 과정에 있음)이며 이사는 27명(외교부 아중동국장, 제주도지사, 한국 기업 인사 등 12명 및 주한 대사 15명)임.

44) 2007.3월 노무현 대통령 중동 순방시, 사우디 슈라(국왕자문회의)에서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발표를 계기로 한-중동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립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주요 과제에 포함, 2008.5월 창립(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주한 대사단 접견 및 설립 의지 표명, ▲창립 국제회의시 정상회담 및 만찬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8년 12~15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공약하였으며, 2009년 이후 국회 승인을 전제로 2008년 기여액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동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약속이 미이행되고 있음.

<對KAS 우리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총액: 130.85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억	10억	9억	7.4억	6.1억	6.2억	5.5억	5억	5억	5억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4억	5억	4억	5억	7.5억	7.5억	6.75억	9억	10.9억	미정

(자료: 외교부)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은 재단에 대한 감독주체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공공문화외교국-아중동국으로 수차례 변경되며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고, 재단의 수의계약 비중 과다 및 특정 용역사업자에 대한 용역계약·임금계약 분할 체결 등 부적정한 집행[45]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KAS 보조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08~2018년	2019~2020년	2021년 이후
감독기관/부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외교부 아중동국
세부사업	민간외교단체지원사업(폐지)	공공외교 역량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또한, KAS는 지원금의 용처를 문화예술사업으로 한정하여 재단 심의지침 위반 사항으로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46]된 바 있기도 함.

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2.8. p.58

4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7.12. p.644

< KAS 관련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15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제교류기금 -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지원 (1733-402)	제도개선	국제교류재단
		지적사항	○ 최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하에서 민간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재단의 민간외교단체 지원 실적은 2013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또한, 아·태안보협력이사회 등 7개 단체와 신아시아연구소 등 6개 단체 등에게 4, 5년 연속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액 비율이 커지고 있음. ○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전체 지원액 중 약 28%를 차지하는 한-아랍소사이어티의 경우 지원금의 용처가 문화예술사업으로 한정되어 재단 심의지침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제교류재단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실현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외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		

(자료: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보고서)

따라서 KAS 관련 예산편성 부족에 따른 외교적 약속 미이행은 외교부 차원의 동 사업에 대한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한 측면이 있음. 외교적 약속 및 재단 정관[47]은 법적으로 예산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외교적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의 규모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임.

다만, 외교부 아중동국이 해당 사업을 관리하면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

47) KAS 정관 제9조(재원) 1항에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기여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명시

고 예산 규모도 차츰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정도의 연간 기여금 규모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점은 향후 예산편성에서 고려할 점으로 보임.

동 사업에 대해 주한아랍외교단이 경제부총리 앞으로 2018년, 2021년 두 차례 우리 정부의 사업비 지원 약속을 상기시키고 KAS 활동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아랍 측의 동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보조사업을 통한 민간외교 증진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하여 충분한 외교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기구 분담금

가. 개 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8,262억 2,400만원이고, 이 중 94.7%에 해당하는 7,826억 7,000만원이 집행됨.

< 국제기구 분담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예산		2025 결산	2026 예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707,172	826,224	798,335	782,670	681,795
	[2131] 국제기구분담금			707,172	826,224	798,335	782,670	681,795
		[11] 일반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105,435	123,580	114,191	114,188	114,086
		[11] 일반	[402]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203,709	216,784	198,284	186,324	177,706
		[11] 일반	[40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96,783	102,607	102,607	100,719	109,278
		[11] 일반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301,245	383,253	383,253	381,439	207,156
		[11] 일반	[405]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	-	-	-	73,569

나. 기타 의무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사업은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의무분담금의 적기 납부를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02,607	102,607	-	-	-	102,607	100,719	-	1,888	98.2	98.2

2025년에 납부한 의무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의무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명	24 결산	집행률	25 예산	25 결산	집행률	26 예산
1	OECD Part I	14,947	96.4	16,129	15,722	97.5	16,776
2	OECD 개발센터	697	94.3	751	743	98.9	809
3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205	97.2	220	217.5	98.9	241
4	OECD 철강위원회	42	91.3	45	47	104.4	50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561	97.8	3,957	3,806	96.2	4,330
6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84	106.3	88	93	105.7	97
7	국제사실조사위원회(IHFFC)	10	100	10	7	70.0	10
8	국제원자력기구(IAEA)	14,815	97.2	16,198	15,623	96.5	16,968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기금(TCF)	4,038	115.3	3,612	3,510	97.2	3,691

연번	분담금명	24 결산	집행률	25 예산	25 결산	집행률	26 예산
10	국제이주기구(IOM)	3,120	107.4	3,702	3,633	98.1	4,240
11	국제해사기구(IMO)	770	112.7	767	904	117.9	1,065
1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562	99.3	588	630	107.1	722
13	국제해저기구(ISA)	464	113.2	468	468	100	562
14	국제형사재판소(ICC)	13,361	99.4	13,470	13,614.5	101.1	15,678
15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청사건축	328	97.3	343	331	96.5	368
16	남극조약사무국(ATS)	52	100	55	55	100	63
1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51	96.8	164	163	99.4	177
18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275	97.9	421	448	106.4	450
19	대인지뢰금지협약(APLC)	15	78.9	28	0	0	14
20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125	70.2	203	171.5	84.5	208
21	무기거래조약(ATT)	37	86	48	58	120.8	48
22	바세나르체제(WA)	109	101.9	120	113	94.2	138
23	베니스위원회	96	110.3	112	101	90.2	124
24	불어권국제기구(OIF)	17	100	52	50	96.2	37
25	비엔나협약 신탁기금	23	70.2	28	28	100	28
26	상설중재재판소(PCA)	47	120.5	43	49	114.0	54
27	생물무기금지협약(BWC)	67	93.1	79	78	98.7	78
28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분담금	8,682	106.6	8,547	9,376	109.7	9,259
29	세계박람회기구(BIE)	48	100	50	48	96.0	54
30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27	100	28	31	110.7	28
3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32	98.9	456	479	105	490
32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280	102.2	288	305	105.9	335
33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4,844	99	5,197	5,407	104	5,963
34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1,624	98.9	12,263	11,494	93.7	11,576
35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1,861	100	2,172	2,172	100	2,376
36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CAS)	122	105.2	123	112	91.1	116
37	콜롬보플랜	21	100	23	22	95.7	22
38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31	64.6	48	41	85.4	49
39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5,264	95.9	5,260	5,074	96.5	5,467
40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2,421	94.8	3,041	2,513	82.6	2,970
41	핵비확산조약(NPT)	50	83.3	53	30	56.6	98
42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220	120.9	192	204	106.3	217
43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838	104.4	3,165	2,747	86.8	3,232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48]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49]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383,253	383,253	-	-	-	383,253	381,439	-	1,814	99.5	99.5

2025에 납부한 사업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4 결산	집행률	25 예산	25 결산	집행률	26 예산
1	APEC 디지털 혁신 기금(ASF)	933	102.4	966	976	101	476
2	APEC 미래번영기금	-	-	1,347	1,386	102.9	1,250
3	APEC 정책지원부서(PSU) 분담금	229	100	472	472	100	350

48) UNICEF(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49)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연번	분담금 명	24 결산	집행률	25 예산	25 결산	집행률	26 예산
4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NSF)	3,612	100	3,497	3,380	96.7	2,240
5	NATO 신탁기금	15,600	100	33,120	33,120	100	23,132
6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68	100	377	377	100	414
7	OECD 민주주의 분담금	-	-	674	660	97.9	0
8	OECD 자발적 기여금	2,555	99.2	3,073	3,074	100	3,073
9	UNIDO 공업개발기금(IDF)	434	100	652	652	100	552
10	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 (ITPO)	468	100	995	995	100	552
11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기여금 (GTF)	628	96.6	547	498	91	200
12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4,875	99.9	5,176	5,174	100	1,380
1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개키디렉토리(PKD)	29	69	43	30	69.8	31
14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펠로우십 신탁기금	40	100	39	39	100	41
15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122	109.9	118	119	100.8	117
16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자발적 기여금	426	100	421	421	100	370
17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5	100	63	63	100	24
18	군축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883	100	883	883	100	828
19	글로벌 보건 기여			48,151	48,329	100.4	55,200
2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지원	17,550	100	17,980	17,980	100	15,298
21	글로벌파트너십	911	100	996	996	100	921
22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1,554	100	2,664	2,664	100	1,554
23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26	100	27	27	100	10
24	대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사업 지원	781	100	763	763	100	483
25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46	100	142	142	100	123
26	메콩강위원회(MRC) 분담금	1,300	100	1,380	0	0	1,380
27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401	101	357	357	100	221
28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2,838	100	2,824	2,824	100	2,120
29	비세그라드 펀드(IVF)	650	100	645	645	100	368
30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 기여금	26,000	100	24,885	24,885	100	10,695
31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25	100	315	315	100	215
32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65	100	63	63	100	51
33	아시아유럽재단(ASEF)	261	100	261	261	100	276
34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지원	-	-	13,470	13,470	100	0

연번	분담금 명	24 결산	집행률	25 예산	25 결산	집행률	26 예산
35	아프리카연합(AU) 평화기금	6,761	104	4,918	4,417	89.8	0
36	엘시(Elsie) 기금	650	100	666	665	99.8	351
37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2,550	98.1	2,587	2,560	99	1,733
38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	1,441	110.8	1,199	1,463	122	1,380
39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91	100	91	91	100	111
40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563	97.6	1,387	1,378	99.4	2,208
41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 기여금	23,400	100	22,626	22,626	100	10,350
42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기금	1,927	100	1,864	1,864	100	1,863
43	유엔난민기구(UNHCR)	23,266	100	23,149	23,149	100	12,240
44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60	100	253	253	100	138
45	유엔아동기금(UNICEF)	19,783	101.5	18,663	18,663	100	7,314
46	유엔인구기금(UNFPA)	1,300	100	2,760	2,760	100	2,208
4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6,500	100	5,850	5,850	100	3,226
48	유엔자원봉사단(UNV)	5,745	98.5	5,829	5,829	100	5,165
49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537	99.8	4,427	4,416	99.8	3,123
50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	10,408	100	5,204	5,204	100	2,174
51	유엔평화구축기금(PBF)	10,408	100	9,881	9,881	100	4,364
52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	3,900	100	3,955	3,947	99.8	3,147
53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58	100	58	58	100	38
54	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	3,900	100	3,681	3,681	100	1,761
5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390	100	126	126	100	74
56	한-ESCAP 협력기금(KECF)	390	100	378	378	100	279
57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10,309	99.1	10,056	9,935	98.8	9,936
58	한-메콩 협력기금	10,400	100	11,040	11,040	100	11,040
59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	232	100	225	225	100	201
60	한-아세안센터	7,600	100	7,600	7,600	100	7,600
61	한-아세안 협력기금	36,400	100	38,640	38,640	100	38,640
62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협력기금	-	-	6,500	6,500	100	4,190
63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9,758	100	8,018	8,018	100	8,018
64	한-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협력기금	663	100	626	626	100	530
65	한-인도양 협력기금	-	-	539	571	105.9	468
66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1,165	100	1,075	1,075	100	736
67	한-태평양도서국(PIF) 협력기금	3,109	79.7	6,209	6,123	98.6	4,464
68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5,200	100	5,388	5,388	100	5,388
69	해적 퇴치 관련 IMO 사업분담금	260	100	254	254	100	220
70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42	100	145	145	100	319

□ 한-인도양 협력기금 등 2025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 집행 저조

외교부가 2025년부터 편성을 시작한 신규 분담금은 한-인도양 협력기금, APEC 미래번영기금,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 지원, OECD 민주주의 분담금, 한-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기금 등 5건임.

< 2025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 현황 >

분담금명	개요	25 예산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
한-인도양 협력기금	환인도양연합(IORA) 회원국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통하여 한-IORA 간 실질협력 강화	539	0% ※ 26.1월 기준 100%
APEC 미래번영기금	아태지역 청년세대의 역량강화 및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APEC 의장국 계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조성한 최초의 청년 지원 기금	1,347	0%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 지원	아이티의 치안 안정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제2699호)에 따라 파견된 다국적안보지원단(MSS)의 활동 지원 ※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5년 임기)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요청, △주요국 지원 검토 규모 등을 감안하여 약 1천만불 규모 재정 지원 결정	13,470	100%
OECD 민주주의 분담금	OECD, OGP, CoD, International IDEA 등으로 구성된'민주주의 증진 지원 메커니즘(Support Mechanism)'운영을 위한 분담금이며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674	97.9%
한-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기금	아프리카 대륙 경제 통합 및 역내 자유 무역을 위한 기구인 AfCFTA 사무국과 실질적·구체적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6,500	36.91%

주: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은 2025년도 기여금에 대한 것으로, 2025년도 말 기준임

(자료: 외교부)

5건의 신규 분담금 중, 한-인도양 협력기금과 APEC 미래번영기금의 2025년도 실집행률은 각각 0%임.

우선, **한-인도양 협력기금**은 2025년도 예산에 5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환인도양연합(IORA)[50]으로 5억 7,1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IORA 단계에서의 집행 실적은 없음.

동 협력기금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계기로 협력기금 창설 계획이 발표되고 2025년 5월 제24차 IORA 각료회의 계기 연내 약 40만불의 협력기금 신설 계획이 구체화되어 발표되었음. 이후 IORA 사무국과 회원국(23개국) 간 협력사업 및 이행기관 선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설립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음.

< 한-인도양 협력기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시기	주요 내용
25.상반기	• 협력사업 제안서 제출 • 비대면 사업설명회 개최
25.하반기	• 협력사업 및 이행기관 선정(2건) • 협력기금 설립문서 문안 협의 및 체결
26.상반기	• 이행기관 사업보고회(2월, 모리셔스 / IORA 사무국 및 외교부 공동주관) 개최 • 이행기관 사업 현지 답사 및 웨비나 개최
26.하반기	• 방한 초청 세미나 개최 및 현지 담당자 연수(9월(잠정)) 등 진행 • 이행기관 사업보고회(11월(잠정), 서울 / IORA 사무국 및 외교부 공동주관)

(자료: 외교부)

MOU 체결 이후 IORA로 분담금 지급이 이루어져 외교부 단계에서는 분담금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분담금이 연말에 지급됨에 따라 2025년에는 분담금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50) 환인도양연합(IORA)은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인도양 연안 국가(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프랑스) 간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출범한 지역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8년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함

이는 분담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금 예산이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분담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 **APEC 미래번영기금**은 2025년도 예산에 13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APEC으로 13억 8,6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APEC 단계에서의 집행 실적은 없음.

동 기금은 APEC 회원국 내 높은 청년 인구 비중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 및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신규 설립된 것임.

< APEC 미래번영기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시기	주요 내용
25.2월	• 기금 설립 제안서 AP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에 최초 회람
25.5월	• 제2차 AP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본회의에서 설립 승인
25.8월	• 미래번영기금 설립 양해각서 체결 및 기여금 납부
25.10월	• APEC 정상회의에서 설립 공식 발표
26.1~6월	• 27년 상반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26.6~9월	• 27년 하반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26.8월	• 26년 분담금 납부 예정
26.6~11월	• 27년 상반기 선정된 지원사업 사업제안서 접수 및 승인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기금은 2026년 사업 공모 및 심사를 거쳐 2027년부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2025년에는 분담금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였음.

외교부는 기금 조성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단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도 예산에 동 분담금을 편성할 필요성과 적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AfCFTA[51] 협력기금**은 2025년도 예산에 65억원이 편성되고 외교부 단계에서 전액 집행되었으나, AfCFTA 차원에서의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동 협력기금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음.

< AfCFTA 협력기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시기	주요 내용
25.1월	• 한-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기금 신설(65억원 규모)
25.1~5월	• 외교부-AfCFTA 사무국간 기금 운용방향 협의
25.5.27	• 외교장관 - AfCFTA 사무총장 양자 면담 • 한-AfCFTA 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5.8월	• 한-AfCFTA 협력기금 관리를 위한 한국인 채용 합의
25.11월	• 한-AfCFTA 협력기금 시범사업 선정 합의 • AfCFTA 사무총장 방한 • AfCFTA 사무국 - 우리측 기관(CUPIA, KTNET, KAIST, KAF) 간 이행약정 체결
25.12월	• 2026년 협력기금 편성(41.9억원 규모) •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AfCFTA 사무국의 한국인 채용 - 우리 청년의 아프리카 국제기구 진출 기회 창출)
25.12월~ 26.4월	• 시범사업(2025년 기금) 예산 집행계획 확정 및 송금절차 진행
26.4월	• AfCFTA 채용 한국인 직원 파견 완료
26.3~6월	• 2026년 협력기금 활용 협력사업 선정절차 진행 중
26년 하반기	• 2026년 협력기금 활용 협력사업 이행약정 체결 • 2026년 협력기금 실송금 • 2027년 협력기금 운용방향 협의 지속(AfCFTA 사무국) • 2027년 협력기금 예산 편성(국회, 12월)

(자료: 외교부)

51)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아프리카 경제 통합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창설 이니셔티브로, 2021년 1월 AfCFTA에 따른 교역을 개시함

한-AfCFTA 협력기금 MOU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 지원 사업 및 기여금 규모를 담은 부속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부속약정들이 2025년 11월경에 체결[52]되어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됨에 따라 2025년도 실제 집행이 불가하였음.

이와 같이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분담금 예산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분담금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일괄적인 배분 방식을 벗어나, 국제기구 단계에서의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분기별 집행 소요에 맞추어 분담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2) AfCFTA 사무국과 각 사업 수행기관 간에 총 4건의 이행약정(싱글 윈도우 구축, 교통 인프라 역량강화, 스타트업 파트너십, 원산지 규정·디지털 역량강화)이 체결되었음

8. 다자관계 협력

가. 개 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활동을 통해 우리의 기여 및 위상 강화 △MIKTA 협력을 통해 유사입장국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인권·민주주의 및 여성·평화·안보(WPS) 관련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및 개최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을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215억 8,500만원이고, 이 중 97.0%에 해당하는 209억 4,500만원이 집행됨.

< 다자관계 협력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협력				23,976	21,585	21,585	20,945	21,268
	[2231] 국제기구 협력 강화			23,976	21,585	21,585	20,945	21,268
		[11] 일반	[40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4,048	16,072	16,072	15,965	17,218
		[11] 일반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489	3,751	3,751	3,370	2,372
		[11] 일반	[405] MIKTA 중견국 외교	137	244	244	177	232
		[11] 일반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25	451	451	435	428
		[11] 일반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62	57	57	56	57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1,010	1,010	942	961
		[11] 일반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5,815	-	-	-	-

나. MIKTA 중견국 외교

「MIKTA 중견국 외교」 사업은 믹타 협력을 통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과 다자무대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MIKTA 중견국 외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MIKTA 중견국 외교	244	244	-	-	-	244	177	-	67	72.5
- MIKTA 의장국 활동	109	109	-	△12	-	97	67	-	30	69.0
- MIKTA 외교장관 회의 등 참석	65	65	-	△5	-	60	31	-	29	51.7
- MIKTA 관련 세미나	15	15	-	12	-	27	21	-	6	77.8
- MIKTA 아웃리치 활동 및 협력사업 수행	55	55	-	5	-	60	58	-	2	72.5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은 2억 4,400만원인데, 이 중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의장국 수임 관련 예측 부실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및 대규모 불용 발생에 따른 향후 정밀한 예산 추계 필요**

MIKTA(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2013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하였음.

우리나라는 2025년에 MIKTA 의장국을 수임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관련 예산을 52.5%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4년간 MIKTA 중견국 외교 사업 집행률[53]>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MIKTA 중견국 외교	209	172	82.2	178	147	82.5	160	137	85.6	244	177	72.7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5년 G20 및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믹타 고위급 회의 개최시 임차료 및 항공료 등 예산 일부를 절감”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외교부가 제출한 동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평년에도 MIKTA 회의 자체가 타 다자회의를 계기로 많이 이루어져 충분히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음.

53)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최근 4개년 타 다자회의 계기 MIKTA 고위급회의 현황>

시기	회의 명
2022.7.7.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1차 외교장관회의(발리)
2022.9.22.	• 유엔총회 계기 제22차 외교장관회의(뉴욕)
2022.11.15	•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발리)
2023.3.2.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3차 외교장관회의(뉴델리)
2023.9.9.	•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뉴델리)
2023.9.23.	• 유엔총회 계기 제24차 외교장관회의(뉴욕)
2024.2.21.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5차 외교장관회의(리우데자네이루)
2024.9.24.	• 유엔총회 계기 제26차 외교장관회의(뉴욕)
2024.11.18.	•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리우데자네이루)
2025.2.20.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7차 외교장관회의(요하네스버그)
2025.9.25.	• 유엔총회 계기 제28차 외교장관회의(뉴욕)
2025.11.22.	•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요하네스버그)

(자료: 외교부)

MIKTA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동의 최근 현황을 보면, 외교장관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고 있으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MIKTA 외교장관회의와 G20 정상회의 계기 MIKTA 정상회동이 매번 같은 곳에서 열림을 알 수 있음.

2025년 남아공에서 열린 G20 회의의 경우, 2023년 9월에 열린 뉴델리 정상회의에서도 이미 예정된 바가 있기에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5년 MIKTA 고위급회의가 남아공과 뉴욕에서 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인 2025년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MIKTA 의장국 활동」은 본예산 1억 900만원 중 3,100만원이 불용되고, 「MIKTA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은 본예산 6,500만원 중 3,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MIKTA 의장국 수임 관련 예산에 대한 추계가 부실했음을 보여줌.

2024년 단년도 편성 사업인 내역사업 「MIKTA의장국 협력 및 우리 수임 대비 활동」의 경우, 예산에 편성된 예산 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을 고려할 때, MIKTA 의장국 수임에 대한 외교부의 세밀함이 부족했다고 보여짐.

따라서 외교부는 일정 주기로 돌아오는 의장국 수임 사업 등에 대해 다자회의 계기 개최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교 일정과 집행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과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 논의 점검을 위한 정례 플랫폼 마련 △분쟁하 성폭력 대응 ODA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 분쟁하 성폭력 대응 시 생존자 중심 문제 해결 담론 형성 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

<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51	451	3	-	-	454	435	-	19	95.8
- 여성·평화·안보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437	437	3	-	-	440	431	-	9	98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아시아 자문위원회 개최	9	9	-	-	-	9	3	-	6	33.4
- 여성·평화·안보 국외 전문가 협력 강화	5	5	-	-	-	5	1	-	4	20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억 5,400만원인데, 이 중 4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장기적 집행 부진 및 저성과 사업 대상 구조조정 필요

내역사업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는 2018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관련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및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내역사업 「여성·평화·안보 국외전문가 협력 강화」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관련 해외활동 전문가 초청 및 협력 활동을 통해 국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WPS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임.

두 내역사업은 집행 부진과 그에 따른 예산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악순환에 있으며, 동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인 「여성·평화·안보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의 집행현황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큼.

< 최근 5개년 내역사업 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여성·평화·안보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452	435	452	446	402	381	459	420	437	431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18	11	18	9	18	6	7	3.8	9	2.7
여성·평화·안보 국외전문가 협력 강화	30	23	30	0	30	22	9	1	5	1.2

(자료: 외교부 제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자료)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20인 이내의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2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1기가 2018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하였고, 1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2기가 2026년 1월에 발족하였음.

이에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의 경우 자문위원의 구성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외교부는 불용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1기 임기 만료 후 2기 위촉 이전에, 1기 자문위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예산의 불용을 막고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보임.

<2021~2026년 중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날짜
2021년	제1차	9월 30일
2022년	제1차	5월 2일
	제2차	11월 11일
2023년	제1차	10월 6일
2024년	제1차	8월 21일
2025년	제1차	2월 10일
	제2차	8월 20일
2026년	제1차	1월 21일
	제2차	4월 9일

(자료: 외교부)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자격을 상실한 1기 위원들을 대상으로 1년 반 동안 임의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를 두어 위원회가 행정청에 공식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의 기간을 둔 본래 사업 취지에 반하는 형식적인 운영

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불용처리하고 사업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만료된 전직 위원들을 소수 소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내실을 해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기존에도 1년에 1~2회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찬간담회 성격에 그친 바 있어, 보다 의미있는 자문위 운영을 위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인정됨.

「여성·평화·안보 국외전문가 협력 강화」의 경우 2022년, 2024년, 2025년 집행액이 거의 없으며, 비목별 세부 집행 내역으로 볼 때 기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외업무여비 편성이 없어지면서 국제회의 연사 등 국외 전문가 초청이 어려워지고,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 「여성·평화·안보 국외전문가 협력 강화」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17	7	6	13	5	3	5	-
국외업무여비	30	18	4	-	7	7	3	-
임차료	10	10	30	0.4	21	13	-	-
사업추진비	-	-	1	0.1	1	-	1	-

연도	2023		2024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5	-	4	0.15	2	0.4
국외업무여비	22	22	-	-	-	-
임차료	1	-	4	-	2	-
사업추진비	1	-	1	0.8	1	0.8

(자료: 외교부)

이에 향후 외교부는 장기간 집행 부진 및 그에 따라 성과가 적은 내내역 사업들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9.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가. 개 요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은 사이버·신기술 등 신흥 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및 협력에 참여하고, 주요 다자안보기구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48억 4,800만원이고, 이 중 86%에 해당하는 41억 5,000만원이 집행됨.

<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300] 국제안보 협력 강화				4,795	4,848	4,848	4,150	5,148
	[2331] 사이버 및 군축 · 비확산 분야 양 · 다자 협력 강화			4,795	4,848	4,848	4,150	5,148
		[11] 일반	[401]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965	3,005	3,005	2,321	3,305
		[11] 일반	[402]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2,830	-	-	22	-
		[11] 일반	[403]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	1,843	1,843	1,807	1,843

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은 대량살상무기(WMD)[54]와 신형 군축·비확산 논의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요 군축·비확산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며,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30억 500만원이고, 이 중 2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05	3,005	-	10	-	3,015	2,321	-	694	77.2
-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541	541	-	10	-	553	529	-	24	97.8
-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103	103	-	-	-	103	98	-	5	95.1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2,361	2,361	-	-	-	2,360	1,695	-	665	71.8

54) Weapon of Mass Destruction

□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정확성 도모 필요

내역사업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제재 강화」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양·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여 등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중 내내역사업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은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2024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이하 MSMT) 운영 등을 위함임.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 활동 감시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콘텐츠 게재 시 참여국 간 협의는 진행 중이나 별도 사무국이 부재하여 홈페이지 관리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규사업인 동 내내역사업에 대해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55], 결산 결과 편성 비목의 부적정성 및 과도한 전용·불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전용이 있었음.

---

5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4.11. p.2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용역비는 “민간위탁,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즉, 대북제재 위반활동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보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연구용역비 260목 계열로 편성했어야 할 사업임에도 외교부는 20억원을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년 3월 26일 자로 그 중 13억원을 자체전용으로 정책연구비(260-02)로 옮기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실시 목적 정책연구비 필요”라고 명시함.

이는 2024년 4월 전문가 패널 종료 후 MSMT 출범까지 약 6개월의 정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사업수행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 단계의 비목 선택이 집행지침상 정의와 부합하지 않음을 간과한 것을 의미함.

나아가, 외교부는 자체전용을 통해 확보한 정책연구비 13억원 중 무려 5억 4,000만원(41.5%)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음.

이는 사업 수행 방식 변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허용된 자체전용 절차를 거쳤다는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전용 당시의 수요 예측이 대단히 부실했음을 의미함.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25년은 MSMT 운영 초기이다 보니 연구용역 수행 가능 기관 파악 섭외 및 용역 계약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한 불용이 있었으며, 2026년부터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이라고 밝힘.

향후 외교부는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정당한 비목을 설정하고, 사후적 예산 전용을 통한 관행적 예산 소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문제 조속 해결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말 전라남도 여수시 인근 해상을 통과 중이던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북한산 석탄의 해상환적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다만, 억류 기간 동안 선박 관리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외교부는 내역사업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에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동 선박 관리 예산은 2025년에는 해당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에 편성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러나 해당 내내역사업의 취지상 해당 선박 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예산 집행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동 내내역사업의 목적은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해체 이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조사보고서를 작성·발간하는 것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라는

정책의 대상이 같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국회가 사업목적별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취지와는 반함.

이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대북제재 위반 대응 전반'이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예산을 의결했어야 하나, 예산안 심사 당시 이 사업은 전문가 패널 해체에 따른 조사·보고서 발간 공백 해소로 설명되었을 뿐, 나포 선박 관리라는 별개 집행업무는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논의된 바 없음.[56]

또한, 동 선박 관리 예산은 2024년 최초 편성 시에도 유류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57]에 따른 계약 절차를 미준수한 소지가 있고, 예산이 세목조정으로 확보되기 전인 2024년 5월 10일에 이미 유류를 공급받아 지출의무를 발생시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58]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로부터 지적[59]받은 바 있음.

---

56)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11. p.92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외교부는 억류한 무국적 선박에 대한 유류공급을 위해 유류공급업체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나, 외교부는 이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5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9)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8. p.26

따라서 외교부는 ‘전문가 패널 해체에 따른 조사·보고서 발간’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나포 선박 관리 예산을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선박 억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다.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사업은 사이버안보 등 포괄적 신흥안보 문제 관련 국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해적 문제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 활동을 통한 국제 협력과 NATO[60], OSCE[61] 등 주요안보기구와의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18억 4,300만원이고, 이 중 1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사이버안보 외교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사이버안보 외교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	1,843	1,843	5	△10	-	1,838	1,807	-	31	98.1
- 세계신안보포럼개최	1,351	1,351	5	△29	-	1,327	1,319	-	8	97.6
- 사이버 · 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대응 협력 강화	172	172	-	△70	-	102	91	-	11	53
- 국제안보이슈 협력강화	170	170	-	91	-	261	257	-	4	151.2
- 대테러중점공관 운영	140	140	-	△3	-	137	129	-	8	92.2
- 청해부대 파병활동 지원	10	10	-	1	-	11	11	-	-	110

60)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aety Organization

61)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국외여비로의 지나친 전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은 NATO, OSCE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한 국제회의 참석을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하고 있음.

2025년에도 NATO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였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인한 일부 내역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용되어, 당초 국회의 예산 편성 취지에 다른 집행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사이버·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대응 협력 강화」의 예산 1억 7,200만원 중 7,000만원(40.7%)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사업「국제안보이슈 협력 강화」는 당초 편성 예산 1억 7,000만원의 53.5%인 9,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주무국 주요 수행 인원의 출장 비용을 의전실에서 총괄 집행하고, 그 외 실무자 출장 비용은 주무국이 집행하고 있는데,

2025년 NATO 정상회의는 국가안보실장 대리참석으로 결정되어 국제안보국 자체 예산으로 국가안보실 출장 인원을 포함하여 주요 수행인원의 출장 비용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그리고 정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주요 국제안보 회의의 경우 여러 국내외 정세 및 현안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예산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국제회의를 매년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참석 범위가 직전에 결정됨에 따라 매년 예산의 대규모 전용을 관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62)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으로 경비가 사용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날 여지가 있음.

<최근 3개년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내 국외업무여비 관련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6.23.)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403)	일반수용비 (210-01)	13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403)	국외 업무 여비 (220-02)	하반기 달러화 상승 등으로 인한 출장 비용 증가 및 사이버·다자안보 분야 주요회의 급증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
		임차료 (210-07)	2			
		일반용역비 (210-14)	10			
		사업추진비 (240-01)	5			
		정책연구비 (260-02)	30			
전용 (2024.9.19.)	테러대응체제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2231-402)	일반수용비 (210-01)	20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2231-402)	국외 업무 여비 (220-02)	'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 불가능한 국외출장 발생 으로 인한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충당
		임차료 (210-07)	24			
		사업추진비 (240-01)	8			
		정책연구비 (260-02)	30			
전용 (2023.7.12.)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일반수용비 (210-01)	14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국외여비 (220-02)	'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 불가능한 국외출장 발생 및

6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231-402)	임차료 (210-07)	18	(2231-402)		국제회의 재개로 인한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충당
		일반용역비 (210-14)	6			
		사업추진비 (240-01)	8			

(자료: 외교부)

또한, 이러한 타 비목의 국외업무여비로의 과도한 전용은 기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타 비목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음.

2025년의 경우 「사이버·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대응 협력 강화」내역사업 내 정책연구비(260-02) 4,000만원 중 3,000만원이 전용으로 감액되며 예산현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듦.

해당 예산은 500만원만 집행[63]되고 50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전용 이후 적절한 예산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워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양질의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전용으로 인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예산 편성·집행과정의 면밀함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향후 외교부는 정상, 장관급 참석 고위 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의전실-주요 실국 간 예산집행 관계를 재정립하여 지나친 전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3) 서울대학교 정보세계정치학회, "사이버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현황과 향후 한국의 과제"

10. 국제개발협력

가. 개 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64],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65],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66], ⅳ) 중동CIS지역 국가원조[67], ⅴ) 글로벌 프로그램[68], ⅵ) 협력사업 지원[69], ⅶ) 전략적협력 강화[70], ⅷ)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71] 일부(인도적지원 일부[72] 및 민관협력사업),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예산임.

외교부는「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사업 중「ODA 선진화」 세부사업과「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의 일부[73]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의 2025년 본예산은 1조 9,670억 1,400만원이며, 2차 추경 기

64) 정부의 對아시아 외교 및 아세안국가 대상 전략적 ODA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경제 개발협력 수요 대응

65) 기후·보건·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자립 기반 구축, 최빈국 중심의 빈곤퇴치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

66) 중남미 지역의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차 개선을 통한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행정·거버넌스 강화

67) 중동CIS지역의 인권·평화·재건 사업 집중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개발협력 공동목표 달성 기여

68) 공공 및 민간,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발전경험 전수 및 인력 해외진출 기여

69) ODA 대표기관으로서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한 대외인지도 강화, 디지털 변혁 및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 제고

70) 우리정부의 주요 국정·외교과제 지원 및 대외전략에 기여하는 ODA 추진 및 국익 창출 지원

71)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선진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격에 걸맞은 수준의 ODA 지원 및 국익 증진 기반 마련

72) 2438-402 중 민관협력사업 및 2438-403

73) 2438-402 중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내역사업

준 예산은 1조 9,336억 4,400만원이고, 이 중 1조 9,29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국제개발협력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1,893,806	1,967,014	1,933,644	1,929,160	1,487,103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49,975	307,548	296,178	296,178	277,233
		[11] 일반	[401] 베트남(ODA)	41,869	57,293	52,293	48,693	47,987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ODA)	15,016	17,114	17,114	17,114	18,366
		[11] 일반	[403] 캄보디아(ODA)	22,339	21,232	21,232	21,232	23,834
		[11] 일반	[404] 필리핀(ODA)	21,613	30,470	30,470	35,640	27,632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ODA)	9,410	14,044	14,044	13,567	10,022
		[11] 일반	[406] 몽골(ODA)	16,706	20,937	20,937	20,437	22,449
		[11] 일반	[407] 라오스(ODA)	26,752	27,290	27,290	24,820	25,006
		[11] 일반	[408] 스리랑카(ODA)	18,842	7,975	7,975	7,975	7,975
		[11] 일반	[409] 네팔(ODA)	10,101	14,653	14,653	14,653	16,850
		[11] 일반	[410] 파키스탄(ODA)	8,869	11,315	11,315	11,815	12,39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7,955	83,648	77,278	78,655	59,041
		[11] 일반	[412] 인도(ODA)	190	250	250	250	699
		[11] 일반	[413] 미얀마(ODA)	314	1,327	1,327	1,327	4,977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89,238	302,087	289,087	289,087	246,009
		[11] 일반	[401] 가나(ODA)	15,943	20,583	20,583	22,183	18,695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ODA)	28,804	28,644	28,644	28,644	23,378
		[11] 일반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7,451	178,966	173,966	173,966	129,847
		[11] 일반	[404] 르완다(ODA)	15,714	17,733	17,733	17,733	19,850
		[11] 일반	[405] 우간다(ODA)	13,620	17,547	17,547	17,547	18,767
		[11] 일반	[406] 탄자니아(ODA)	16,981	17,931	9,931	9,931	17,538
		[11] 일반	[407] 세네갈(ODA)	12,367	12,507	12,507	11,507	9,148
		[11] 일반	[408] 이집트(ODA)	8,358	8,176	8,176	7,576	8,786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2,784	94,432	94,432	94,432	80,088
		[11] 일반	[401] 콜롬비아(ODA)	8,306	11,229	11,229	8,782	9,720
		[11] 일반	[402] 페루(ODA)	7,101	9,497	9,497	12,847	17,552
		[11] 일반	[403] 볼리비아(ODA)	9,224	17,250	17,250	13,553	13,180
		[11] 일반	[404] 파라과이(ODA)	15,038	11,100	11,100	9,200	9,364
		[11] 일반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3,115	45,356	45,356	50,051	30,272
	[243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19,449	115,139	111,139	111,139	92,335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ODA)	19,274	22,020	22,020	22,020	20,258
		[11] 일반	[402]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0,027	69,972	65,972	63,356	52,916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ODA)	17,566	12,653	12,653	15,419	11,636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ODA)	1,882	5,439	5,439	5,439	2,500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ODA)	700	5,055	5,055	4,905	5,025
	[2435] 글로벌 프로그램			306,090	336,244	331,244	331,244	288,845
		[11] 일반	[401]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23,805	143,026	143,026	145,088	127,245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2] 글로벌연수(ODA)	66,962	67,973	62,973	62,373	73,640
		[11] 일반	[403] 국제기구협력(ODA)	80,207	80,015	80,015	79,273	35,030
		[11] 일반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35,116	45,230	45,230	44,510	52,930
	[2436] 협력사업 지원			54,450	61,390	61,390	61,390	91,576
		[11] 일반	[401] 협력사업 지원(ODA)	54,450	61,390	61,390	61,390	91,576
	[2437] 전략적협력강화			5,661	6,400	6,400	2,000	7,300
		[11] 일반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5,661	6,400	6,400	2,000	7,3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796,159	743,774	743,774	743,690	403,717
		[11] 일반	[401] ODA 선진화	714	1,271	1,271	1,212	1,066
		[11] 일반	[402] 인도적지원(ODA)	740,079	677,503	677,503	677,477	341,503
		[11] 일반	[403] 민관협력사업(ODA)	55,365	65,000	65,000	65,000	49,518
		[11] 일반	[404]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	-	-	11,630

나. 인도적 지원(ODA)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실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것임.

2025년 본예산은 6,775억 300만원이며, 이 중 6,77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인도적지원 (ODA)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677,503	677,503	-	-	-	667,503	677,477	-	26	100.0	100.0

「인도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 2025년도 인도적 지원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예산						2026 예산	집행률	
	결산	본예산	추경(A)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결산 (C)		예산액 대비 (C/A)	현액 대비 (C/B)
합 계	740,079	677,503	677,503	-	-	677,503	677,477	341,503	100.0	100.0
1. 해외긴급구호	734,600	670,016	670,016	-	-	670,016	670,016	313,156	100.0	100.0
재난대응	696,983	628,396	628,396	-	-	628,396	629,804	313,156	100.2	100.2
재난대응시스템강화	6,417	8,500	8,500	-	-	8,500	7,092	5,600	83.4	83.4
국제부담금	33,120	33,120	33,120	-		33,120	33,120	16,560	100.0	100.0
2 산전인도적지원 역량강화	179	187	187	-	-	187	161	187	86.1	86.1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74]	5,300	7,300	7,300	-	-	7,300	7,300	6,000	100.0	100.0

* '26년부터 재난대응시스템강화 및 국제부담금은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74) KOICA 출연금 지급

「인도적지원(ODA)」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역사업은 「해외긴급구호」인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6,700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7,346억 대비 약 8.8% 감액 편성되었음.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은 다시 KOICA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하는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사업과,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제부담금' 사업으로 나뉨.

□ 인도적 지원 사업 성과 관리 개선 필요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 내의 ‘재난대응’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긴급재난’과 ‘만성재난’으로 나뉘어 집행되며, 2025년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긴급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천불)

연번	지원 내용		지원경로	금액
1	미국 LA 산불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CCF)	1,000
2	미얀마 지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ICRC[75]	2,000
		현물 지원	IFRC[76]	2,000
3	타지키스탄 지진		WFP[77]	100
4	시리아 의료기기 지원		WHO[78]	3,000
5	아프가니스탄 지진		OCHA[79]	1,000
6	아프가니스탄 지진		UNHCR[80]	1,000
7	멕시코 폭우		UNICEF[81]	150
8	베트남 태풍		IOM[82]	1,000
9	필리핀 태풍		IFRC	1,000
10	카리브 3개국(자메이카, 쿠바, 아이티) 허리케인		자메이카 재난관리청	300
11			WHO/PAHO[83]	300
12			WFP	200
13	동·서남아 3개국(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홍수 및 산사태		베트남 농업환경부	500
14			태국 외교부 수원총괄청	500
15			WFP	500
16	가자지구 내 잔해제거 및 초기 복구 등 지원		UNDP[84]	10,000
17	아프가니스탄 식량 및 영양 지원		WFP	550
18	우간다 난민 위기 대응		UNHCR	400
19	DR콩고 내 무력분쟁 피해 지원		ICRC	400
20	ACT-A 기여		Gavi[85]	50,000
			Unitaid[86]	15,000
			MMV[87]	1,000
			STOP TB[88]	1,000
			CEPI[89]	10,000
			WHO	3,000
			UNICEF	20,000
합 계				**125,900**

(자료: 외교부)

< 만성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천불)

연번	지원 내용		지원경로	금액
1	예멘에 대한 인도적 지원		OCHA	2,500
			UNOPS[90]	500
			UNICEF	2,000
2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WFP	15,000
			UNICEF	10,000
			UNDP	1,0,000
3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WFP	10,000
			UNICEF	15,000
			UNDP	10,000
4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주변국)	요르단	UNHCR	3,000
			UNRWA	1,000
		레바논	UNHCR	3,000
		튀르키예	UNHCR	3,000
5	에티오피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ICEF	10,000
6	중남미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베네수엘라	OCHA	1,000
			UNICEF	2,000
		콜롬비아	UNHCR	1,000
			IOM	1,000
		에콰도르	IOM	1,000
		아이티	UNICEF	1,800
			UNDP	1,200

75)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76) IFRC(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연맹)

77)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78)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79)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인도지원조정실)

80)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81)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연합아동기금)

82)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83) PAHO(The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범미보건기구)

84)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85)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세계백신면역연합)

86) Unitaid(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국제의약품구매기구)

87)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말라리아의약품벤처)

88) Stop TB(Stop Tuberculosis)

89)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감염병혁신연합)

연번	지원 내용		지원경로	금액
		과테말라	IOM	1,000
		온두라스	UNICEF	1,000
		엘살바도르	IOM	1,000
		페루	IOM	1,000
		쿠바	UNICEF	1,000
			PAHO/WHO	1,000
7	DR콩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ICEF	5,000
			UNDP	5000
			ICRC	400
8	수단에 대한 인도적 지원		WFP	10,000
9	남수단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ICEF	5,000
10	우간다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HCR	400
11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WFP	10,000
			UNICEF	10,000
			UNDP	10,000
12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HCR	5,000
			IOM	5,000
13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DP	15,000
			WFP	550
14	중동 지역 내 난민 지원	튀르키예	튀르키예 적신월사	10,000
		이집트	이집트 적신월사	10,000
15	인도지원 국제공조 기여		WFP	2,000
			UNHCR	1,000
			UNICEF	1,000
			UNFPA[91]	1,500
			ICRC	1,000
			IOM	1,000
			UNDRR[92]	600
			OCHA	1,000
			IFRC	1,000
16	UN 인도지원조정실(OCHA) 비지정 기여		OCHA	4,479
17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발적 기여		CERF[93]	18,000
18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물 지원	38,300
			WFP	6,000
			UNDP	14,000
			OCHA	10,000
19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주변국)	폴란드	IOM	30,000
			UNHCR	
합 계				**342,229**

(자료: 외교부)

90) UNOPS(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91) UNFPA(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유엔인구기금)

동 사업은 성과 측정을 위하여 2023년부터 ‘인도적 지원 선진화 달성도’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동 성과지표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와 ‘양질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도’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됨.

< 재난대응 사업 성과지표 측정 산식 >

① 인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50% (실제 지원건수/지원 협의건수) + ② 양질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도 50% (인도적 지원 중점협력기구 사업 지원/만성위기 지원)

동 지표에 따른 목표치는 97점으로, 지표가 생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 달성률은 100%를 상회하였음.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연도	2023	2024	2025
목표(점)	97.5	97	97
실적(점)	100	100	100
달성도	102.6	103.1	103.1

그러나 동 지표는 사업의 성과나 투입 대비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① ‘인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표는 실제 지원건수를 지원 협의건수로 나눈 값으로, 지원의 규모·효과 및 수혜 정도와 무관히 협의된 사업을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수준에 그침. ② ‘양질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도’ 지표 또한 지원 이후 취약계층의 회복력 제고 등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등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함.

92)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93)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중앙긴급구호기금)

한편,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현행 성과지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월액 발생 등 집행관리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실효적인 수준의 성과관리 및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26년도 예산 감축을 권고하였음[94].

따라서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준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94) 외교부,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5년) 인도적지원 최종보고서, 6쪽

11. 국제법적 대응 강화

가. 개 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은 정부 대응체제 및 협의 강화를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 및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해 대응하고, 국제규범 수립, 국제법 법전화 등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남극·항공 관련 국제법적 대응 지속·강화를 통해 국제법 발전 및 국제규범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5년 예산은 65억 2,300만원이고, 이 중 61억 800만원이 집행됨.

< 국제법적 대응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6,310	6,523	6,523	6,108	6,774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6,310	6,523	6,523	6,108	6,774
		[11] 일반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310	6,523	6,523	6,108	6,774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은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국제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법률 기구 진출 활동 지원, 조약 체결 지원 및 검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 본예산은 65억 2,300만원이며, 이 중 6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6,523	6,523	-	-	-	6,523	6,108	-	415	93.6	93.6

□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지원 계획 조기 수립 필요

ICJ 재판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9년으로, 선거는 3년마다 돌아오며 2026년 11월에 재판관 15명 중 5인을 선출할 예정임.

우리는 2025년 3월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지지 교섭을 위하여 총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ICJ 재판관 지지 교섭 관련 집행액(2025) >

연번	내역	금액(천원)	비목
1	지지 교섭 관련 항공운임 등	41,098	국외여비(220-01)
2	지지 교섭 관련 업무협의	22,407	사업추진비(240-01)
3	홍보기념품 구입 및 브로슈어 제작 등	36,892	일반수용비(210-01)
4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기획	47,850	일반용역비(210-14)
5	지지 교섭 리셉션 장소 임차 등	18,019	임차료(210-07)
계		166,266	

(자료: 외교부)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선거 지원 관련 예산이 명확히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동 예산 집행을 위한 내역 변경 및 세목 조정이 다수 발생하였음.

동 예산들은 대부분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 내의 '국제법적 기반구축' 내내역사업에서 집행되었는데, '국제법적 기반구축' 내내역사업에 국제법 관련 전문가 자문,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국제회의 참석, 이슈 연구 등 목적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제법률기구 진출 지원 목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

<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 국제법적 기반구축 : 524백만원
  · 국제법 주요현안 전문가 자문, 책자 발간 등 137백만원
  · 국제법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장소 임차 5백만원
  · 국제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위탁 125백만원
  · 일반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151백만원
  · 국제법 주요 이슈 관련 주요 인사 면담 · 협의 16백만원
  · 국제법 주요 이슈 연구 및 검토 86백만원
  · 관련 자료 및 전산장비 등 구입 4백만원

(자료: 외교부)

이에 따라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 교섭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타 내역사업 및 세목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교섭 관련 예산 조정 현황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025.6.20.)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30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영토주권 수호 내역사업 →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 교섭에 소요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3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1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영토주권 수호 내역사업 →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 교섭에 소요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3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40-01	14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40-01	(영토주권 수호 내역사업 →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 교섭에 소요된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6.23.)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20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14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홍보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6.)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1	14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2531-401)	210-07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홍보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14	ICJ 재판관 선거 후보자 지지 교섭에 소요된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ICJ 재판관 선거는 선거 주기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국(2024년 9월), 싱가포르(2024년 10월), 프랑스(2024년 10월)의 경우 ICJ 선거를 약 2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이미 후보를 공식화하고 활발한 선거 지지 교섭 활동을 시작했던바[95], 우리 정부는 향후 입후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95) 2027~2036년 임기의 ICJ 재판관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한국의 백진현 전 ITLOS 소장, 싱가포르의 Rena Lee, 프랑스의 François Alabrune, 영국의 Dapo Akande 등 각국의 유력 국제법 전문가들이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

12.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개 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및 대(對) 유네스코[96]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호와 신뢰를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및 체계화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액은 224억 7,500만원이고, 이 중 208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6%임.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0,812	22,475	22,475	20,813	25,561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0,812	22,475	22,475	20,813	25,561
		[11] 일반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254	2,423	2,423	2,126	2,488
		[11] 일반	[402]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2,338	2,346	2,346	2,153	1,789
		[11] 일반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429	15,754	15,754	14,599	18,857
		[11] 일반	[405] 디지털 공공외교	1,791	1,952	1,952	1,935	2,427

96)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은 양자 간 문화교류 증진,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홍보 및 유네스코(UNESCO) 등의 다자협력체를 매개로 한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국격 제고 및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유네스코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對) 유네스코 외교강화」, 재외공관에 우리 미술품을 지원·전시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24억 2,300만원으로 이 중 2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원을 불용함.

<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1,584	1,584	-	10	-	1,594	1,359	-	235	85.8	85.3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839	839	-	△10	-	829	767	-	62	91.4	92.5
계	2,423	2,423	-	-	-	2,423	2,126	-	297	87.7	87.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와의 관례적 용역계약의 부적정성 및 보조금 전환 필요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내역사업은 유네스코를 매개로 문화·교육·과학 분야의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15억 8,400만원이며, 전용액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5억 9,400만원 중 1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500만원을 불용함(집행률 85.3%).

외교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97]에 따

9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유네스코 헌장 제7조
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관련 기관과 UNESCO의 활동과 연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괄적인 정부 및 관련 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 설립이 선호된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라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98]와 매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용역(260-02목)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및 관련 전문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54년 창립된 기관임.

동 위원회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국제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및 파견 대표 선정 심의, 관련 국제회의 결정사항의 국내 이행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함.

위원회 정원은 6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외교부차관을 비롯하여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연계된 구조를 가짐.

---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unesco.or.kr/)에서 발췌

[국제법적 기반 : 「유네스코헌장」 제7조 회원국의 유네스코 활동 진작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1. 교육 • 과학 • 문화 등 관련 단체가 유네스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2. 유네스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회/집행이사회 대표단 및 정부에 자문 제공
3. 유네스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락기구로서의 임무 수행

[국내법적 기반:「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활동

1. 교육 • 과학 • 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 • 과학 • 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수행

최근 3년간 외교부는 해당 과제들에 대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계약 등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최근 3개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	계약금액 (집행액)	계약기간	계약 방법	사유	공개여부
2023	미국 유네스코 재가입 영향 파악	10	23.9~23.11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2	비공개[99]
	2023 주요국 유산동향	49	23.5~2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100](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202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진출 계기 역량 강화	50	24.3.~24.12.			
2025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진출 계기 역량 강화	100	25.4~25.12			

*자료: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그러나 동 사업은 수행기관이 사실상 지정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시장 가

9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격 형성이 불가능한 독점적 구조이므로, 형식적 용역계약보다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 형태로 예산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함.

국회 외통위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의 집행 전환을 권고하였고 외교부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나[101], 2025회계연도에도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편성 근거로 '연구용역 2건(건당 5,000만원, 총 1억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102]하였으나, 실제 집행 내역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진출 계기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1건에 대해 계약금액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대응 및 후속 조치 이행 현황 점검 등 유네스코 민감 현안에 대응하고자 연구자의 회의 참석 및 현지 조사 여비를 용역비 내에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101) (외통위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p82~8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의 기관이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연구비의 경우 사실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어, 동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임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748쪽.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에 대한 외교부 후속조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신규 편성을 시도하는 중이며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편성 노력중임

102)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공통제출자료 Ⅱ-1.

< 동 정책연구용역 산출내역서>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진출 계기 역량 강화

▢ 예산 산출 내역

- 예산총액: 100,000,000원(금 일억원)
- 세부내역 (단위: 원)

목		세목	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보수	인건비	1,000천원x1명x8월 1,000천원x2명x8월 3,000천원x1명x7월	45,000,000	책임연구 공동연구 연구보조
		소계(인건비)			45,000,000	
경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연구수당	1,000천원x4명x4월	16,000,000	외부 공동연구
			회의수당	300천원x2명x3회	1,800,000	준비회의 등
			인쇄비	500천원x1회	500,000	결과보고서 출력/제본
			기타잡비	1,000천원x1회	1,000,000	사무용품 등
		소계(일반수용비)			19,300,000	
		관리용역비	채용시스템	500천원x1회	500,000	연구보조(계약직) 채용시스템 활용
		소계(관리용역비)			500,000	
		국외여비	항공 및 체재비	2,000천원x3명x1회 4,500천원x3명x1회 4,500천원x2명x1회	28,500,000	현지조사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협약총회
		소계(국외여비)			28,500,000	
		사업추진비	간담회비	30천원x10명x4회	1,200,000	
		소계(사업추진비)			1,200,000	
	소계(경비)				49,500,000	
누계(인건비+경비=순용역원가)					94,500,000	
간접비				5,500,000원X1회	5,500,000	순용역원가(94,500천원)의 6%(5,670천원)에서 조정
총계(순용역원가+간접비)					100,000,000	

※ 인건비 및 연구수당 :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중 책임 연구원 월 3,705,904원(참여율 50%)의 27%(1,000,594.08원/만원단위 이하 절사/최종참여율 13.5%), 연구원 월 2,841,638원(참여율 50%)의 36%(1,022,989.68원/만원단위 이하 절사/최종참여율 18%),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참여율 50%)의 160%(3,039,262.4원/십만원단위 이하 절사/최종 참여율 80%/임금 외 관련 보험 등 포함) 기준.

*자료: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동 정책연구용역의 실제 산출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가 설명한 '여비 신설'은 민감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진의 현지답사 및 회의 참석 출장 경비(2,850만원)를 용역 산출내역에 포함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사도광산 현지답사 등 충실한 연구 수행을 위한 출장의 필요성 자체는 이해될 수 있음. 다만, 전문성을 이유로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연구보조원 채용시스템 활용비(50만원)'까지 용역 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용역 원가산정 및 경비 계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행적 수의계약 및 용역 방식 유지는 예산집행지침 준수 문제를 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정산 및 사후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산 운용 구조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됨.

실제 현행 정책연구용역 방식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 등을 인정받아 기관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반면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될 경우, 집행 잔액은 전액 국고로 반납되어야 하고, 'e나라도움'[103]'을 통한 건별 정산 및 보조금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됨.

---

103)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임(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 > e나라도움 운영 > e나라도움 소개).

<정책연구용역과 민간경상보조 비교>

구분	정책연구용역	민간경상보조	비고(보조금 전환 시)
적용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및 처벌 조항 강화
잔액 처리	기관 수익으로 귀속	전액 국고 반납	잔액 반납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간접비 인정 여부	일반관리비 등 인정	인정 안 됨(실비 정산)	기관 운영 재원 축소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정산 방식	검수 후 대금 일괄 지급	e나라도움 건별 정산	증빙 책임 강화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예산처 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재구성[104]

따라서 외교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체결하는 반복적 수의계약 사업들에 대해, 관행적인 정책연구용역(260목)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민간경상보조(320목) 과목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정산

10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아닌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0.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보고, 실적 심사, 외부 감사 등 촘촘한 사후 통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사업' 의 집행 관리 개선 필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사업은 재외공관 전시장 조성[105] 및 문화재 전시, 해외 주요 관람시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등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한국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를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내내역사업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사업'은 해외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한국어 해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신설되어 편성·집행되고 있음.

최근 한류 열풍 확산 및 K-POP 등 글로벌 문화 콘텐츠 내 한국어 가사의 상징적 위상 강화로 주요 관람 시설 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는 현지 관람시설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편의를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을 직접 제고하는 공공외교적 효과를 일부 창출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집행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먼저, 2025년도 집행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수의 '반납'이 발생하였음.

105) 국립현대미술관 임차 작품 953점을 바탕으로 108개 공관을 전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2025년 해외 주요 관광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사업비 집행세부내역>

(단위: 천원)

일자	집행액	반납액	재외공관명	비고
2025-03-12	24,808		주독일(대)	
2025-03-12	10,215		주스웨덴(대)	
2025-03-12	2,291		주이집트(대)	
2025-03-12	3,401		주터어키(대)	
2025-03-12	2,919		주포르투갈(대)	
2025-03-12	8,756		주헝가리(대)	
2025-03-12	6,859		주라트비아(대)	
2025-03-12	8,807		주룩셈부르크(대)	
2025-03-12	8,756		주에콰도르(대)	
2025-03-12	3,648		주크로아티아(대)	
2025-04-17		-3,248	주스웨덴(대)	
2025-04-17		-698	주이집트(대)	
2025-05-07		-7,801	주독일(대)	
2025-05-07		-995	주터어키(대)	
2025-05-07		-822	주포르투갈(대)	
2025-05-07		-7,548	주헝가리(대)	
2025-05-07		-2,133	주라트비아(대)	
2025-05-26		-2,724	주룩셈부르크(대)	
2025-05-07		-2,596	주에콰도르(대)	
2025-05-07		-1,063	주크로아티아(대)	
2025-08-07	14,070		주이탈리아(대)	추가지원사업비
2025-12-26		-1,528	주이탈리아(대)	추가지원사업비 반납
2025-11-28	969		주이집트(대)	추가지원사업비
2025-06-05	1,400		주룩셈부르크(대)	추가지원사업비
2025-10-31		-49	주룩셈부르크(대)	추가지원사업비 반납
2025-13-15		-1,586	주스웨덴(대)	연도말 잔액 반납
2025-13-15		-1	주이집트(대)	연도말 잔액 반납
2025-13-15		-420	주터어키(대)	연도말 잔액 반납
2025-13-15		-999	주라트비아(대)	연도말 잔액 반납

*외교부 지출대장(디브레인, 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연초 재외공관 예산 송금 과정에서 환율 적용 착오로 초과 교부된 차액을 환수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함.

비록 사후 정산을 통해 과다 지급된 예산이 회수되었으나, 예산 교부 단계에서 처리 착오로 인한 반납이 다수 발생한 점은 회계 관리의 정교함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음.

향후 예산 교부 시 환율 산정 및 송금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반납 및 정산 절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3개년(2023~23025년)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현지 협력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초기 견적 검증 미흡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전액이 불용되거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최근 3개년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사업 집행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	공관명	관광지/ 기관명	예산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2025	주독일(대)	상수시 궁전	24,808	17,007	7,801	환율 적용 착오
	주에콰도르(대)	보토 나시오날대성당	8,756	6,160	2,596	환율 적용 착오
	주크로아티아(대)	스플리트 관광청	3,648	2,585	1,063	환율 적용 착오
	주포르투갈(대)	리스본 Gray Line 시티투어 버스	2,919	2,097	822	환율 적용 착오
	주룩셈부르크(대)	비안덴성	7,483	7,434	49	사업 집행 잔액
	주이집트(대)	이집트문명박물관	2,563	2,562	1	

연도	공관명	관광지/ 기관명	예산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주라트비아(대)	라트비아 국립미술관	4,726	3,727	999	현지 기관이 높은 견적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사업 후 지출 비용이 그보다 낮아짐
	주스웨덴(대)	노벨 박물관	6,967	5,381	1,586	
	주이탈리아(대)	콜로세움	14,070	12,542	1,528	
	주헝가리(대)	리스트페렌츠 기념 박물관	8,756	1,208	**7,548**	
	주튀르키예(대)	괴레메야외 박물관 및 갈라타 탑	2,406	0	**2,406**	현지 협력기관이 요구하는 규격·품질 기준에 맞는 녹음·편집 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
2024	주프랑스(대)	로댕 미술관	17,068	17,068	-	-
	주오스트리아(대)	레오폴드 미술관	13,129	13,129	-	-
	주독일(대)	베를린 국립 회화관	15,755	15,755	-	-
	주다낭(총)	후에 고도(古都)유적지	3,939	3,167	772	사업 집행 잔액
	주교황청(대)	성베드로 대성당	6,565	6,251	314	
	주에콰도르(대)	적도기념비 민족박물관	6,565	6,086	479	
	슬로바키아(대)	성 마틴 대성당	6,565	5,927	638	
	주로스앤젤레스 (총)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10,503	-	**10,503**	당초 기획했던 0감독 참여 비디오 가이드 녹음 작업이 0감독측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 불가**
2023	주독일(대)	괴테박물관	15,628	15,628	-	-
	주핀란드(대)	헬싱키 버스투어	5,209	5,209	-	-
	주보스턴(총)	보스턴 미술관	6,513	6,513	-	-
	주네덜란드(대)	에셔미술관	780	671	109	사업 집행 잔액
	주헝가리(대)	부다페스트 미술관	6,512	6,171	341	
	주바르셀로나(총)	바르셀로나 대성당	7,814	7,722	92	
	주슬로바키아(대)	브라티슬라바	13,023	11,459	1,564	현지 기관이 높은 견적을

연도	공관명	관광지/ 기관명	예산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시티투어버스				
	주오스트리아(대)	알베르티나 미술관	13,023	8,817	**4,206**	제시하였으나, 실제 사업 후 지출 비용이 그보다 낮아짐.
	주아르헨티나(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티투어버스	7,814	5,409	2,405	
	주로스앤젤레스 (총)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13,023	44	**12,979**	2023년 헐리우드 작가 및 배우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불가**

*자료: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2025년 주튀르키예대사관(240만 원), 2024년 및 2023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각 1,050만원, 1,297만원) 등의 경우 현지 여건 변화나 협력기관 사정으로 연내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주헝가리대사관(2025년 489만원 반납)이나 주오스트리아대사관(2023년 420만원 반납) 등은 현지 기관의 초기 견적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반영함에 따라 실제 수행 단계에서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이처럼 현지 여건과 사업 단가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예산 반납 및 불용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사업 추진 초기 수요조사 및 현지 협력기관의 플랫폼·규격 기준 검토를 정교화하여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교부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친 면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은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상대국과의 우호 증진 및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매 10주년, 25주년 등을 맞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정무·경제·문화 등 종합 외교행사를 개최하여 상대국과의 우호 증진 및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외교관계수립 기념행사」와,

우호교류의 해, 정상 및 고위급 상호방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FTA 체결, 국제기구 가입 등 특별한 외교적 계기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상대국과의 우호 증진 및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24억 2,300만원으로 이 중 2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8%임.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외교관계수립 기념행사	1,523	1,523	-	-	-	1,523	1,438	-	85	94.4	94.4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823	823	-	-	-	823	715	-	108	86.9	86.9
계	2,346	2,346	-	-	-	2,346	2,153	-	193	91.8	91.8

□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기념행사의 예산 집행 개선

외교부는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내역사업(총 8개국 9개 공관, 7억 1,500만원 집행)을 추진하면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및 ‘유럽 4개 공관 개관 기념행사’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행사명	관할 공관	행사일자 및 장소	집행액	주요 행사 내용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주보스턴 총영사관	2025.10.3. 뉴잉글랜드음악원 조던홀	25.3	- 보스턴한미예술협회 공동주최 ‘만세 칸타타’ 세계 최초 공연 - 피아니스트 백혜선 연주 및 뉴욕클래시컬오케스트라 협연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행사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2025.9.17.~9.18. 포트모르즈비 메리어트호텔	46.6	- 아이큐브(ICUVE) 공연팀의 마술·뮤지컬 결합 복합 공연 개최
한-뉴질랜드 FTA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주뉴질랜드 대사관	2025.9.20. 크라이스트처치 타운홀	176.7	- 인천시립무용단 '춤, 풍경' 공연 및 리셉션 - K-푸드·태권도·한글 부스, 한국 '옹기' 특별 전시관 운영 등
	주오클랜드 분관	2025.9.23. 오클랜드 아오테아센터 키리 테 카나와 극장		- 인천시립무용단 ‘춤, 풍경’ 공연 및 경제협력 영상 홍보
남아공 G20 개최 계기 기념행사	주남아공 대사관	2025.9.6. 프리토리아 선벳 아레나	106.6	- 한복 패션쇼(궁중 혼례복·현대 한복 등 4개 파트) - K-Tigers 공연(K팝 안무와 태권도의 결합) - 대학생 대상 태권도 워크샵
유럽 4개 공관 개관 기념행사	주룩셈부르크 대사관	2025.9.22. 필하모니 룩셈부르크	128	- K-클래식 공연(우리 가곡 및 룩셈부르크 전통 민요 편곡)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2025.9.24. 필하모니카 메인홀		- K-클래식 공연 및 리셉션(전통주와 김밥, 닭강정 등 K-푸드 활용)
	주에스토니아 대사관	2025.9.26. 탈린 국립음대 연주홀		- K-클래식 음악회 및 현지 음대생 대상 마스터클래스 개최
	주슬로베니아 대사관	2025.9.29. 류블랴나 음악대학 율리 베테토홀		- K-클래식 공연(현지 음대 홀 소규모 하우스콘서트 형태로 진행)

* 자료: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그러나 주보스턴총영사관이 추진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역사적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주된 참석자이자 수혜자가 현지 주재국 정부라기보다 해외 거주 재외동포 및 한인사회이며, 동포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양자 외교계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국가 기념일 행사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사업의 본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또한, 유럽 4개 공관 개관 기념행사 역시 상주 대사관의 신설 및 개소 행사로서, 재외공관의 조직·행정 인프라 확충 및 현지 소통 강화를 위한 공관 자체 운영 성격의 행사임.

특히 유럽 4개 공관의 개관 행사가 모두 'K-클래식 공연 및 현지 민요 연주'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개별 공관의 행정적인 개소 행사를 본부의 외교계기 기념사업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수교 및 양자 외교 계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가 기념일 행사나 공관 신설 개소 행사에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타 세부사업 예산[106]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106) 광복절 행사의 한인사회 결속 및 국가 정체성 확립 성격과 신설 공관의 현지 정착 및 대외 알림 등 행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재외공관 주요행사비(7033-402)'** 등 타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라. 디지털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는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대중과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총 19억 5,200만원으로, 이 중 19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임.

<디지털 공공외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1,439	1,439	-	-	-	1,439	1,432	-	7	99.5	99.5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	513	513	-	-	-	513	503	-	10	98.1	98.1
계	1,952	1,952	-	-	-	1,952	1,935	-	17	99.1	99.1

공공외교의 분야는 추진 목적과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선진 문화국가로서의 매력을 확산시키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해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화 공공외교, 둘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등과 관련된 지식 공공외교, 셋째,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공외교의 외연 확대에 힘쓰는 정책 공공외교임.

현재 공공외교는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재단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진 주체의 다변화는 동시에 사업의 파편화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관계 기관 간 사전 조정이나 체계적인 기획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부처 간 유사·중복 콘텐츠가 양산될 수 있으며, 특히 타 부처나 지자체가 강점을 가진 K-컬쳐, 한국어 등 문화·지식 분야에 외교부의 디지털 채널까지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외교부 본연의 '정책 공공외교'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외교부는 공공외교 주관부처로서 범정부 및 지자체 공공외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파편화된 사업들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함.

이와 함께 문화나 지식 분야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외교부의 디지털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 등은 외교 현안, 경제안보, 외교정책 방향 등 외교부 고유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공공외교' 전파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모파 스튜디오(MOFA Studio) 촬영 실적 저조 및 정례 기획 제작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2021년 청사 내 기존 사무공간을 정비·리모델링하여 구축[107]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용 공간인 'MOFA 스튜디오'를 운영·관리해오고 있음.

이는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차관 영상 메시지 및 외교 현안 정책 알림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목적임.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체 전문인력은 없으며,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위탁용역 업체를 통해 촬영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매년 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의 스튜디오 유지·보수 예산을 지속 집행하고 있으나, 모파 스튜디오의 연도별 촬영 실적은 2023년 153건, 2024년 71건, 2025년 54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모파 스튜디오 구축 이후 연도별 운용 실적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외교부장 · 차관 촬영	28	51	65	11	13
여타 부서 이용 (대관 등 포함)	93	103	88	60	41
계	121	154	153	71	54

*자료: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디지털공공외교과
*모파스튜디오 개소: 2021년 4월

107) 총 1억 3,000만원(자산취득비 1억원, 시설비 3,300만원)의 예산 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부장·차관 촬영 건수가 2023년 65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 여타 부서의 이용 건수 역시 2023년 88건에서 2025년 41건으로 46.5% 감소함.

이처럼 전체 이용 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2025년 기준 주당 평균 촬영 건수는 약 1건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2024년부터는 용역업체 인력이 스튜디오에 상주하지 않고 주 2회가량 촬영 일정이 있을 때만 방문하는 체제로 변경되어, 스튜디오 상시 운영·활용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시설 활용도 대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장관 촬영 건수 급감에 대해 재임 기간별 외교 활동 방식의 차이 및 대면·현장 중심의 외교 활동 기조 강화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타 부서의 이용 감소 역시 현장 야외 촬영 증가 및 쇼츠 등 콘텐츠 제작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스튜디오 활용 실적이 장·차관의 기호 및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본부 각 부서의 이용 건수까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모파 스튜디오가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이나 체계적인 기획 없이 각 부서의 산발적·수동적 촬영 수요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줌.

그 결과 대면 외교 증가 및 제작 환경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스튜디오가 유휴 공간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외교부는 모파 스튜디오의 이용 수요 축소 및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촬영 요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기획 및 편성을 정례화하는 등 모파 스튜디오의 가동률 제고와 사업 효율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가. 개 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액은 146억 7,900만원이고, 120억 6,100만원이 집행됨.

<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711	14,679	14,679	12,061	14,862
	[2731] 재외국민 보호			12,711	14,679	14,679	12,061	14,862
		[11] 일반	[401] 재외국민 보호	12,117	13,959	13,959	11,774	13,992
		[11] 일반	[402] 영사서비스 지원	594	720	720	287	870

나.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 강화를 위해 영사협력원 운영,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제 유지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디지털 영사안전콜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정보 전달 및 해외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예방 노력을 위한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국민 보호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3,959	13,959	137	-	-	14,096	11,774	-	2,322	84.3

2025년도 예산액은 139억 5,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40억 9,600만원 중 23억 2,200만원이 불용되고 117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4.3%임.

□ 해외위난 대응 예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 필요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내역사업은 해외 재난·분쟁·정세 불안 등 위난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 25억 4,6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8.8%에 그쳤음.

<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2,546	2,546	-	△9	-	2,537	1,242	-	1,295	2,492
-일반수용비(210-01)	220	220	-	△54	-	166	151	-	15	186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21	-	44	-	65	59	-	6	65
-임차료(210-07)	89	89	-	17	-	106	78	-	28	75
-일반용역비(210-14)	1,000	1,000	-	△17	-	983	29	-	954	1,010
-관리용역비(210-15)	85	85	-	-	-	85	53	-	32	85
-국내여비(220-01)	-	-	-	-	-	-	-	-	-	1
-국외업무여비(220-02)	444	444	-	-	-	444	239	-	205	424
-사업추진비(240-01)	17	17	-	△2	-	15	6	-	9	26
-일반연구비(260-01)	540	540	-	3	-	543	543	-	0	540
-정책연구비(260-02)	40	40	-	-	-	40	39	-	1	-

(자료: 외교부)

세부적으로 보면, 긴급대피 지원 예산은 1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7,500만원으로 집행률이 7.4%에 불과하였으며, 신속대응팀 파견도 4억 2,800만원 중 2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7.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사업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 2,546백만원	□ 1,242백만원
o 신속대응팀 파견(428백만원)	**o 신속대응팀 파견(204백만원)**
o 신속대응팀 운영 및 역량강화(98백만원)	o 신속대응팀 운영 및 역량강화(81백만원)
o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110백만원)	o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37백만원)
o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315백만원)	o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264백만원)
-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85	-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54
- 재난 대응 물품 등 지원 200	- 재난 대응 물품 등 지원 183
- 재외공관 안전문자메시지 발송 30	- 재외공관 안전문자메시지 발송 27
o 긴급대피 지원(1,010백만원)	**o 긴급대피 지원(75백만원)**
o 위기대응 컨설팅(500백만원)	o 위기대응 컨설팅(509백만원)
o 해외위난상황 대응 관련 지적 기반 구축(5백만원)	o 해외위난상황 대응 관련 지적 기반 구축(0.4백만원)
o 제2차 재외국민 보호 5개년 기본계획 마련(40백만원)	o 제2차 재외국민 보호 5개년 기본계획 마련(39백만원)
o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40백만원)	o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33백만원)

(자료: 외교부)

아울러, 최근 3년간 긴급대피 지원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20억 2,000만원 중 4억원(19.8%), 2024년 20억 2,000만원 중 5억 5,700만원(27.6%), 2025년 10억 1,000만원 중 7,500만원(7.4%)이 집행되는 데 그쳐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긴급대피 지원 예산이 해외 위난 발생 시 전세기·군수송기 투입 등 대규모 긴급대피에 활용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위난의 발생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도에도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 당시 우리 국민과 가족·동포 160명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 보호사업의 반복적인 불용 지적을 고려하여 2025년도 긴

급대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10억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해외 위난 대응 예산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실적 간의 차이가 장기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외교부는 해외 위난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하되, 최근의 집행실적과 국가별 위험도, 지역별 위난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긴급대피 지원 등 예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영사서비스 지원

「영사서비스 지원」은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 및 양·다자 영사외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 사증 발급 업무 지원, 영사 민원 처리 전자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 영사 현안이 다수인 국가를 대상으로 영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영사 현안 논의를 위한 「양·다자 영사외교 강화」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사서비스 지원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720	720	-	-	-	720	287	-	433	39.9

2025년도 예산액은 7억 2,000만원으로, 4억 3,300만원이 불용되고 2억 8,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9.9%임.

□ 재외공관 영사민원 전자결제 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 사업은 예산현액 6억 1,400만원 중 1억 8,7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30.5% 수준에 불과하며, 불용액은 4억 2,700만원에 달함.

< 재외공관영사서비스 향상 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재외공관영사서비스 향상	647	647	-	△33	-	614	187	-	427	797
- 일반수용비(210-01)	568	568	-	△23	-	545	123	-	423	318
-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	△10	-	0	0	-	0	10
- 사업추진비(240-01)	1	1	-	-	-	1	0	-	1	1
- 일반연구비(260-01)	38	38	-	-	-	38	34	-	4	0
- 자산취득비(430-01)	30	30	-	-	-	30	30	-	0	468

(자료: 외교부)

동 내역사업의 주요 사업인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로 예산에 반영·시행된 사업으로 재외공관에서 여권·사증 등 영사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수수료와 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에 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만 약 3억 9,000만원 규모의 집행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부사업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재외공관영사서비스 향상 사업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 647백만원 ○ 영사서비스 물품 구메·보급(100백만원) **○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498백만원)** ○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위탁(38백만원) ○ 사증 발급 등 영사 민원 업무 점검(11백만원)	□ 187백만원 ○ 영사서비스 물품 구매·보급(45백만원) **○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108백만원)** ○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위탁(34백만원)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 사업의 예산 편성에 앞서 2024년 3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9개 공관의 수요를 확인하고, 미회신 공관을 고려하여 100개 공관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2025년에 전자결제 수수료 지원을 요청한 공관이 51개에 그쳤으며, 주재국의 정보통신 환경과 카드결제 문화, 현지 법령상 제약, 예상하지 못한 사업운영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상당수 공관의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 공관별 전자결제 도입 지연 사례 >

공관명	도입 지연 사유
주밀라노(총)	당초 계약 희망업체와 제반사항 협의 후 카드단말기까지 수령하였으나 해당 업체본사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다른 카드회사와 계약을 추진
주이스탄불(총)	주재국 은행의 카드단말기 사용 승인 절차 지연으로 카드단말기 미설치
주핀란드(대)	서비스 공급사 내부 검토 지연
주덴마크(대)	카드결제 운영사의 라이센스 운영 허가 문제로 도입 지연

(자료: 외교부)

다만, 이러한 사업 추진상의 제약요인 중 일부는 신규 확대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단순한 수요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관별 실제 도입 가능성, 주재국의 제도적·기술적 여건, 과거 영사민원 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요예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교부는 공관별 전자결제 이용실적과 실제 수수료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주재국의 제도적·기술적 여건 및 실제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요예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규 도입 공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집행 실적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경제외교

가. 개 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은 1,298억 4,100만원이고, 이 중 1,208억 3,300만원이 집행됨.

< 경제외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11,171	112,566	129,841	120,833	14,014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3,875	103,257	120,532	112,492	3,296
		[11] 일반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293	1,557	1,557	1,252	1,217
		[11] 일반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518	870	870	622	1,757
		[11] 일반	[403] 2025 APEC 의장국	2,064	100,830	118,105	110,618	322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7,296	9,309	9,309	8,341	10,718
		[11] 일반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4,515	6,549	6,549	5,754	6,982
		[11] 일반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781	2,760	2,760	2,587	3,736

나. 2025 APEC 의장국

「2025 APEC 의장국」 사업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및 핵심 의제 주도를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

2025년 예산은 1,181억 500만원이고, 이 중 1,10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원을 차년도로 이월, 58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 APEC 의장국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00,830	118,105	-	-	-	118,105	110,618	1,600	5,887	93.7	93.7

□ APEC 만찬장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외교부는 당초 국립경주박물관을 APEC 만찬장으로 활용하고자 4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조성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역사관 등 리모델링 10억원, 야외 만찬장 및 문화공연장 조성 30억원임.

이후 만찬장 규모 증가(1,500㎡→2,000㎡)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면적 증가(500㎡ → 4,000㎡)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억원을 증액하여, 만찬장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이 편성되었음.

< 만찬장 관련 예산 편성 내역 >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증액분)
예산	40억원	40억원
세부 내역	- 야외 만찬장 및 문화공연장 조성 • 규모 : 1,500㎡ • 사업비 : 3,000백만원 - 자재비(방탄유리) : 900㎡ × 2백만원 = 1,800백만원 - 설치비 및 운반비 1,800백만원 × 0.5 =900백만원 - 공연장 설치 300백만원 - 신라역사관 또는 특별전시관 리모델링 • 규모: 500㎡	- 만찬장 규모 증가 (1,500㎡→2,000㎡) - 기존 건물 리모델링 면적 증가(500㎡ → 4,000㎡)

(자료: 외교부)

보조사업자인 경상북도는 이 중 7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만찬장 관련 예산 집행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	비목	집행내용	금액
국고 보조금	건설비	만찬장 건립공사 감리 용역	114
		만찬장 조성 용역	915
		정상회의 만찬장 건립공사(건축,소방,전기,통신)	5,720
		관급자재 구입	706
		정상회의 만찬장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66
		만찬장 건립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4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 부담금 지급	40
		일상경비(경북도측 만찬장 관련 국내 출장여비)	2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사업은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전반적 지연이 발생하였고, 만찬장 장소가 APEC 개최 두 달여 전인 2025년 9월 19일에 당초 계획되었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로 최종 변경됨에 따라, 만찬장 조성에 사용된 예산 80억원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만찬장 조성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확정을 마치고, 2025년 1월과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3월에 착공하여 8월 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APEC 만찬 장소를 동부사적지 또는 동궁과 월지가 아닌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만찬장 건물을 준공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용역이 진행되었고 6월에 착공이 이루어짐. 이후 행사 수용인원 확대(200명 → 400명) 등에 따라 2025년 9월 19일 만찬 장소를 경주 라한호텔로 변경함.

< 만찬장 조성 추진 경과 >

- **기존 대상지 검토(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 어려움**
  ※ 2024년 8월 이후 수차례 현장점검('24. 8. 7./ 10. 31./ '25. 1. 7.~8. 등)
    ① 영상 분석 결과 매장유산 다수 존재로 문화유산 훼손 등 불가
    ② 문화재 위원회 등을 통한 기간 소요 및 허가 불투명
    ③ 대규모 예산 투입 후 즉시 철거에 따른 부담
- **(25. 1. 22.)** 제5차 준비위원회, **국립경주박물관 결정**
- **(25. 2. 14.) 만찬장 건립 설계공모 공고**
- **(25. 3. 19~5. 27.) 기본 및 실시설계**
- **(25. 5. 22.) 만찬장 건립공사 시공회사 선정**
- **(25. 6. 9.~10. 6.) 만찬장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 **(25. 9. 19.)** 제9차 준비위원회, **만찬장을 경주 라한호텔로 변경**

(자료: 외교부)

이와 관련하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다수의 위원들이 만찬장 부지 선정 및 촉박한 공사 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경상북도 APEC지원단장은 원론적인 공정 준수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음[108].

그 결과, 당초 만찬장 목적으로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경주박물관 내 건립된 '천년미소관'[109]은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APEC 만찬장으로는 사용되지 못하였음. 다만, APEC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10.29.) 및 한·중 정상회담(10.31.) 공식 국빈행사장으로 활용되었으며[110], 현재는 경상북도가 소유 및 관리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 행사의 대관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 천년미소관 전경 >



108)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29,32,37,40,41쪽

109)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외 1필지, 연면적 2,000㎡, 지상 1층

110) 외교부는 해당 장소가 미국 백악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충분한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함.

천년미소관은 행사 종료 후 철거를 전제로 건립된 가설건축물이었으나,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2027년 3월까지 존치하기로 결정됨. 2025년 10월 정상회의 종료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총 5회 대관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당초 만찬장 장소 선정 이후 행사 규모 확대 및 운영 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초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본래의 만찬장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천년미소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상북도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만찬장 조성의 실적 달성률을 100%로 작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과정에서 만찬장 조성 지연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다수 있었음에도 외부 지적사항 또한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음. 이처럼 실적을 알 수 있는 법정 보고서의 작성도 미흡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찬장 조성 관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 사업성과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APEC 만찬장조성	분기별 진행상황 집계	100%	100%	○

4. 목표 달성 · 미달성 · 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 성공적인 행사 개최로 목표 달성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 해당없음

2) 향후 개선계획 : 해당없음

(자료: 경상북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만찬장조성))

다.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양자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경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본예산은 65억 4,900만원, 추경 및 전년 이월액에 따른 예산 현액은 65억 4,900만원이고, 이 중 57억 5,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7.9%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6,549	6,549	-	-	-	6,549	5,754	-	795	87.9	87.9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시정요구 이행 미흡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내역사업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19억 8,500만원 중 1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의 모니터링, 분석, 우리 정부의 대응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30일 개소한 조직으로,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경제안보 Review

발간,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민관합동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사입장국 싱크탱크들과의 교류 등 업무를 수행 중임.

국회는 2024년도 결산에서 경제안보외교센터와 관련하여 공무직 중심 인력구조로 인한 공적 책임성 및 운영 안정성의 한계, 성과관리 체계 미비, 외부 임차공간 활용에 따른 예산 비효율 발생, 직제 미반영에 따른 조직 운영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을 지적하며, 직제 개정을 통한 정원 반영 및 청사 내 입주 등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하였음[111].

이는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직제를 통한 정식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10명)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112]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함.

외교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수시직제 정원 요청 등 조치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였음.

111) 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126~129쪽

112)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경제안보외교센터 정식 직제화 등에 대한 조치 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경제안보 외교 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 [지적사항]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데, 이를 위해 1년 동안 약 1억 5,000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 ○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제도 개선	○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7조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교부훈령] 등을 통해 설립 및 운영의 명시적 근거 旣마련 ○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 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심사과정에서 不 추진 결정 ○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현재 외교부 청사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센터 사무공간 및 회의실, 연구실 등으로 활용 중이나, 청사 내 유휴 공간이 마련될 경우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예정 ○ 상기 내용들과 경제안보외교 현안의 논의·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여야 간사실을 통해 소관 상임위 보고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31일	조치 완료

(자료: 외교부)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전히 양자경제외교심의관 겸임인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이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 공간 또한 외교부 청사 인근 건물[113]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청사

113)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면적: 393.504㎡(약 119평)
계약조건: 1년 단위 갱신(현재 계약기간: 2026.01.01.~2026.12.31.)

내 입주 및 공간 통합 배치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음.

<경제안보외교센터 조직 현황(현원 기준)>

구분			인원	비고
센터장			1명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겸임
연구원	공무직	가급	3명	
		나급	6명	
		다급	1명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계약직		5명	미국, 애틀란타, 네덜란드, 베트남, 라오스
계			14명	

주: 2026. 6월 말 기준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검토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114], 향후 청사 내 유휴공간 발생 시 입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완료'로 한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직제 반영, 인력운영 구조 개선 및 청사 내 입주 등 미이행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4)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심사과정에서 不 추진 결정(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4쪽)

□ 경제안보외교센터 사업 위탁 부적절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025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미 경제 안보 컨퍼런스(제7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경제안보외교센터와 주한 공관 정기회의 개최,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해외전문가 세션 지원 등임.

동 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약금은 1억 6,000만원임.

<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사업 개요 >

과업명	2025년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수탁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계약금액	1억 6,000만원
계약기간	2025. 4. 17. ~ 2025. 12. 10.
주요 과업	· 한 -미 경제 안보 컨퍼런스(제7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 경제안보외교센터-주한 공관 정기회의 개최 ·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해외전문가 세션 지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은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포럼 개최와 관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 과업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 조사, 해외 전문가 및 고위급 인사 발굴·섭외, 연

사 우선순위 선정, 포럼 기획 및 결과 정리 등으로, 이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대외 네트워크 축적 측면에서 센터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경제안보포럼 행사 운영 전반을 이미 민간 행사대행업체에 위탁한 상황에서[115], 포럼의 연사 발굴이나 세션 구성 등 포럼의 기획·구성 업무에 해당하는 연사 발굴·섭외 및 세션 구성까지 별도의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편,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용역에서 수탁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경제안보외교센터-주한 공관 정기회의'를 위한 회의 의제 발굴, 최근 경제안보 이슈 발굴 및 전문가 섭외 등을 위탁하였음.

<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경제안보외교센터-주한 공관 정기회의 개최 내역 >

구분	일시/장소	주제	용역 수행 내용
주한 프랑스 대사관	25.10.1.(수) 11:30~13:00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지경학 시대의 대응 전략: 한국과 프랑스의 시각	ㅇ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와 정기회의 주제 및 세부 논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소통을 강화 ㅇ 주한 외교 공관이 관심을 두는 현안 및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세미나 발제를 수행하고, 관련 배경 설명 및 시사점 제공 ㅇ 행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
주한 영국 대사관	25.10.23.(목) 11:45~13:00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지경학 시대의 대응 전략: 한국과 영국의 시각	

(자료: 외교부)

115) 제7차·제8차 경제안보포럼 개최의 행사 기획 및 운영은 각각 (주)피플앤벨류와 (주)프루브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그런데 해당 용역 내용은 경제안보 이슈 모니터링·분석 및 대외 교류 등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센터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로, 동 용역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1억 6,000만원 중 56.3%인 9,00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음. 현재 경제안보외교센터 내에 박사급 3명, 석사급 6명, 학사급 1명 등 전문 인력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유 중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다면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인건비 집행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연구회 예산 집행 내역 >

구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계
금액(천원)	90,997	68,671	331	160,000
(%)	56.9	42.9	0.2	100.0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하여 본연의 고유 업무는 가급적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외부 위탁을 지양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개 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및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개, 다자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여 및 북극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극 진출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액은 26억 9,800만원이고, 이 중 24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7%임.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10,386	2,698	2,698	2,448	3,021
	[3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국제협력강화			10,386	2,698	2,698	2,448	3,021
		[11] 일반	[401]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10,386	2,698	2,698	2,448	3,021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는 첨단 핵심 신흥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국내 과학기술 역량과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를 결합한 과학기술 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지형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외교강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의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자환경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북극권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 북극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북극 국제협력 강화」 등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결산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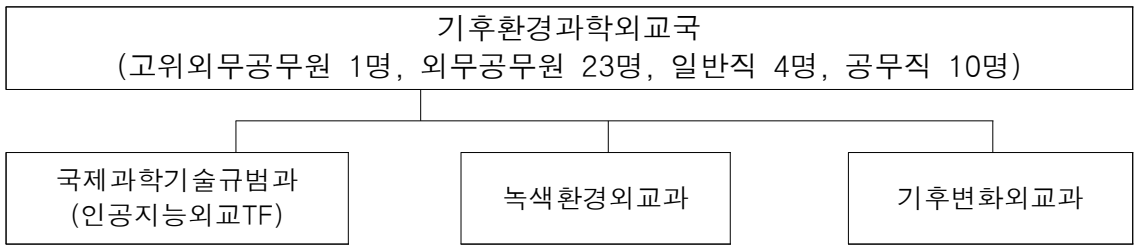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예산현액 대비(C/B)
과학기술 외교강화	1,317	1,317	-	△5	-	1,312	1,141	30	141	86.6	87.0
기후변화 외교강화	855	855	-	45	-	900	845	-	55	98.8	93.9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145	145	-	△39	-	106	96	-	10	66.2	90.6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271	271	-	2	-	273	266	-	7	98.2	97.4
북극 국제협력 강화	110	110	-	△3	-	107	100	-	7	90.9	93.5
계	2,698	2,698	-	-	-	2,698	2,448	30	220	90.7	90.7

□ 기후환경과학외교국[116] 소관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간 불일치 및 편성 정확성 제고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사업 예산현액은 26억 9,800만원으로, 이 중 24억 4,800만원(90.7%)을 집행하고, 정책연구용역 잔금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000만원(8.2%)을 불용하였음.

116)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직도 및 인원]



내역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과학기술 외교강화」87.0%, 「기후변화 외교강화」93.9%,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90.6%,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97.4% 등 전체적으로 87~97% 수준의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임.

그러나 내내역사업 단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편성 당시의 근거와 실제 집행 내역 간 불일치가 확인됨. 기후·환경 분야 다자 협상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및 '지속가능발전(해양·환경) 이행 참여'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나, 'NEASPEC[117]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와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등 사업의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2025년 주요 내내역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비교표>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편성		집행		집행률
과학기술 외교강화	과기 거점공관 사업	530	과기 거점공관 사업	425	80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42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8	43
	연구용역 및 자문	200	연구용역 및 자문	164	82
기후변화 외교강화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220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326	148
	NEASPEC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12	NEASPEC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2	17
	환경협력공동위 등 양자협의 개최	22	환경협력공동위 등 양자협의 개최	5	23
	신재생에너지 외교 활동	40	신재생에너지 외교 활동	16	40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45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1	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다자 협력	25	녹색성장 관련 다자 협력	5	20

117)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은 1993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역내 정부 간 환경 협의체로, 역내 6개국(남·북한, 중, 일, 몽, 러)이 참여하여 대기오염·해양보호·생물다양성 등 역내 환경 문제에 관한 정책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함.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편성		집행		집행률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환경·해양) 이행 참여	61	지속가능발전목표(환경·해양) 이행 참여	119	197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72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50	69
	그린라운드테이블	48	그린라운드테이블	52	109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25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34	135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40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4	10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자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전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성 과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증액을 추진하는 등 실제 집행 내역이 편성 목적과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정 사업에 재원을 편중 투입한 결과인바, 외교부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다자 회의 일정 및 현지 여건을 보다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임.

□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채용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 및 인건비 편성 현실화 필요

외교부는 주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외교활동 지원 및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 내 일용임금(110-04) 비목을 통해 총 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인건비를 편성·지원하고 있음[118].

118)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지원 대상 공관 (총 8개)]**
- 보스턴, 시애틀, 캐나다, 호주, 체코, 네덜란드, 이스라엘, 베트남

그러나 2025년도 재외공관 과학전문관 인건비(일용임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1억 4,600만원(58.4%)만 집행되고, 1억 400만원(41.6%)의 불용이 발생함.

이는 연중 정상 채용이 유지된 보스턴 등 일부 공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정 공관에서 적격자 미지원이나 채용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말에 이르러서야 채용이 완료되거나 채용 자체가 무산된 것에 기인함.

<2025년 주요 재외공관별 과학전문관 채용 추진 현황>

재외공관명	채용 추진 경과 및 불용 발생 사유
보스턴	1월 ~ 12월 연중 계속 채용 유지
캐나다	기존 전문관 퇴사 후 신규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자 미지원으로 채용 포기
호주	수차례 채용 공고에도 적임자가 없어 12월에 이르러서야 채용
베트남	현지 과기외교 수요 추가 접수로 12월부터 채용

(자료: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현지 임금 수준 대비 편성 예산의 한계로 선진국 등 주요 거점공관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매년 동일한 구조적 한계가 예견되는바, 외교부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공관별 현지 물가 및 임금 수준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여 현실적인 인건비를 산정하고, 대상국별 채용 여건과 현지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용·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률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 극복 한시 특례 규정 적용의 부적정성 개선 및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 중 '정책연구비(260-02)' 비목에서 3천만원의 차년도 이월이 발생함.

이는 미국 현지 연구기관인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BACEI)[119]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간 과학기술 생태계 분석 및 협력 기회 발굴 연구」용역(계약금액은 1억원, 계약기간은 2025.12.~2026.8.)의 사업 기간이 회계연도를 도과함에 따라, 집행 잔액 3천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임.

외교부는 동 연구용역의 최초 계약 공고(2025.10.27.) 후 단독 입찰이 발생하자,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120]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수의계약

---

119) BACEI(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1990년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의 경제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문 싱크탱크.(출처: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https://www.bayareaeconomy.org/)

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경쟁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례조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121]를 근거로 재공고 입찰 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2025년도 과학기술 외교강화 정책연구용역[122] 수의계약 발주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수행자)	프리즘[123] 등록여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Anaysis of the Tech Ecosystem an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an Francisco Bay Area	100	70	30	2025.12.-2026.8.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BACEI)	등록 예정	공개 예정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기재부고시 제2025-29호

*과제명(한글): 대한민국과 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간 과학기술 생태계 분석 및 협력 기회 발굴 연구
(자료: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그러나 해당 국가계약법상의 특례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적기에 만회하도록 만든 예외 조항임.

본 과제는 '한미 기술·경제 동맹(AI·반도체 등)', '실리콘밸리와의 스타트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5-29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재난·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재공고입찰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고시임.

12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025.10.27.~11.7.까지 「한국-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간 테크 생태계 및 협력 기회 분석」과제를 일반공개경쟁입찰(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1억원)로 공고함. 제안요청서 상 추진 일정(안)은 2025년 11월 계약 체결, 2026년 2~3월 중간보고, 2026년 5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현지 토론회 개최로 명시되어 있어, 발주시점에 이미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가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계획된 사업임.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과 같은 첨단·혁신 기술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전 세계 상위 50개의 생성형 AI 기술 중 절반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 기술 개발, 인재, 벤처 자본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임.
(출처: 외교부, 「한국-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간 테크 생태계 및 협력 기회 분석」 제안요청서 상 배경 및 목적)

123) 프리즘(PRISM)이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olicy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 및 결과물을 통합 관리·공개하는 플랫폼임(www.prism.go.kr).

업 네트워크 구축', '양국 간 R&D 및 연구 파트너십' 등 중장기적 국가 외교 전략과 생태계 분석을 다루는 국외 지역 과학기술 동향 분석 연구로,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성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임[124].

따라서 동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해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함.

또한 동 연구용역의 최초 계약 공고 시기는 2025년 10월 27일로, 회계연도 종료를 불과 두 달 남겨둔 시점이었음. 통상 수개월 소요되는 정책연구의 특성상, 공고 시점에 이미 당해 연도 내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하여 차년도로 이월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연말에 긴급하게 공고를 내고 위기극복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거나 예산 불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재난 및 경제위기 극복 한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정함.

외교부는 회계연도 말 예산 불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연초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124) 연구용역 결과물인 BACEI, 「Korea and the Bay Area: Innovation, Investment, and Korea's Strategic Partnership with Silicon Valley」 중간보고서, p. 52 참조.

□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등 연례적 다자회의 예산 추계 및 편성의 정교화를 통한 자체 전용 최소화 필요

「기후변화 외교강화」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상,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동북아 환경협력 및 신재생에너지 외교 등 다자·양자·지역 차원의 기후·환경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신규 편입[125]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2% 증가한 8억 5,500만원임.

내내역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자협상인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126]에 편성액(2억 2,0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예산(3억 2,600만원)이 초과 집행된 반면, 동북아 지역 협력 및 양자 외교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불용되었음.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는 매년 상반기 부속기구 회의(SB)를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국 장관급 회의(Pre-COP, MoCA) 및 연말 당사국총회(COP)로 이어지는 정례적 협상 체계를 갖추고 있음.

125) 2024. 5. 외교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협력센터'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으로 편입되었음. 2025년도 '기후변화 외교강화' 내역사업 예산은 전년(6억 4,200만 원) 대비 2억 1,300만원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외교 강화 기조에 맞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에너지 및 광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내역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에너지협력센터(구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운영 예산이 '기후변화 외교강화' 사업으로 이관·통합된 데에 주로 기인함.

126)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및 관련 공식·비공식 다자협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다자무대 등에 적극 참가하여 글로벌 기후 규범 제정에 대응하고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연간 정례 개최 구조>

구분	회의명	주요내용
상반기(5~6월)	부속기구 회의 (SB, Subsidiary Body)	총회(COP) 준비 및 세부 이행 규칙 논의를 위해 독일 본(Bonn)에서 개최
하반기(9~10월)	당사국총회 준비회의 (Pre-COP)	COP 개최 약 1~2개월 전, 주요국 장관들이 모여 핵심 의제를 사전 조정하는 회의로 매년 정례화
연말(11~12월)	당사국총회(COP)	연 1회 개최, 기후변화 외교 최고의 의사결정 회의, 1995년 COP1 베를린 총회 이후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

2025년 하반기에 사전 장관급회의(Pre-COP30), 기후행동 장관급회의(MoCA) 및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 등이 집중 편성되면서 출장비 소요가 급증하였음[127].

비록 우리나라가 2026년 1월 IRENA 제16차 총회에서 2027년 차기 총회 의장국으로 선정[128]되는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성과도 존재하나, 외교부는 참석 규모 확대 및 일정 증가로 발생한 부족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협력 및 양자협의, 신재생에너지 외교 등 타 내내역사업의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였음.

---

127) ◦ Pre-COP30(제30차 당사국총회 사전장관급회의): COP30 본총회에 앞서 주요국 장관들이 모여 핵심 의제의 정치적 합의점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
◦ MoCA(기후행동 장관급회의, 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EU, 캐나다, 중국 등이 주도하여 매년 개최되는 주요국 장관급 협의체로, 당사국총회(COP) 협상의 진전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고위급 회의
◦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전 세계 정부 대표단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주요 규범을 최종 확정하는 공식 연례 총회

128)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11~1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IRENA 제16차 총회'에서 차기 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선정되었음. 2011년 기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17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IRENA 총회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임.(출처: 코리아포스트, 2026.1.14. 기사)(https://www.koreapost.co.kr)
※ IRENA: 2011년 설립된 재생에너지 분야 유일의 국제기구, 현재 17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함.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상은 연간 개최 일정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례적 다자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관행은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해함.

나아가 특정 다자협상 사업에 본부 및 공관의 역량과 예산이 과도하게 쏠림에 따라, 당초 내실을 기해야 하는 기반 사업들의 실적은 부진하였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외교 활동'과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NEASPEC 등)' 사업은 각각 40%와 16.6%의 집행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미온적이었음.

따라서 외교부는 유엔기후변화협상 등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거나 하반기에 일정이 집중되는 다자 회의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집행 실적과 필수 참석 규모, 예상 출장 경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요구액을 현실화해야 함. 이를 통해 사업 간 빈번한 자체전용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 전용 최소화 및 편성 정확도 개선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 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녹색·환경 산업의 해외 진

출 지원 및 다자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2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2억 6,600만 원(97.4%)을 집행함.

그러나 내내역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참여' 등 특정 다자 외교 사업에는 본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예산을 초과 집행한 반면,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및 녹색성장 관련 다자협력 등 기반 사업은 집행률이 10~20% 수준에 그쳐 사업 간 예산 편중 현상을 나타냄.

<2025년 주요 내내역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비교표>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 집행 및 증감 사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참여	61	119	195	제3차 유엔컨퍼런스,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후속조치, CITES COP20 등 국외출장 급증으로 초과 집행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25	34	136	물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대상국 확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로 증액 집행
그린라운드테이블	48	52	108	포럼 행사 규모 확대(임차료·사례비)에 따른 소폭 증액 집행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72	50	69	우수 서포터즈 국외여비 미집행, 일반용역비 내오·만찬 충당
녹색성장 관련 다자협력	25	5	20	GGGI·OECD 등 수시 소통 채널 활용으로 대면 협의 비용 감소, 타 내내역으로 예산 변경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40	4	10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수시 협의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경비 절감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외교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129] 이행 참여’ 사업의 예산 초과 집행(예산 6,1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 집행)에 대해, 제3차 유엔해양컨퍼런스 및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후속조치 참석 등 국제 다자 회의 일정의 급증으로 인한 부득이한 소요였다고 밝히며,

부족한 출장 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녹색성장 관련 다자협력’,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등 타 내내역사업에서 국외여비 및 용역비를 감액·전용하여 조달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외교부는 2024년도 결산 당시에도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및 참석 소요 충당을 위해 20개 내내역사업에서 총 11억 3,100만원을 감액·조달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130].

12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개 공동 목표로, 동 사업은 그중 환경·해양 분야(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국제적 논의 및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편성됨(외교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참조).

130) 외교부는 2024년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 개최 및 참석 예산 부족분(22억 7,29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 ‘한미우주포럼 개최’(2.5억원 감액), ‘국제과기외교포럼 개최’(2.9억원 감액) 등 총 20개 내내역사업에서 11억 3,100만 원을 감액·조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타 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감액·전용하는 것은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137~139. 참조).

<감액된 내내역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본예산	감액규모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55	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활동 지원(기후협력센터)	279	36
한미우주포럼개최	285	252.2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83.2	50.6
과기외교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공조	175	70
국제과기외교포럼 개최	404.8	290
과기 거점공관 과기외교 사업 추진	661	63.2

외교부는 향후 편성 취지에 걸맞은 집행을 위해 소요를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 등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전용을 최소화하고 내내역사업별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협상 진전을 위한 우리 입장 제고 활동	200	108
NEASPEC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22	3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환경협력공동위 등 참여	40	20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88	36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72	20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40	9
그린라운드테이블	50.5	11
녹색 경제 관련 다자 협력	46	16
북극회의 참여 및 개최	180	104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포럼	100	50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52	23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220	13
지속가능발전목표(환경-해양) 이행 참여	92	1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개 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교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역량검증 및 개발,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149억 4,500만원이며, 이 중 132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9%임.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3,057	14,945	14,945	13,290	15,962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131]			11,102	12,388	12,388	11,145	12,831
		[11] 일반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880	3,304	3,304	2,849	3,271
		[11] 일반	[402] 국내외 교육훈련	6,252	7,132	7,132	6,413	7,231
		[11] 일반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427	417	417	411	417
		[11] 일반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 연수과정	400	393	393	382	393
		[11]	[405]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	970	959	959	914	1,038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11] 일반	[407]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173	183	183	176	481
	[3532] 외교전략 수립[132]			1,955	2,557	2,557	2,145	3,131
		[11] 일반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780	1,067	1,067	904	949
		[11] 일반	[40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389	100	100	212	-
		[11] 일반	[40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786	1,390	1,390	1,029	1,332
		[11] 일반	[405]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	-	-	-	850

131)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 소관

132)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과 외교정보기획국 소관

나.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사업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및 중장기 외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민·관·학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정례 학술회의를 통해 외교정책 수립 및 외교활동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은 33억 4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8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2%임.

이 사업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함) 소속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로는 「외교현안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이 82.1%,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이 8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04	3,304	-	-	-	3,304	2,849	-	455	86.2
- 외교현안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1,257	1,257	-	-	-	1,257	1,032	-	225	82.1
-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	2,047	2,047	-	-	-	2,047	1,817	-	230	88.8

□ 연구 성과물 온·오프라인 배포 비율 조정 및 디지털 홍보 강화를 통한 예산 집행 효과성 제고

동 사업의 주요 성과물인 연구보고서 및 정세분석 자료의 경우, 일부 성과물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온라인 공개 및 PDF 발간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발간물이 대량 인쇄되어 배부되고 있음.

2025년 기준 외교안보연구소는 총 10종의 주요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이 중 7종에 대해 총 2억 5,22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쇄물을 제작·배부함.

<2025년 외교안보연구소 주요 발간자료별 인쇄물 배부 및 온라인 공개 현황>

발간자료	인쇄 여부	연간 총 인쇄부수	연간 총 인쇄예산 (천원)	배부선 (배부처)	온라인 게시 채널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여부	기타
IFANS FOCUS	X	X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O	PDF 발간
IFANS PERSPECTIVES	X	X	-	-	〃	O	PDF 발간
주요국제문제분석	O	28,500부	154,873	주요 부처, 국회, 도서관 및 연구소 등	〃	O	총 57건
정책연구시리즈	O	6,800부	35,944	주요 부처, 국회, 도서관 및 연구소 등	〃	X	-
국제정세전망	O	1,000부	13,508	대통령비서실, 주요 부처, 국회, 도서관 등	〃	O	-
일본정세	O	300부	4,587	재외공관, 주요 학회, 연구소, 언론사, 도서관 등	〃	X	-
중국정세보고	O	800부	13,230	주요 부처, 국회, 학회, 연구소, 언론사, 도서관 등	〃	X	-

발간자료	인쇄 여부	연간 총 인쇄부수	연간 총 인쇄예산 (천원)	배부선 (배부처)	온라인 게시 채널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여부	기타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O	500부	18,486	주요 학회, 연구소, 도서관, 관련 실·국 등	〃	X	-
한국외교협상사례	O	600부	11,581	주요 부처, 국회, 도서관 등	〃	X	-
IFANS STUDY REPORT	X	X	-	-	〃	X	PDF 발간
총 10종			**252,209**				

(자료: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발간물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제문제분석」(연간 28,500부, 1억 5,487만원)을 비롯하여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등의 배부처는 '주요 부처, 국회, 도서관'등임.

해당 기관의 유관 업무 담당자들이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나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수혜자의 매체 선호도나 실제 활용도에 대한 정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더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교안보연구소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정책 환류(Feedback) 관점에서도 추가적인 보완 여지가 존재함. 현재 모든 발간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적은 '이메일 뉴스레터(링크 또는 PDF 첨부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책연구시리즈」 등 일부 주요 정세 분석 자료의 경우,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관 부처 및 학회 전문가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교원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 및 예산 절감 필요성에 부응하여, 주요 발간물 수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및 PC 열람을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책자 배부 부수를 과감히 축소하고 온·오프라인 배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인쇄 예산을 한층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이메일 뉴스레터와 같은 저비용·고효율 디지털 확산 채널을 전 발간물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소 발간물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 제안이 적시에 환류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립외교원 연구부 산하 연구센터의 구조적 중복성에 따른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외교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133]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장 하에 6개 연구부[134]를 두고 있음.

또한, 부령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135]에 근거하여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원은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및 인도태평양연구부 산하 3개 센터(일본·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7개의 연구센터를 운영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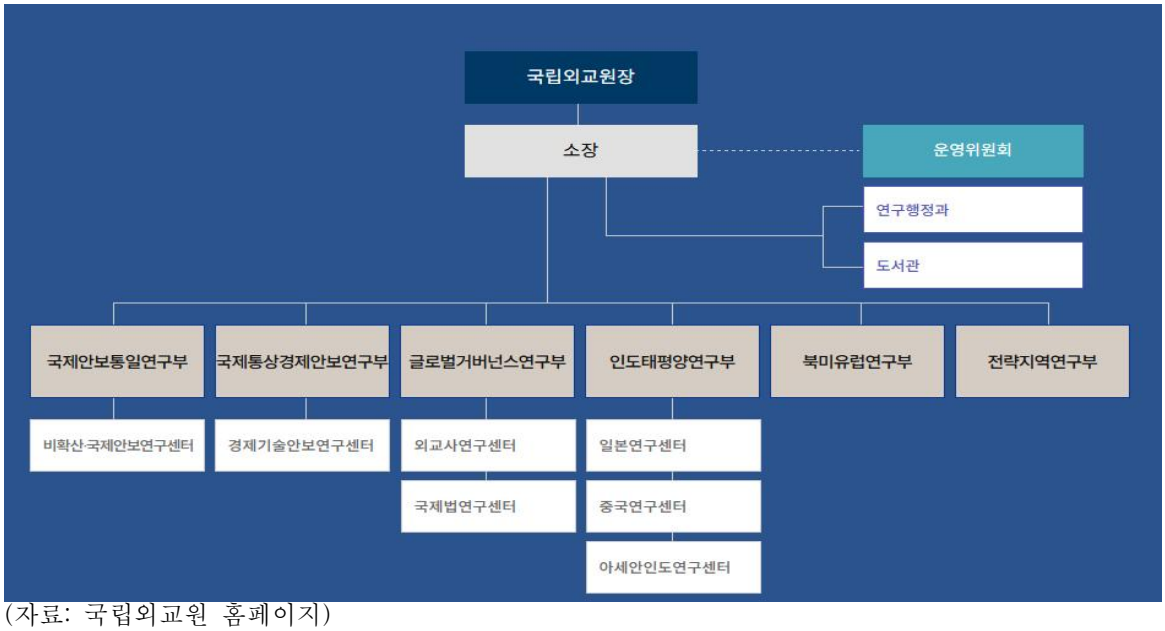
---

13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 7. 27.>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5. 7., 2023. 7. 14.>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134) 국제안보통일, 국제통상경제안보, 글로벌거버넌스, 인도태평양, 북미유럽, 전략지역연구부

13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국립외교원 외보안보연구소 조직도>



(자료: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국립외교원 연구부 및 산하 연구센터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소속 연구부	인원수	산하 연구센터	설치연월	센터 정원	비고
국제안보통일	8	비확산·국제안보	2020.3.	8	연구부 소속 인력 대다수가 센터 업무를 겸직/겸임하고 있음
국제통상경제안보	8	경제기술안보	2024.2.	7	
글로벌거버넌스	12	외교사	2011.3.	5	
		국제법	2013.11.	7	
인도태평양 (총17명)	17	일본	2015.8.	5	
		중국	2010.12.	5	
		아세안·인도	2018.2.	5	
북미유럽	5	-		-	
전략지역	6	-		-	

(자료: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그러나 현행 연구센터의 인력 구성 및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이 있음.

첫째, 명목상의 인력 겸임 구조로 인한 독립성 미흡 및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저하임.

2023년 9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2024년 2월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동 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 인력 전원이 소속 연구부인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소속 교수요원(4명) 및 연구원(3명)과 동일함. 이처럼 기존 연구부의 업무 및 인력과 차별화된 독립성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둘째, 외교부 본부 조직과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문제임.

외교부 본부는 양자경제외교국 소속으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별도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차(2024년 기준 연 1.5억원) 등 직제 외 조직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음[136].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원 역시 유사 기능의 센터를 신설하여 별도 운영비[137]를 추가 집행하는 것은 외교부 전체 차원의 조직·예산 운용상 낭비를 초래함.

셋째, 내부 규정에 의한 자율 설치로 인한 객관적 성과평가 및 통제 장치 부재임. 연구센터가 원장의 재량(내부 규정)에 따라 신설·운영됨에 따라 정

13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126~129.

137)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비 약 1,686백만원(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p946.

식 직제상의 엄격한 조직 통제를 받지 않으며, 소속 인력의 실질적 겸임 구조로 인해 센터 고유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외교원은 소속 인력의 단순 중복 편성 형태의 연구센터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부 본부 조직과의 기능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차별성이 없거나 추진 성과가 미흡한 센터에 대해 존속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교육훈련」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외교부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 부처 및 공공·민간 분야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국외연수 및 현지 어학학습으로 직원의 어학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국외교육훈련지원」과, 부내 직원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 주한대사·외신기자단 대상 정책강연회를 추진하는 「국내교육훈련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외 교육훈련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내외 교육훈련	7,132	7,132	-			7,132	6,413		719	89.9
- 국외교육훈련지원	4,853	4,853	-			5,189	4,945		244	101.9
- 국내교육훈련지원	2,279	2,279	-			1,943	1,468		475	64.4[138]

138) 「국내교육훈련지원」 사업의 집행률 저조 주요 원인은 ① 공관장 직무교육 불용(약 1억원) : 공관장 인사발령 지연에 따른 춘·추계 공관장 교육 미실시 ② **상용임금 불용** : 정원 8명(외국어 강사 7명, 연구원 1명) 중 3명의 휴직 발생에 따른 비공무원 보수 미지급 등에 기인함.

□ 소모품 단가계약의 법령 위반 및 사무용 기기 임차료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외교원은 외교관후보자 양성, 재외공관 발령자 교육 및 외무공무원 연수 등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 다수의 사무용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

사무기기 운용과 관련하여, 외교부(국립외교원 포함)는 필수 소모품인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급하고 있음.

그러나 소모품 단가계약 체결 현황 및 사무기기 관련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위반 및 예산 집행의 행정적 모순 등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됨.

국가계약법 제22조[139]에 따르면 단가계약은 매년 변동하는 물가와 시장 상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년도(1년)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계속계약은 동법 제21조 제2항[140]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0)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 종류>

구분	종류	설명	국가계약법	비고
계약기간	단년도 계약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제22조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
	장기계속 계약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체결하는 계약(총 낙찰금액 명기)	제21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 공급 등
	계속비 계약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연차별 금액 명기)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과 2024년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2년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최근 5년간 외교부 소모품(복사기/프린터 토너) 단가계약 체결 현황>

연도	입찰 공고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방	비고(투찰업체)
2021	2021년 외교부 소모품(복사기/ 프린터 토너) 단가 계약	2021.1.1.~2021.12.31	일반경쟁	중앙시스템(주)	중앙시스템(주)/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2022	2022년 외교부 소모품(복사기/ 프린터 토너) 단가 계약	**2022.1.1.~2023.12.31**	일반경쟁	중앙시스템(주)	중앙시스템(주)/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2024	2024년 외교부 소모품(복사기/ 프린터 토너) 단가 계약	**2024.2.1.~2025.12.31**	일반경쟁	중앙시스템(주)	5개업체

(조달청 나라장터(입찰공고 참조))

이는 단가계약의 단년도 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일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2년의 장기 독점 공급권을 보장함으로써 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함.

또한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정작 해당 사무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자산으로 취득하는 대신,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방식으로 물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국립외교원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예산 집행 현황>

집행일자	집행 내용	집행금액	지급처	부서	비고 (사업)
2025.1.31.	2025년 상반기 연구소 복합기(총9대) 임차료	15,780,600	중앙시스템(주)	연구행정과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025.7.31.	2025년 하반기 연구소 복합기(총9대) 임차료	15,780,600	중앙시스템(주)	연구행정과	
2025.1.20.	2025년도 외국어강사실 복합기 임차료	5,643,000	중앙시스템(주)	외국어교육과	국내외 교육훈련
2025.7.9.	2025년도 외국어강사실 복합기 임차료	5,352,000	중앙시스템(주)	외국어교육과	
2025.3.4.	직무연수과 복사기 임차료(1월~12월)	4,168,560	중앙시스템(주)	직무연수과	
2025.4.28.	2025년 1분기 복합기 인쇄 추가비용 *일반수용비로 집행	1,121,120	중앙시스템(주)	직무연수과	
2025.12.26.	2025년 복합기 인쇄 추가비용 *일반수용비로 집행	167,520	중앙시스템(주)	직무연수과	
2025.3.4.	2025년 상반기 복합기 임차료	7,819,900	㈜시온씨엔씨	교육운영과	외교관후보자 등
2025.5.9.	2025년 1분기 복합기 임차료 **추가 사용료**	1,673,000	㈜시온씨엔씨	교육운영과	
2025.8.25.	2025년 2분기 복합기 임차료 **추가 사용료**	328,900	㈜시온씨엔씨	교육운영과	
2025.8.25.	2025년 하반기 복합기 임차료	7,712,100	㈜시온씨엔씨	교육운영과	
2025.10.29.	2025년 3분기 복합기 임차료 **추가 사용료**	569,800	㈜시온씨엔씨	교육운영과	
2025.1.16.	도서관 코인복합기 임차료(1~12월)	1,379,400	중앙시스템(주)	도서관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2025.2.12.	복합기 임차료	3,564,000	㈜시온씨엔씨	기획협력과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025.4.23.	복합기 임차료 추가 사용료	555,100	㈜시온씨엔씨	기획협력과	
2025.3.26.	임차료 1분기	990,000	중앙시스템(주)	외교역량평가과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2025.6.25.	임차료 2분기	990,000	중앙시스템(주)	외교역량평가과	
2025.9.26.	임차료 3분기	990,000	중앙시스템(주)	외교역량평가과	

집행일자	집행 내용	집행금액	지급처	부서	비고 (사업)
2025.12.17.	임차료 4분기	990,000	중앙시스템(주)	외교역량평가과	
2025년 국립외교원 임차료 총 집행액		**72,605,600**			

(외교부 지출대장(디브레인, 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소모품 단가계약은 기관이 사무기기를 직접 구매(자산 취득)하는 조달 방식인 반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임차료 내에 기기 사용료 외에도 소모품 공급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소모품 구매 단가계약 체결과 매월 임차료 및 추가 인쇄 비용 지출을 병행하는 것은, 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운용하는 방식에 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

이에 대해 외교부는 매년 반복되는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약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년 1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운영하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임차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는 2025년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매년 7천만원 이상의 임차료가 반복 지출되는 구조에서 자산취득비 부족을 이유로 임차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예산 낭비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소모품 단가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년도 계약으로 공고 및 체결을 추진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또한 소모품 구매 단가계약과 사무기기 임차방식이 이중으로 운용되는 행정적 모순을 정비하고, 사무기기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출되는 임차료 예산을 단계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전환·편성하는 등 조달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강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국립외교원은 외교관후보자, 신임 외무영사직 및 본부 직원의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어 전임강사를 공무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강사 고용 및 보수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기준)

성명	언어	계약기간	주 근무시간 (계약 시)	기본급 평균	지급급여총액 평균 (기본급+수당 등)
A	영어	2013.5.20.~	30시간	4,648	63,265 (휴직자 제외)
B	영어	2017.11.14.~	30시간		
C	중국어	2013.6.3.~	30시간		
D	스페인어	2013.8.5.~	30시간		
E	일본어	2013.8.5.~	30시간		
F	프랑스어	2014.3.10.~	30시간		

*채용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2018년에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됨.
(자료: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그러나 외국어 전임강사는 동일한 2 30시간 상근 조건의 공무직으로 고정 보수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2025년도 강사별 강의 수업시수를 살펴보면, 실제 강의 실적 간 불균형이 심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외국어 전임강사별 수업시수 및 담당 과정 현황>

(단위: 시간)

성명	언어	2025년 수업시수	주당 평균 수업시수	강의 과정 (복수 가능)
A	영어	310.6	6	외교관후보자 영어과정 외무영사직 영어과정 경기도 영어 집중과정 부내 직원 대상 영어 실무 춘·추계 주재관 및 춘계 무관 춘·추계 재외공관 발령자 과정
B *육아휴직 (1개월)	영어	301.8	6	외교관후보자 영어과정 외무영사직 영어과정 경기도 영어 집중과정 국회 국제국 역량심화교육 국회 신임관리자 과정 국제협상 및 국제회의 과정 외교관후보자 인혁처 합동교육
C *육아휴직 (6개월)	중국어	72	3	외교관후보자 중국어과정
D	스페인어	220	4	외교관후보자 스페인어과정 외무영사직 스페인어과정
E	일본어	214	4	외교관후보자 일본어과정 외무영사직 일본어과정
F *육아휴직 (6개월)	프랑스어	79	3	외교관후보자 프랑스어과정

(자료: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영어 전임강사(A,B)의 경우 정규 과정 외에도 다양한 부내·외 단기 위탁 과정을 담당하며 연간 총 수업시수는 각각 310.6시간, 301.8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25~26시간 수준, 주 단위로 환산 시 약 6시간 수준임.

반면, 제2외국어 전임강사(C,D,E,F)의 연간 강의시수는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220시간으로, 스페인어와 일본어는 월평균 약 18시간(주 4시간) 수준임. 육아휴직 6

개월 이력이 있는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경우 6개월 월평균 강의시간이 약 12~13시간(주 3시간)에 그침.

이처럼 모든 전임강사에게 동일한 계약 근무시간 및 정액 보수 체계가 적용됨에도 강사 간 실제 강의 실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2외국어 강좌 개설 확대 및 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함.

외교원은 외국어 전임강사들에 대해 2018년 공무직 전환 이후 2026년 1명을 감원하여 정원 7명[141]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2외국어 강사의 강의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제2외국어 교육과정 다변화 및 전임강사의 업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외국어 전임강사의 연간 강의 실적 저조 및 비용 효과성 미흡을 지적한 바 있음[142].

한편, 외교원은 전임강사가 주도하는 대면 정규 과정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모바일·사이버 교육 인프라를 외부 위탁 용역 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

141) 2023년 10월 1명 퇴직으로 현원은 6명임.

142) 외교통일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외국어 전임강사의 월평균 강의시간이 영어 20시간(연간 245시간), 제2외국어 15시간(연간 189시간) 수준으로 저조하고 매일 진행되는 정규 강의가 특정 1~2개월에 집중된 점, 그리고 높은 보수(월 446만 원) 및 일부 강사에 대한 주거보조비(월 임차료 150만 원) 지원 대비 연간 강의 실적이 미흡하여 채용의 비용 효과성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위탁교육 전환 등 제반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p.150~153. 참조)

<국립외교원 외국어 비대면·원격, 모바일, 사이버 교육과정 세부현황>

구분	교육 과정명	수강인원	운영형태	강의시간*
비대면·원격 교육	**부내 직원 대상 집합 외국어교육** **※ 교육 언어(총 9개)**: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영어	○ 총 215명 -1학기(3-5월):매월85명 -2학기(6-8월):매월69명 -3학기(9-11월):매월61명	○집합강의 등 ○총 61개 강의 ○입문,초급,중급,고급/회화, 시험대비, 주말청취 등	○ 근무시간 외 - 오전 07:50-08:50 - 점심 12:00-13:00 - 저녁 18:30-19:30 / 20:00-21:00 - 토요일:10:00-12:00
모바일을 통한 외국어 학습	**1:1 전화·화상 외국어과정** **※ 교육 언어(총 10개)**: 독일어, 아랍어, 인니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 총 405명 -1학기(3-5월):매월 120명 -2학기(6-8월):매월140명 -3학기(9-11월):매월145명	○ 1:1수업 ○ 총 405개 강의 ○입문,초급,중급,고급/일반회화,글로벌토픽,토론회화,비즈니스회화, 시험대비 등	○ 근무시간 외 - 평일 및 토요일 (06:00~24:00) - 근무시간중 (09:00-12:00, 13:00-18:00) 수업 불가
사이버 교육 콘텐츠	**사이버 외국어과정** **※ 교육 언어(총 45개)**: 그리스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카자흐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등	○ 총 602명 (월평균 50명)	○ 동영상 강의 ○ 총 677개 강의 ○입문,초급,중급,고급/회화,작문,문법, 시험대비 등	○ 근무시간 외 - 외교부 전용 외국어 교육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 수강

* 현직 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운영 중
(자료: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내 직원 대상 비대면·원격 교육(215명, 9개 언어), 1:1 전화·화상 과정(405명, 10개 언어), 사이버 외국어과정(602명, 45개 언어) 등 연간 1,200여 명 규모의 비대면 학습 교육과정이 운영 중임.

외교관후보자 및 외무영사직 제2외국어 정규과정의 경우, 기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외국어교육 시수를 배정(격일 2시간 수업)하여 강의시수 자체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부내 직원 대상 교육과정(비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일부를 전임강사의 신규 과업으로 배정·전환하는 등 전임강사의 활용방안을 적극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전임강사 운영 예산’과 ‘비대면·모바일·사이버 교육과정 예산’간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전임강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외국어 교육 예산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라.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외교원은 정부기관 고위급 공직자 및 공공부문 간부를 대상으로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을 운영[143]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3억 9,3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2%임.

<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3	393	-	-	-	393	382	-	11	97.2

2025년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서 총 46명이 입교하여 연간 1,41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기술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 교육훈련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음.

143) 2007년 '국가 외교역량 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를 거쳐 개설 승인된 이래, 고위 공직자들의 국제관계 정책리더 양성 및 범정부적 국제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약 44~45주간 운영 중인 장기교육과정임.

4) 사업 집행절차

교육생 선발		교육 실시		교육 수료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탁 교육생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립외교원으로 통보 ■ 헌법·공공기관 위탁 교육생 -국립외교원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조사하고 자격요건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발	⇨	■ 약45주간의 장기과정으로 교육 진행 -국제연구,지역연구,리더십 소양,국정비전토론,참여·현장학습,외국어,자기계발,봉사활동 등	⇨	■ 수료 -수료기준 충족시 수료증 수여

< 2025년도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현황 >

입교생	교육과정	교육시수
- 29개 중앙부처, 3개 지자체 국장급 41명 - 헌법기관 간부 5명	- 국제·지역연구·외국어교과	424
	- 리더십 소양·국정비전 교과	308
	- 팀학습, 참여학습, 현장학습	462
	- 자기계발활동	178
	- 기타(워크숍, 입교식 등)	42

(자료: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

□ 위탁교육비 처리 방식의 적정성 검토

동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내·외부 강사료에 2억 3,700만원, 국내외 현장학습 출장경비에 4,900만원, 강의실 및 행사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비와 임차료 등으로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결산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비목	2025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 일반수용비(210-01)	295	291	4
- 임차료 (210-07)	27	23	4
- 국내여비(220-01)	3	3	0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6	1
- 사업추진비(240-01)	16	14	2
- 자산취득비(430-01)	5	5	0
합 계	393	382	11

(자료: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p. 971.)

한편, 외교원은 본예산 외에 교육생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수령하여 집행하고 있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144]에 근거하여, 국내현장학습을 위한 숙박비·교통비 및 교재비 등 교육생 1인당 소요되는 실경비(총 450만원)를 교육생의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징수)하고 있는바,

2025년도 입교생 46명 기준 총 2억 700만원의 별도 교육비를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함. 그럼에도 외교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교육비 자금을 국고로 입금하는 '세입'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외교원은 '국립외교원' 명의의 일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매월 내부 공문서(전자결재)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교육비는 숙박비· 교통비 등 정산이 빈번한 경비로서 전부 교육생의 현장학습 경비 등 교육생을 대신하여 지출되고, 잔액은 원소속 기관에 반환하며, 외교원의 기타 지출 용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관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입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함.

---

14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원의 자금 관리 방식은 「국가재정법」 제17조가 규정하는 국가재정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세입·세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145]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146]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지출할 수 없음.

외교원에서는 교육생의 모든 소속 부처에서 직접 관련 업체 등에 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 양측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외교원이 각 부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일괄 집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현실적 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음.

---

14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146)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하지만, 비록 빈번한 정산이 필요한 실경비라 하더라도, 부처 간 자금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 자금은 반드시 정식 세입 계좌로 청구·수납되어야 하며, 지출 역시 예산 조치를 거쳐 세출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

따라서 외교원이 세입 조치 없이 기관 자체 명의의 일반 예금 계좌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수령·지출해 온 관행은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위탁교육비 정산의 번거로움이나 교육 수요 변동에 따른 유연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를 세입과 세출로 정식 반영하되 이를 직접 연계하여 운용하는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전환·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실제로 인사혁신처 소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경우, 고위정책과정·전문교육 등 유료 교육과정 운영 수입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2131-650)' 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147]. 이는 교육생의 원 소속기관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입을 정식 세입으로 수납한 뒤 해당 교육과정 운영 및 부대경비로 직접 충당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선례임.

향후 동 위탁교육비가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될 경우, 법정 세입·세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 규모에 맞춘 지

14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p.39~48. 참조

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148].

148) 수입대체경비란,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제도임. 법정 세입·세출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수입 변동에 따른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함.

마.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149]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100만원을 합산한 총 2억 2,100만원임.

외교부는 이 중 「인태전략 9대 과제별 이행 지원」 사업을 위한 본예산 1억원에서 9,100만원을 집행하여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당초 2024년 12월 개최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사정으로 순연되었던 「인태 고위급 포럼」의 이월 예산 1억 2,100만원은 행사대행 PCO[150] 용역계약 잔액으로 전액 집행하였음[151].

<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100	100	121	-	-	221	212	-	9	91
- 인태 고위급 포럼	-	-	121	-	-		121	-	-	100
- 인태전략 9대 과제별 이행 지원	100	100	-	-	-		91	-	9	91

149)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 신설된 사업으로, 본예산 8억 4,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집행률 46%).

(단위 : 백만원)

연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846	846	389	121	336
2025	100	221	212	-	9

150)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컨벤션 기획사):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 행사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 등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

151) **「인태 고위급 포럼」**: 인태지역 주요국 장관급 인사를 초청, 우리 인태전략 이행계획 및 성과를 발표하고 역내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유사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함.

「인태전략 9대 과제별 이행 지원」: 인태전략 이행체계 및 과제를 보완하고 분야별 성과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 외교전략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함.

□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행사 축소·변경 개최에 따른 변경계약 및 감액정산 절차 미준수

외교부는 2024년도 본예산 중 7억 4,600만원을 「인태 고위급 포럼」을 위해 배정하였으나, 12월 비상계엄 등 국내외 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행사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PCO 용역 계약 잔액[152]인 1억 2,100만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음.

외교부는 당초 인태지역 주요국 장관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태전략 성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1.5 Track 방식[153]의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을 계획하였음.

당초 예산은 장관급 인사 초청 여비(2억 6,000만 원) 및 대규모 행사장 임차료(2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4,600만원 규모였으나, 행사의 순연으로 여비 및 임차료 예산은 상당액 불용 처리되었음.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예산 구성 및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4년도 예산	2024년 집행액	2024년도 불용액	2025년도 이월액	2025년도 집행액	예산편성 당시 세부산출근거 (당초 계획 기준)
일반수용비	18	16	2	-	-	국내외 전문가 사례비 등

152) 총 계약금액은 1억 9,400만원이었으며, 선급금으로 2024년도에 7,300만원을 지급하였음.

153) 1.5 트랙은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차원의 외교 대화 채널을 의미함. (출처: 「한국의 외교 유연성과 투트랙 접근법의 외교전략」,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1 트랙	정부 간 공식 대화채널
1.5 트랙	반관반민(半官半民) 의 통로
2 트랙	민간 수준의 국가간 협의

비목	2024년도 예산	2024년 집행액	2024년도 불용액	2025년도 이월액	2025년도 집행액	예산편성 당시 세부산출근거 (당초 계획 기준)
임차료	250	83	167	-	-	대규모 행사장 임차료
일반용역비	**200**	**73** (선금)	**6** (낙찰차액)	**121**	**121**	**행사대행 PCO 용역비**
국내여비	8	2	6	-	-	업무협의 관련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260	100	160	-	-	개도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 및 세계 석학 초청 여비 등
사업추진비	10	10	-	-	-	행사 오만찬 비용 등
합계	746	284	341	121	121	2024년 선금 및 2025년 이월액으로 PCO 총액(194백만원) 전액 지급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후 외교부는 이월된 용역계약 잔액 1억 2,100만원을 활용하여, 2025년 5월 27일 당초 계획 대비 규모를 대폭 축소한 「해양안보 심포지움」을 대체 개최하였음.

<「해양안보 심포지움」 개최 개요 및 주요 참석자 현황 >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7일(화) 09:30~20:30, 서울 포시즌스 호텔(아라홀)
주재 / 주관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인태전략과
회의 주제	미·중 전략 경쟁 하 해양 안보 질서 현황 평가 및 한국에의 제언
해외 초청 연사	- 미국: 아이작 카든(Isaac Kardon)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 인도: 아닐 쿠마르 초울라(Anil Kumar Chawla) 국방전략연구소 명예연구원(前 해군제독) - 호주: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소장 - 프랑스: 마크 쥘리엔(Marc Julienne)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연구부장
국내 참석 기관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부대 행사	심포지움 계기 인태지역 역내 평화·번영 기여 성과 평가를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별도 간담회 개최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그러나 당초 계획된 포럼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및 주요 파트너국을 대규모로 초청하는 1.5 Track 방식의 고위급 행사였으나, 실제 개최된 심포지엄은 4명의 해외 전문가와 국내 유관부처 및 전문가 간 소규모 협의회 형태로 진행되어 과업의 실질적 내용과 규모가 명백히 축소·변경되었음.

<'인태고위급 포럼'과 '해양안보 심포지엄'비교표>

구분	당초 계획 인태 고위급 포럼	실제 집행 해양안보 심포지엄	주요 변경점
행사 성격	우리 인태전략 추진 성과 발표 및 각국 협력 논의	미중 전략 경쟁 하 해양 안보 질서 평가	행사 성격의 변동
	대표 성과사업 목적의 대규모 국제 포럼	소과제 중심의 소규모 전문가 협의회	종합 포럼-> 특정 세션 주제 축소
회의 형태	정부 · 민간 · 학계 참여 1.5트랙 방식	정부 유관부처 및 해외 전문가 간 간담회/협의회	회의 운영 방식 변경
참석 규모	총 200여 명 참석 기획	정부 관계자 및 해외 전문가 4명	참석 인원 대폭 축소
초청 대상	인태 대상국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	미국, 인도, 프랑스, 호주 등 4개국 전문가	초청 대상 격하 및 범위 축소
	세계 석학 및 주한 외교단, 언론 등	-	-
개최 시기	(당초) 2024. 12. 13.(예정)	2025. 5. 27.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순연

외교부는 2024년 8월 PCO 용역계약을 체결(계약총액 1억 9,400만원)하고 선금 7,300만원을 지급한 후, 행사가 순연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관련 PCO 용역계약 체결 및 집행 현황>

구분		주요내용 및 집행 현황
2024. 8.	계약 체결	행사대행 PCO 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 완료 *계약총액:194백만원
2024. 12.	선금 집행	PCO 계약 총액 중 선금 73백만원 지급
2024.12.19.	계약 잔액 이월	용역 계약기간 연장(~ 2025.12.31.)계약 체결
2025. 5.27.	행사 개최	대체 행사(「해양안보 심포지움」) 개최
2025.7.22.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전액 집행

< PCO 용역 계약 변경 합의서(계약기간 연장) >

계약 변경 합의서

사업명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계약금액	당초: 일금 일억구천사백칠십구만구천원(194,799,000원) 변경: 일금 일억구천사백칠십구만구천원(194,799,000원) 증감: 없음
계약기간	당초: 2024.8.27. ~ 2024.12.31. 변경 : 2024.8.27. ~ 2025.12.31. 증감 : (증) 1년
사업내용	당초: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1회 변경 :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1회
사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 연기

* 지체상금 미대상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사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redacted] 대표

(자료: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인태전략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154]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과업에 맞게 원가 계산을 다시 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함.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처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단순 일정만 조정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함.

이처럼 행사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닌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실질적인 과업 축소가 발생하였음에도 적법한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르는 계약내용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월

1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예산 전액을 그대로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외교 행사를 추진할 때, 제반 사정 변화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변경 등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따른 철저한 감액 정산 등 회계 처리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은 2024년 5월 외교부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 및 산하 '외교정보기획국'[155]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동 사업은 美 국무부 정보조사국(INR)[156]과의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157]를 기반으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우방국의 외교정보기관과 유사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공관으로부터 외교정보를 보다 신속·광범위하게 수집·분석·관리·배포함으로써 국익 중심의 외교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5년도 예산액은 13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억 4,400만원임. 이 중 10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4.0%,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1.2%임.

---

155) 외교정보기획국의 세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국가안보 및 외교관계 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해 비공개로 관리됨. 동 국은 외교전략기획국(정책 기획·전략 구축)과 구분되는 정보 전담 부서로, 외교통신망·공개정보(OSINT)·첨단 정보 등 전방위 정보원(All-source)을 활용해 국제정세 및 지역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주요 정책 결정자 대상 적시 정보 유통, 외교정보 DB 구축, 우방국과의 대외 정보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함.

156) 美 국무부 소속 정보조사국(INR,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18개 정보기관이 속해 있는 정보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의 일원으로, 미 국무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음.(외교부 보도자료, 「한반도본부장,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 면담(9.18.)」, 2023.9.18.)

157) 美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024.6.24.)하여 한미 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 마련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90	1,390	54	-	-	1,444	1,029	30	385	74
- 한미 외교정보 동맹 체계 구축	391	391	-	-	-	391	276	-	115	70.5
-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	723	723	33	-	-	756	545	-	211	72
-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276	276	21	-	-	297	208	30	59	75.6

(자료: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 외교정보기획국 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정밀도 제고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외교정보기획국 신설(2024.5.) 이후 동 사업 예산은 2024년 10억원에서 2025년 13억 9,000만원으로 39% 증액[158]되었으나, 예산 집행률 저조, 핵심 전문인력 채용 지연, 정책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해외 공관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등 조직 및 사업 운용 전반에서 미흡한 점이 보임.

< 연도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4	1,000	1,000	-	5	1,005	786	78.6	78.2	54	165
2025	1,390	1,390	54	-	1,444	1,029	74	71.2	30	385
2026	1,322	1,322	30	-	-	-	-	-	-	-

158)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국 신설에 따른 인사이동(동북아국→외교정보기획국)으로 인한 인건비(동북아 정세분석 연구원 4명) 이관 및 신시장 정세분석에 특화된 전문 연구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음.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한미 외교정보 동맹 체계 구축」사업은 불용률 29.4%,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사업은 불용률 31.8%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집행 부진이 나타남.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90	1,390	54	-	-	1,444	1,029	30	385	74
- 한미 외교정보 동맹 체계 구축	391	391	-	-	-	391	276	-	115	70.5
-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	723	723	33	-	-	756	545	-	211	72
-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276	276	21	-	-	297	208	30	59	75.6

(자료: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이는 외교부가 조직 신설에 맞춰 사업 소요를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나, 국내 계엄 상황 및 美 연방정부 셧다운 등 예상치 못한 대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행정 절차 지연 및 해외 협력 일정 차질 등 사업 추진상의 물리적 제약이 수반된 결과로 보임.

다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유효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과 대외 환경 변수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용역의 이월 관행 개선 필요

2024년도에 정책연구비 5,400만원이 이월된 데 이어, 2025년도에도 3,000만원의 정책연구비가 이월되었음.

<2024년~2025년 정책연구용역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수(건)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프리즘 등록여부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159]	수의계약 사유[160]
2024	7	299	250	54	미등록	비공개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나목, 2호 차목
2025	5	366	336	30				
	3	49 (이월예산)	49	-				

(자료 :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정보1과)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당해 연도 내에 연구 완료 및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해외공관 주재관 정보활동 지원 등 내내역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필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해외공관 주재관 75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정보활동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500만원에 그쳤음.

외교부는 국내외 정세 변화[161]로 인한 대외 활동 차질을 집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나, 현장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된 점은 개선이 필요함. 해외 공관망을 활용한 'All-Source Intelligence' 구축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관별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재정비가 요구됨.

외교정보기획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정보 총괄 기구로서, 조직 신설 이후 다변화되는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정보 분석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집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외교정보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내실 있게 달성해야 할 것임.

161) 계엄 및 정부 교체, 美 정부 셧다운 등

17. 재외공관 운영

가. 개 요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제반 공관 운영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대(對) 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를 통한 안전 도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동 프로그램은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8,011억 8,200만원이고, 이 중 7,750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재외공관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744,765	801,182	801,182	775,055	834,998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74,222	299,243	299,243	287,039	312,287
		[11] 일반	[101] 재외공관 인건비	274,222	299,243	299,243	287,039	312,287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41,154	148,954	148,954	151,781	152,144
		[11] 일반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41,154	148,954	148,954	151,781	152,144
	[4012] 재외공관 운영			20,524	22,099	22,099	22,007	23,250
		[11] 일반	[251]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16,663	18,042	18,042	17,986	19,193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3,861	4,057	4,057	4,021	4,05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92,743	224,367	224,367	208,927	235,799
		[11] 일반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92,743	224,367	224,367	208,927	235,799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116,122	106,519	106,519	105,302	111,518
		[11] 일반	[401]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24,706	5,926	5,926	6,022	6,117
		[11] 일반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22,930	25,082	25,082	24,392	25,261
		[11] 일반	[40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68,486	75,511	75,511	74,887	78,923

나.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사업은 재외공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직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며, 그 밖에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임.

2025년도 예산은 1,489억 5,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517억 8,100만원임.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48,954	148,954	-	3,950	-	152,904	151,781	15	1,108	101.9	99.3

□ 환위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예상되는 외화 소요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산정한 환율인 '예산편성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안 편성을 진행하는 5~8월 3개월 동안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예산편성기준환율을 산정함[162].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환율은 1,380원/달러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미화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2025년에는 실제 집행환율이 예산편성기준환율을 상당폭 상회함에 따라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부족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환율을 살펴보면 1분기와 4분기 평균환율이 1,452원으로,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환율이 예산편성기준환율을 상회하였음.

< 2025년도 환율 통계 >

(단위 : 원/달러)

실제 환율				예산편성기준환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52.68	1,400.94	1,386.88	1,452.21	1,380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15:30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이에 따라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전용을 하였음.

16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4. 10.」, 314쪽

< 재외공관 기본경비 사업 자체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4012-251)	210-14	100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210-01	전세계적인 물가인상에 따른 경직성경비 지출 확대 및 대규모 환차손으로 인한 원화예산 부족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4012-251)	210-14	42		210-05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110-03	3,118		210-02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운영 기본경비 (4011-251)	220-02	77		210-08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운영 기본경비 (4011-251)	220-02	166		210-09	
자체전용 ('25.11.26.)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210-14	80		210-09	
자체전용 ('25.12.19.)	재외공관운영 기본경비 (4011-251)	220-02	80		210-01	
자체전용 ('25.12.19.)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4012-251)	210-14	200		210-01	
자체전용 ('25.12.19.)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220-02	80		210-01	
자체전용 ('25.12.19.)	재외공관 안전강화 (4031-402)	210-15	100		210-01	
자체전용 ('25.12.19.)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4031-405)	210-07	230		210-01	

(자료: 외교부)

자체전용 등으로 환차손을 해결할 시 전용이 발생한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는 등 예산의 계획적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국회는 2008년부터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등 반복적으로 환차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163] 이에 대한 외교부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외교부는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환율변동을 예의 주시하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164] 상 이·전용 등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국제기

16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Ⅲ)」, 10쪽

164)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

구분담금 및 인도적 지원 예산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환위험을 관리해 오고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외교부는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용 등으로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연구비 이월 부적절

외교부는 동 사업에서 ‘국외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와 ‘재외공관 국유화 관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이 중 ‘재외공관 국유화 관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용역은 재외공관 관저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을 건물 성능, 기능 및 활용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계약금은 총 3,000만원임.

< 재외공관 국유화 관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용역 개요 >

용역명	재외공관 국유화 관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계약대상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금액	3,000만원
입찰 공고일	(1차) 2025. 9. 25. ~ 10. 16. (2차) 2025. 10. 17. ~10. 28.
계약일	2025. 11. 21. ~ 2026. 3. 20.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용역은 연말인 2025년 11월 21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중 절반인 1,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3조[165]는 회계

165)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연도 경비를 당해 연도 재원으로 충당하고, 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외교부는 그간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마다 수시로 사업을 착수하여 예산을 집행해왔다는 입장이며, 동 용역 예산의 이월 사유로 1회 유찰 및 국가전산망 화재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역의 소요기간이 4개월에 불과함에도 외교부가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필요성을 판단하고 4분기(9.25.~10.16.)에야 입찰 공고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이른 시기에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였다면 유찰 등 제반 변수와 무관하게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일정을 적기에 관리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은 재외공관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을 위한 인건비, 교육훈련, 전지의료검진비, 외국적 행정직원 방한연수, 이부임여비 등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 예산은 2,243억 6,7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089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111억 4,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3.1%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224,367	224,367	-	△4,298	-	220,069	208,927	-	11,142	93.1	94.9

□ 재외공관 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

외교부는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정기적인 의료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검진은 격년으로 실시하며, 검진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숙박비 등 여비와 검진비를 지원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사업 개요 >

실시 대상 공관	134개 공관 (2025년 기준)
대상자	지원 대상 공관에서 부임일자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
지원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일 · 식비 미지급 · 검진비: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2025년 예산액 18억 3,600만원 중 62.9%인 11억 5,4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8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9억 6,100만원으로 50% 수준이었음.

외교부는 이에 대하여 최근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산인 11억원을 고려하여 관련 용역 위탁을 실시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2025년의 경우 당초 799명에 대하여 전지의료검진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실시 인원은 647명으로, 예산 편성 당시의 목표 인원과 실제 전지의료검진 수행 인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음.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실시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예산	1,835	1,010	1,836	1,501	1,836	1,624	1,836	961	1,836	1,154
인원	726	500	750	490	750	640	750	530	799	647

(자료: 외교부)

따라서 향후에는 최근 집행실적과 실제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 외교행정지원

가. 개 요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제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외에 외교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5년도 기준, 8개의 단위사업 및 6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은 2,35억 3,500만원이고, 이 중 2,204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행정지원				212,727	235,305	235,305	220,401	241,494
	[7001] 본부인건비			90,218	97,277	97,277	93,966	97,983
		[11] 일반	[101] 본부 인건비	90,218	97,277	97,277	93,966	97,983
	[7002] 소속기관 인건비			9,258	9,403	9,403	9,237	10,145
		[11] 일반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9,258	9,403	9,403	9,237	10,145
	[7011] 본부 기본경비			45,217	50,261	50,261	44,948	52,445
		[11] 일반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364	10,757	10,757	10,028	11,565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21	19	19	15	20
		[11] 일반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21	33	33	28	33
		[11] 일반	[204]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총액)	31	31	31	25	31
		[11] 일반	[205]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7	19	19	18	20
		[11] 일반	[206]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18	35	35	21	35
		[11] 일반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34	43	43	36	43
		[11] 일반	[208]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총액)	20	35	35	24	35
		[11] 일반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14	24	24	11	24
		[11] 일반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30	25	25	20	25
		[11] 일반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1	34	34	22	34
		[11] 일반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0	24	24	23	24
		[11] 일반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5	32	32	31	32
		[11] 일반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32	34	34	32	35
		[11] 일반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72	173	173	156	189
		[11] 일반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8	18	18	17	18
		[11] 일반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2	33	33	30	33
		[11] 일반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6	25	25	21	25
		[11] 일반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29	39	39	28	39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8	30	30	20	30
		[11] 일반	[222]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0	-	-	-	-
		[11] 일반	[223] 국제안보국 기본경비(총액)		25	25	20	25
		[11] 일반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29	33	33	22	33
		[11] 일반	[225]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총액)	6	18	18	13	18
		[11] 일반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3,186	27,266	27,266	24,173	28,113
		[11] 일반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815	4,047	4,047	3,785	4,507
		[11] 일반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2,205	325	325	296	350
		[11] 일반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7	74	74	77	81
		[11] 일반	[255]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	380	415	415	312	414
		[11] 일반	[256]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	454	518	518	465	525
		[11] 일반	[257]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188	230	230	185	235
		[11] 일반	[258] 북미국 기본경비	154	279	279	260	274
		[11] 일반	[259]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	61	210	210	102	210
		[11] 일반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181	290	290	263	303
		[11] 일반	[261] 유럽국 기본경비	317	411	411	371	409
		[11] 일반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311	375	375	200	394
		[11] 일반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623	261	261	244	27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356	485	485	409	485
		[11] 일반	[266] 영사안전국기본경비	259	398	398	329	345
		[11] 일반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912	902	902	898	902
		[11] 일반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179	206	206	180	214
		[11] 일반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308	486	486	362	508
		[11] 일반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15	274	274	256	290
		[11] 일반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280	344	344	348	357
		[11] 일반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70	265	265	217	240
		[11] 일반	[273]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01	-	-	-	-
		[11] 일반	[274] 국제안보국 기본경비	150	251	251	242	258
		[11] 일반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199	216	216	178	206
		[11] 일반	[276]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82	194	194	136	188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562	7,231	7,231	6,704	7,423
		[11] 일반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437	2,653	2,653	2,457	2,873
		[11] 일반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126	4,578	4,578	4,247	4,550
	[7031] 외교 정보화			36,582	47,020	47,020	44,888	50,283
		[11] 일반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9,739	22,049	22,049	20,314	21,876
		[11] 일반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2,151	9,916	9,916	9,743	11,644
		[11] 일반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2,124	1,801	1,801	1,793	1,80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505]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2,569	13,254	13,254	13,039	13,962
		[11] 일반	[507] 외교정보 DB 2단계 확정(정보화)	-	-	-	-	1,000
	[7032] 외교정책연구(R&D)			355	338	338	170	338
		[11] 일반	[401] 정책연구개발	355	338	338	170	338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22,468	21,734	21,734	18,607	20,836
		[11] 일반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6,611	5,325	5,325	4,941	4,743
		[11] 일반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894	7,445	7,445	6,897	6,631
		[11] 일반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139	1,617	1,617	1,148	1,957
		[11] 일반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2,914	2,188	2,188	564	2,341
		[11] 일반	[405] 외교기록 개방 서비스 강화	294	286	286	285	286
		[11] 일반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655	500	500	451	505
		[11] 일반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62	4,373	4,373	4,321	4,373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2,067	2,041	2,041	1,881	2,041
		[11] 일반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2,067	2,041	2,041	1,881	2,041

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는 외교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산하기관 평가,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재외공관 운영지원관 역량 강화, 청년인턴 채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집행률(C/B)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617	1,617	-	-	-	1,617	1,148	-	469	71.0

2025년도 예산은 16억 1,700만원이고, 이 중 71%에 해당하는 11억 4,800만원이 집행됨.

□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반복적 집행부진에 따른 운영계획의 정밀성 제고 필요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 12억 9,400만원 중 9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4%에 그쳤으며, 3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동 사업은 2024년에도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에서 3억 6,200만원의 집행잔

액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일용임금 3억 1,800만원, 고용부담금 3,900만원 등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턴 채용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청년인턴 채용	1,294	1,294	-	-	-	1,294	911	-	383	1,216
- 일용임금(110-04)	1,132	1,132	-	-	-	1,132	814	-	318	1,065
- 일반수용비(210-01)	25	25	-	-	-	25	2	-	23	20
- 국내여비(220-01)	10	10	-	-	-	10	7	-	3	9
- 고용부담금(320-09)	127	127	-	-	-	127	88	-	39	12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5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00명 채용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모집계획은 87명으로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71명을 채용하였다고 밝힘.

또한, 2025년에는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정,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 채용절차를 전면 정비하는 과정에서 채용 일정이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 여건이 집행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아울러 2026년부터는 부서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규모를 조정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산채용을 실시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채용 운영방

식의 보완은 필요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실제 운영계획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예산은 당초 100명 채용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71명에 그쳤는바, 부서별 인력수요와 채용 가능 규모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청년인턴 운영계획 수립 시 부서별 인력수요와 채용 가능 규모,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정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 요

KOICA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66]임.

KOICA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출연·보조받아 운영함.

KOICA의 2025년 본예산은 2조 13억 50백만원, 2차 추경 기준 예산은 1조 9,679억 80백만원이며, 이 중 1조 8,996억 17백만원을 집행함.

---

1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2025년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 원, %)

항목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A)	(A'-A)	(A')	(B)			(B/A')
총 합계	2,001,350	1,967,980	5,664	1,973,645	1,899,617	36,489	37,539	96.2
□ 인건비	51,040	51,040	418	51,458	51,420	-	38	99.9
협력사업 지원(ODA)	51,040	51,040	418	51,458	51,420	-	38	99.9
□ 경상운영비	1,756	1,756		1,756	1,746	-	10	99.4
협력사업 지원(ODA)	1,756	1,756		1,756	1,746	-	10	99.4
□ 사업비	1,947,163	1,913,793	5,664	1,919,458	1,846,451	36,489	36,519	96.2
<출연사업>	1,310,267	1,276,897	3,207	1,280,105	1,236,228	7,473	36,405	96.6
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307,548	296,178	3,140	299,318	281,405	1,334	16,579	94.0
베트남(ODA)	57,293	52,293	△3,600	48,693	44,186	-	4,507	90.7
인도네시아(ODA)	17,114	17,114	1,527	18,641	18,233	-	408	97.8
캄보디아(ODA)	21,232	21,232	-	21,232	21,062	-	170	99.2
필리핀(ODA)	30,470	30,470	5,509	35,979	34,699	-	1,280	96.4
방글라데시(ODA)	14,044	14,044	△477	13,567	13,016	-	551	95.9
몽골(ODA)	20,937	20,937	△275	20,662	19,123	307	1,232	92.6
라오스(ODA)	27,290	27,290	△2,470	24,820	20,564	-	4,256	82.9
스리랑카(ODA)	7,975	7,975	-	7,975	7,580	290	105	95.0
네팔(ODA)	14,653	14,653	-	14,653	14,007	-	646	95.6
파키스탄(ODA)	11,315	11,315	500	11,815	11,780	-	35	99.7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77,278	2,427	79,705	76,365	738	2,602	95.8
인도(ODA)	250	250	-	250	250	-	-	100.0
미얀마(ODA)	1,327	1,327	-	1,327	540	-	787	40.7
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2,087	289,087	2,416	291,503	278,960	2,625	9,918	95.7
가나(ODA)	20,583	20,583	1,600	22,183	22,081	-	102	99.5
에티오피아(ODA)	28,644	28,644	548	29,192	25,494	1,166	2,532	87.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73,966	1,685	175,651	170,130	1,459	4,062	96.9
르완다(ODA)	17,733	17,733	-	17,733	17,413	-	320	98.2
우간다(ODA)	17,547	17,547	100	17,647	16,962	-	685	96.1
탄자니아(ODA)	17,931	9,931	-	9,931	9,631	-	300	97.0
세네갈(ODA)	12,507	12,507	△1,000	11,507	11,187	-	320	97.2
이집트(ODA)	8,176	8,176	△517	7,659	6,062	-	1,597	79.2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4,432	94,432	127	94,559	92,536	554	1,470	97.9
콜롬비아(ODA)	11,229	11,229	△2,447	8,782	8,670	-	112	98.7
페루(ODA)	9,497	9,497	3,350	12,847	12,681	-	166	98.7
볼리비아(ODA)	17,250	17,250	△3,698	13,553	13,549	-	4	100.0
파라과이(ODA)	11,100	11,100	△1,900	9,200	8,942	-	258	97.2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5,356	45,356	4,822	50,178	48,694	554	930	97.0
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15,139	111,139	496	111,635	107,104	2,943	1,589	95.9
우즈베키스탄(ODA)	22,020	22,020	-	22,020	19,789	2,032	199	89.9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65,972	△2,120	63,852	62,686	74	1,092	98.2
키르기스스탄(ODA)	12,653	12,653	2,766	15,419	14,408	838	173	93.5
타지키스탄(ODA)	5,439	5,439	-	5,439	5,397	-	42	99.2
우크라이나(ODA)	5,055	5,055	△150	4,905	4,823	-	82	98.3
5. 글로벌 프로그램	336,244	331,244	1,214	332,458	328,012	17	4,429	98.7
해외봉사단 및	143,026	143,026	2,062	145,088	143,571	-	1,517	99.0

항목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A)	(A'-A)	(A')	(B)			(B/A')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글로벌연수(ODA)	67,973	62,973	614	63,587	61,692	-	1,895	97.0
국제기구협력(ODA)	80,015	80,015	△742	79,273	78,858	-	415	99.5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45,230	45,230	△720	44,510	43,893	17	600	98.6
6. 협력사업 지원	76,117	76,117	214	76,331	75,054	-	1,277	98.3
협력사업 지원(ODA)	76,117	76,117	214	76,331	75,054	-	1,277	98.3
7. 전략적협력강화	6,400	6,400	△4,400	2,000	1,923	-	77	96.1
전략적 협력강화(ODA)	6,400	6,400	△4,400	2,000	1,923	-	77	96.1
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출연금)	72,300	72,300	-	72,300	71,234	-	1,066	98.5
민관협력사업(ODA)	65,000	65,000	-	65,000	63,938	-	1,062	98.4
인도적지원(ODA)	7,300	7,300	-	7,300	7,296	-	4	99.9
<보조사업>	636,896	636,896	2,457	639,353	610,223	29,016	114	95.4
9.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보조금)	636,896	636,896	2,457	639,353	610,223	29,016	114	95.4
인도적지원(ODA)	636,896	636,896	2,457	639,353	610,223	29,016	114	95.4
□ 예비비	1,391	1,391	△418	973	-	-	973	-
10. 협력사업지원 (경평성과급)	1,391	1,391	△418	973	-	-	973	-
협력사업지원(ODA) (경평성과급)	1,391	1,391	△418	973	-	-	973	-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교부액을 포함한 금액임

나. 총 괄

□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배당 및 이사회 정상화 노력 필요

KOICA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에 파견되었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자회사인 코웍스를 설립하였음.

코웍스는 출범 이후 최근 안정적인 이익잉여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19일 제34차 이사회에서 모회사인 KOICA에게 13억 9,200만원의 배당결정을 하였고, 이에 코웍스의 2024회계연도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대비 13억 3,600만원 감소한 14억 9,700만원이 되었음.

한편, 이러한 코웍스의 경영 악화에 따라 KOICA는 자회사인 코웍스에게 2025회계연도에는 3억원의 무상증자를 하였으나 여전히 미처분결손금이 4,900만원 발생하였음.

<최근 5개년 코웍스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산	유동자산	3,399	3,587	4,249	4,948	3,209
	비유동자산	466	689	676	672	802
	자산총계	3,865	4,276	4,925	5,620	4,011
부채	유동부채	1,934	1,669	2,000	4,078	2,448
	비유동부채	241	130	92	45	320
	부채총계	2,175	1,799	2,092	4,123	2,768
자본	자본금	692	692	992	992	1,292
	이익잉여금(결손금)	998	1,785	1,841	505	-49
	기타	-	-	-	-	-
	자본총계	1,690	2,477	2,833	1,497	1,243
부채비율		128.71%	72.62%	73.83%	275.37%	222.71%

(자료: 2025 코웍스 감사보고서)

이에 대해 KOICA는 기존에는 코웍스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경영협약을 맺었으나, 2023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용역계약을 통해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통하여 모회사의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일부 축소”하라는 지적[167]에 따라 위와 같은 배당을 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와 같은 의견의 취지는 자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의 배당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란 것으로, 무리한 규모의 배당을 하여 자회사의 자본금을 잠식하라는 것은 아니었음.

특히 해당 배당 결정을 하였던 코웍스 이사회의 회의록[168]을 보면 해당 결정에 반대한 비상임이사 1인이 “2024년도 결산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가능 한도까지 배당하는 것이 적정한지” 우려를 표하고, “상법상의 회사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있는데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는 해산 외에는 없으며, 일회성 전액 배당 시 코웍스의 지속가능에 대한 의문”을 이미 언급한 바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정원 300인 이상인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12억 9,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코웍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169]한 바 있음.

---

167)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7., pp.177~181

168) 제34회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코웍스, 2024.12., pp.3~14

169)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고용노동부, 2024.6., p.257

KOICA는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보고서에 따라 2025년에 3억원의 무상증자를 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실상은 코웍스가 배당을 KOICA에 13억 9,200만원을 하였고 그 중 일부를 무상증자로 돌려받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KOICA는 향후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배당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와 같은 결정을 하는 코웍스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170]으로 구성[171]되나 2022년 10월 이후 상임이사는 공석인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KOICA 당연직이사는 모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반면, 사외이사는 자회사의 입장에서 재무건전성에 우선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됨.

위와 같은 배당을 결정한 해당 코웍스 이사회에서도 중간배당 결의의 건에 대해 사외이사 1명은 반대를, 대표이사 1명과 KOICA 당연직이사 2명은 찬성하여 가결하였음.

따라서 KOICA는 자회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에는 있으나 공석인 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170) 비상임이사 3명은 사외이사 1명, KOICA 당연직이사 2명으로 구성.

171) 코웍스 임직원수, 공공기관 알리오

□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개최 필요

KOICA는 정부출연금은 원화 기준으로 편성 및 교부되는 반면, 국별 협력사업 및 해외 사무소 운영비 등 현지 집행 비용은 달러화(USD) 또는 현지 통화로 지출되어 편성 시점 대비 집행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현지 사업비 축소 또는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짐.

또한 「국가재정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처럼 선물환 계약이나 통화스와프 등 적극적인 파생상품 활용을 위한 환위험 헤지가 사실상 불가능함.

한편, 2025년(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준) KOICA의 외화집행액은 1조 311억 8,600만원으로 예산집행액 1조 4,757억 800만원의 69.88%를 차지하며 동 기간 USD 달러 기준 송금환율 평균은 1,416.54원으로 편성환율인 1,380원보다 2.65% 높았음. 이러한 편성-집행 환율 불일치로 KOICA는 해외사무소 월결산까지 완료된 2025년 10월 기준으로 계획 대비 148억원 이상 추가 집행하였음.[172]

이러한 상황에서 KOICA는 2013년 5월 환위험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후 매년 환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됨.[173]

---

172) 2025년 2차 환위험관리위원회, KOICA 안전경영실 재무회계팀, 2025.12., p.2

173)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내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이사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경영관리 담당부서의 장, 예산관리 담당부서의 장, 재무회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주·부거래은행 추천 외환전문가 각 1인, 환위험관리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KOICA의 환위험관리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며 많은 경우 서면으로만 개최되며, 최근 3년간 개최된 5차례 중 3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음.

<최근 3개년 KOICA 환위험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비고
2024년 1차 (2024.4월)	김○○ 경영전략본부 이사	조○○ 안전경영실장 이○○ 재무회계팀장 정○○ 예산실장	조○○ ○○은행 ○○부 팀장 양○○ ○○은행 ○○부 부부장	
2024년 2차 (2024.10월)	김○○ 경영전략본부 이사	오○○ 안전경영실장 박○○ 재무회계팀장 정○○ 예산실장	나○○ ○○은행 ○○센터 ○○팀 팀장 조○○ ○○은행 ○○부 팀장 이○○ ○○센터 ○○부장	서면 개최
2025년 1차 (2025.6월)	김○○ 경영전략본부 이사	오○○ 안전경영실장 예산실장(代 서○○ 과장) 박○○ 재무회계팀장	김○○ ○○은행 ○○센터 ○○팀장 조○○ ○○은행 ○○부 수석차장 오○○ ○○대 교수(서면의견 사전 별도 제출)	
2025년 2차 (2025.12월)	김○○ 경영전략본부 이사	오○○ 안전경영실장 손○○ 예산실장 박○○ 재무회계팀장	김○○ ○○은행 ○○센터 ○○팀장 조○○ ○○은행 ○○부 수석차장 오○○ ○○대 ○○학부 교수	서면 개최
2026년 1차 (2026.3월)	김○○ 경영전략본부 이사	오○○ 안전경영실장 손○○ 예산실장 박○○ 재무회계팀장	장○ ○○은행 ○○센터 부부장 정○○ ○○은행 ○○부 팀장 오○○ ○○대 ○○학부 교수	서면 개최

(자료: KOICA)

KOICA의 관련 지침[174]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환위험관리위원회는 KOICA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환율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KOICA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서면보다 대면을 통한 환위험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내실 있는 환위험관리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74)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환율의 급변동이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관련 규정 제정 필요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용역 등 계약목적물에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예치 또는 보증하게 하는 금액임.

KOICA의 ODA 사업 특성상 해외사무소가 현지에서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 종료 후 계약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행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KOICA는 내규인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175]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수취하고 있음.

KOICA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대부분 해외사무소 현지계약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현지의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 이자 지급 여부는 KOICA-수행사 간 계약서 및 현지 관례 등에 따르고 있다고 함.

---

175)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1조(하자담보) ②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 하자보수보증금 현황>

(단위 :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1,052,486	51,222,330	28,989,526	52,421,119	78,776,966

2025회계연도 KOICA의 하자보수보증금은 78,776,966원이며, 그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절차>

업무단계	수행주체 및 내용
계약 수행	(수행사)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등 이행 (KOICA 사무소) 계약 이행내용 모니터링 및 기성 지급
↓	↓
계약 종료	(수행사) 완료계 제출 (KOICA 사무소) 완료계 검토, 검사 등 실시
↓	↓
최종 기성 지급 및 하자보수보증금 수취	(수행사) 최종 기성 청구 공문 제출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KOICA 사무소) 최종 기성 지급 및 KOICA 거래은행 계좌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KOICA 본부)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확인 및 후속 회계처리 진행, 모니터링
↓	↓
하자보수보증 이행	(수행사) 계약서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 이행 (KOICA 사무소) 하자보수 필요여부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KOICA 사무소)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되었음을 본부 및 수행사에 통보하고 수행사에 반환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인 요청 (KOICA 본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인 및 후속 회계처리 진행

(자료 : KOICA)

한편, KOICA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출·반환 등에 관하여서는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과 같은 내규를 근거로 하여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보증금 보관에 관하여서는 별도 내규 없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등 상위 법령을 준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그런데 위 상위 법령은 국내에서의 원화 표시 자금 보관·국내 금융기관 예치를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현지 통화로 예치·관리되는 해외사무소의 하자보수보증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보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이율 산정 기준, 보관 계좌의 관리주체(사무소·본부), 반환 시점 확인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계약별·현지 관행별로 처리가 상이해질 소지가 있음.

이에 KOICA는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면밀한 관리를 위해 보증금 보관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다. 국별 협력사업

「국별 협력사업」은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8,192억 600만원이나, 2차 추경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7,970억 1,605만원임.

이 중 95.4%에 해당하는 7,600억 526만원이 집행되고, 74억 5,592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5억 5,486만원이 불용됨.

이에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추경예산 대비 96.1%, 예산현액 대비 95.4%로 나타나고 있음.

< 2025년도 국별협력사업 결산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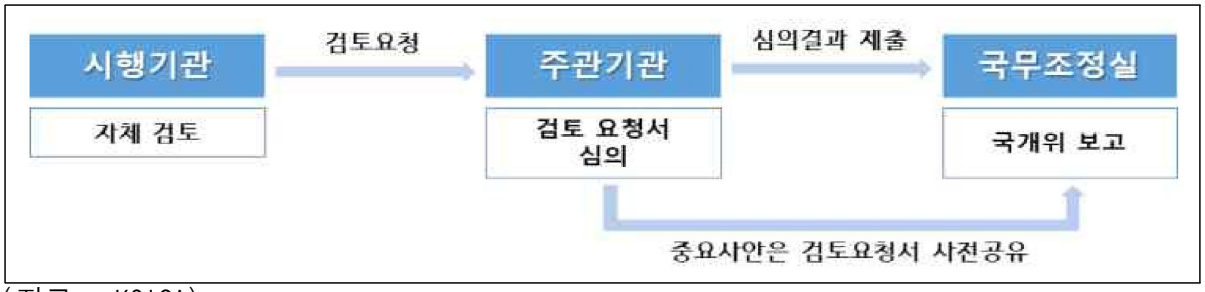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국별협력사업(지역원조) 총괄	819,206	790,836	6,180	-	-	797,016	760,005	7,456	29,555	96.1	95.4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307,548	296,178	3,140	-	-	299,318	281,405	1,334	16,579	95.0	94.0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2,087	289,087	2,416	-	-	291,503	278,960	2,625	9,918	96.5	95.7
③ 중남미지역원조	94,432	94,432	127	-	-	94,559	92,536	554	1,470	98.0	97.9
④ 중동CIS지역원조	115,139	111,139	496	-	-	111,635	107,104	2,943	1,589	96.4	95.9

□ 정부 감액 기조에 따른 국별 협력사업 취소 및 예산 처리 부적절

국별협력사업의 취소는 시행기관인 KOICA의 자체 검토와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검토요청서 심의를 거친 후 승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사업취소의 불가피성, 판단근거, 국제정세 등을 검토함.

<국별협력사업 취소 절차>



(자료 : KOICA)

2025년 KOICA의 전체 국별 협력사업 445건 중 20건의 취소사업이 있었으며, 그 중 우리 정부의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가 14건,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가 6건이었음.

<2025년 사업 취소 국별협력사업 목록>

연번	대상국가	사업명	취소 형태
1	베트남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22-'29/3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사업('21-'27/297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4	캄보디아	캄보디아 중등 STEAM 교육 역량강화 사업('25-'29/1,0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5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24-'27/1,0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6	라오스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24-'28/431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연번	대상국가	사업명	취소 형태
7	스리랑카	스리랑카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 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 개선 사업('25-'29/1,0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8	미얀마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21-'26/1,0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9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GGGI)('21-'27/1,2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0	세네갈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24-'28/1,25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1	볼리비아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경제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24-'28/963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24-'28/1,45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6/6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키슬리츠키 강 수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즈마일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사업('25-'29/900만불)	·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인한 취소
15	동티모르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사업('24-'30/1,120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1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24-'28/550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17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농산물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능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 가치사슬 강화 사업('21-'25/1,000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18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24-'28/1,000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19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24-'27/760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20	페루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24-'27/1,076만불)	· 양국 동의에 의한 취소

(자료 : KOICA)

양국 동의에 의한 사업의 취소는 현지 상황에 따라 이해가 가능하나,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감액기조로 인한 단독 취소 결정은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성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충분한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수원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물론 한국 ODA 사업 전체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감액 기조로 인한 취소라는 취지와는 달리 취소된 사업 예산을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임.

<2025년 우리 정부 감액기조로 취소된 사업의 전용 여부>

연번	사업명	전용액 (단위: 천원)	비고
1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22-'29/300만불)	-	전용 미실시
2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21-'26/1,000만불)	△30,0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3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 (UNFPA) ('24-'28/431만불)	-	전용 미실시
4	캄보디아 중등 STEAM 교육 역량강화 사업('25-'29/1,000만불)	△99,96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5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1,275,0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6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사업 ('21-'27/297만불)	△786,78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7	스리랑카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 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 개선 사업('25-'29/1,000만불)	△4,0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8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24-'27/1,000만불)	△312,2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9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GGGI) ('21-'27/1,200만불)	△1,660,0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10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24-'28/1,250만불)	△250,000	내역/내내역 사업간 조정
11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경제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24-'28/963만불)	△142,109	세부사업간 전용
12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24-'28/1,450만불)	△50,000	세부사업간 전용
13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6/600만불)	△50,000	세부사업간 전용
14	우크라이나 키슬리츠키 강 수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즈마일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사업('25-'29/900만불)	△50,000	세부사업간 전용

(자료 : KOICA)

정부의 긴축 재정 및 감액 기조를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불집행 잔액은 국고로 불용 및 반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어도 이전용에 대한 합당한 활용방안 수립 후 집행되어야 함.

감액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재배정하여 집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의 진정성을 의문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여 임의로 예산을 운용한 행위임.

KOICA는 그 중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 감액기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불용이 예정된 가운데, 당해연도 키르기스스탄 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외교부 승인 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국별협력사업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다년도사업으로 편성되므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취소될 경우 그동안 이미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표로 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매몰비용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사업(GGGI)('21-'27/1,200만불)'은 총사업비 145억 2,000만원 중 누적 집행액이 111억 7,100만원으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감액기조로 취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년도 사업 중도 취소 시 기집행 예산의 매몰비용화 우려에 해당함.

<2025년 사업 취소 국별협력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25 본예산	누적 집행액
1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22-'29/300만불)	3,390	225	8
2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사업('21-'27/250만불)	3,025	1,000	1,041
3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11,050	1,275	
4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24-'28/550만불)	7,150	3	
5	캄보디아 중등 STEAM 교육 역량강화 사업('25-'29/1,000만불)	13,800	100	
6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24-'27/1,000만불)	13,000	323	11
7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24-'28/431만불)	5,603	750	
8	스리랑카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 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 개선 사업('25-'29/1,000만불)	13,800	5	1
9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24-'30/1,120만불)	14,560	0	
10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21-'26/1,000만불)	12,100	50	
11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GGGI)('21-'27/1,200만불)	14,520	3,335	11,171
12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농산물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능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 가치사슬 강화 사업('21-'25/1,000만불)	12,100	50	2,826
13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24-'28/1,250만불)	16,250	250	
14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24-'27/1,076만불)	13,988	350	
15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24-'28/963만불)	12,519	200	58
16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24-'27/760만불)	9,880	450	
17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24-'28/1,000만불)	13,000	0	
18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24-'26/600만불)	7,800	50	
19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24-'28/1,450만불)	18,850	50	
20	우크라이나 키슬리츠키 강 수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즈마일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사업('25-'29/900만불)	12,420	50	

(자료 : KOICA)

또한,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이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KOICA 내부적으로 취소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KOICA는 국별협력사업의 우리 정부 단독 결정에 따른 취소를 지양하고, 사업취소 관련 구체적인 요건, 예산 반납 등 절차 및 잔여예산 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사업계획 변경 지양 및 실효적 사업 관리 필요

국별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과 KOICA 내규인 「사업계획변경 규정」, 「국별협력사업 규정」,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변경유형별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변경유형	KOICA 이사장	외교부 장관	국조실 보고
사업 취소	●	●	●
총사업비 변경	● 100만불 미만 누적20%이하	● 100만불 이상	● 누적 20%초과
사업대상국 / 사업지 변경	●	●	●
사업분야 변경	●	●	
변경 횟수 누적 4회 이상	●	●	
사업기간 변경	●		●
사업명 변경	●		

(자료 : KOICA)

2025년의 경우 총 154개 사업을 대상으로 변경이 추진되었는데, 전체 445개 국별협력사업 중 34.6%에 달하는 154개 사업에서 계획 변경이 발생한 것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및 환경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변경유형별 사업계획 변경 건수>

변경유형	건수
사업 취소	20건
총사업비 변경	(미화) 25건, (원화) 36건
사업대상국 / 사업지 변경	12건(사업대상지)
사업분야 변경	-
사업기간 변경	90건
사업명칭 변경(국문)	24건

(자료 : KOICA)

또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의 경우 사업 성과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고,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전반적인 ODA 사업의 성과 관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명칭의 변경은 초기 사업 목표와 정체성 설정이 모호했음을 방증한다고 볼 측면이 있음.

따라서 KOICA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 수원국의 이행 역량, 현지 여건, 정세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무분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 사업계획 변경 심의 기준을 엄격히 하며,

연례적인 사업계획 변경 현황을 사업 정기점검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유형의 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분야 및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대상 국별협력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2025년 베트남 대상 KOICA의 국별협력사업은 33건이며 본예산은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572억 9,300만원이었음. 그러나 33건 중 45.5%에 달하는 15건의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집행률 50% 이하 베트남 대상 국별협력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집행액	집행률
1	베트남 탱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26/900만불)	4,397	2,108	47.9
2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21-'28/1,398만불)	2,537	308	12.2
3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22-'28/1,200만불)	4,271	787	18.4
4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22-'29/300만불)	225	0	0
5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247	0	0
6	베트남 메콩유역 롱안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촉진 사업 ('24-'28/1,083만불)	3,601	14	0.4
7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 ('24-'29/2,000만불)	4,253	1,325	31.2
8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24-'30/1,200만불)	2,355	2	0.1
9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24-'28/1,470만불)	700	5	0.8
10	베트남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적응 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 ('25-'29/750만불)	100	1	1.4
11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 프로그램('25-'29/2,000만불)	100	3	2.9
12	베트남 중북부지역 해안사막화 방지사업('25-'30/2,000만불)	100	3	2.8
13	베트남 띠엔비엔성 소외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자립역량 강화 사업('25-'29/2,000만불)	100	0	0
14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24-'33/3,000만불)	2,140	4	0.2
15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25-'27/250만불)	100	0	0

(자료 : KOICA)

KOICA는 이에 대해 2025년 초 베트남 중앙·지방정부 조직 통폐합으로 인해 수원기관의 사업승인 및 설계승인 등이 지연되었고, 동년 9월 ODA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승인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협의의사록 체결에 총리 인준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지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임.

베트남의 정부조직 통폐합은 2024년 하반기 당 중앙위원회의 내부 결의를 시작으로 2025년 2월 19일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고 2025년 3월 1일 자로 중앙부처가 통폐합되고 7월 1일 자로 지자체가 개편[176]되어 이를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인정됨.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저조는 이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적[177]한 바 있고, 기존에도 현지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베트남의 ODA 집행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사전에 있었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는 무관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취소된 경우도 있음.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은 기후위성 도입을 통해 태풍 감시 및 예보 체계를 베트남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원기관인 농업환경부(당시 자원환경부)가 2024년에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2025년 한국 기후위성 교체 계획(2031년)에 따른 지원범위 수정 요청에 따른 문제가 이미 존재하였음.

176) 베트남의 정부 조직 및 행정구역 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6.1.

177)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회, 2022.8., pp.197~201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 강화사업(’24-’28/1,470만불)’은 사법 정책 및 법제 연구 역량강화와 스마트도서관 신축 및 사법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주파견 과업 추진방식에 대한 우리 대법원 측의 입장 변화에 따라 2025년 6월 PMC[178] 과업범위 조정을 위한 집행계획 변경과 그에 따라 7월에 RD[179] 체결 후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11월에 PMC 용역이 유찰되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

‘베트남 띠엔비엔성 소외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자립역량 강화사업(’25-’29/2,000만불)’은 띠엔비엔성 산간·오지에 전선 및 변전소, 전력계량기 등 전력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착수 전 추가 소요기간이 발생하였고, 예비조사 이후 수원기관의 사업대상지 조정에 따라 대상지를 재확정하고 변경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음.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25-’27/250만불)’은 비구조화된 베트남 국가법령DB에 대해 데이터 표준화·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정부 재원을 활용한 공공투자사업의 본

178)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사업수행기관

179) Record of Discussions, 협의의사록

격 착수사실을 공유받고 동 사업과 베트남 자체사업간 대상 범위 및 기능 산출물 측면에서 중복 우려가 큼을 확인한 후 2026년 3월에 사업을 취소함.

향후 KOICA는 베트남 대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수원국 내 절차 및 사업 중복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가능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 인적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글로벌연수(ODA)」,「국제기구협력(ODA)」,「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3,362억 4,400만원이나, 2차 추경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3,324억 5,815만원이며, 이 중 3,280억 1,236만원을 집행하였음.

< 글로벌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143,026	143,026	-	2,062	-	145,088	143,571	-	1,517	100.4	99.0
글로벌연수	67,973	62,973	1,214	△600	-	63,587	61,692	-	1,896	98.0	97.0
국제기구협력	80,015	80,015	-	△742	-	79,273	78,858	-	415	98.6	99.5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45,230	45,230	-	△720	-	44,510	43,893	17	600	97.0	98.6
합 계	336,244	331,244	1,214	-	-	332,458	328,012	17	4,429	99.0	98.7

□ 해외봉사단 홍보 등 관리 체계화 필요

KOICA 예산으로 추진되는 해외봉사단 사업은 크게 'WFK[180] KOICA 봉사단'과 'WFK 시행기관 봉사단'으로 나뉨. WFK KOICA 봉사단은 KOICA가 직접 운영하는 봉사단이며, WFK 시행기관 봉사단은 타 정부부처 및 공공·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봉사단 사업으로, KOICA는 이에 대해 예산 교부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함.

WFK KOICA 봉사단의 2025년도 예산은 537억 9,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52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음. WFK 시행기관 봉사단의 2025년도 예산은 66억 1,300만원이었으며, 이 중 6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WFK KOICA 봉사단과 WFK 시행기관 봉사단 구분 >

	WFK KOICA 봉사단 **(KOICA 직접 운영 사업)**	**WFK 시행기관 봉사단** **(개별 시행기관 위탁 및 협력 사업)**
예산(2025) / 집행액	53,795백만원 / 52,724백만원	6,613백만원 / 6,183백만원
운영 주체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 내 유관부서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코이카 직제)	각 정부부처 사업시행기관 (근거 : 외교부「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사업 종류	일반봉사단 NGO 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UNV 대학생봉사단	IT봉사단 청년봉사단(대사협, PAS) 과학기술지원단 한의약봉사단
운영 방식	ㅇ (예산) 출연금 직접/공모/위탁 집행 ㅇ (사업운영) 봉사단사업별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ㅇ (예산) KOICA-개별 사업시행기관 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예산 교부 및 집행 ㅇ (사업운영) 기관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운영 - 기관별 세부 운영 방식은 상이 ㅇ (WFK 통합관리) WFK 통합운영지침 이행 및 사업 관련 실적 보고 등

180) WFK는 World Friends Korea의 약자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임.

	WFK KOICA 봉사단 (KOICA 직접 운영 사업)	WFK 시행기관 봉사단 (개별 시행기관 위탁 및 협력 사업)
	※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 규정 제10조 1. 통합 수요조사·모집공고·선발·교육훈련·복무관리·안전관리·사후관리 등 봉사단 사업 전반에 관한 지침 수립 2. 봉사단 사업에 관한 예산 확보 및 배분 3.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 통계자료 등 DB관리 5. 공동 실태점검 6. 통합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7. 그밖에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 규정 제6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가자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개별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확보 및 행정지원 3. 개별사업 예산의 운용,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통계자료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사업시행기관에의 실적 보고 4. 그 밖에 총괄부처 및 총괄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사항
KOICA 역할	ㅇ WFK KOICA 사업 세부사항 운영 및 관리 (사업별 계획수립, 수요조사, 모집, 선발, 교육, 파견, 복무관리, 안전관리, 성과관리 등)	ㅇ 총괄기관으로써 WFK 시행기관 봉사단 운영 및 관리 (시행기관별 시행계획 검토 및 예산교부, WFK 통합성과관리 및 통합홍보, 통합수요조사, 통합교육, 안전관리 등)

자료 : KOICA

정부는 해외봉사단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발생하던 브랜드 비일관성, 사업 중복, 대외 인지도 부족 및 성과관리 분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WFK라는 단일 브랜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KOICA를 중심으로 예산 및 운영 기능을 통합하고 있음.

그러나 KOICA로 예산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기관별 운영 방식 및 역량 등의 차이로 봉사단 사업의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시행기관별 봉사단 운영 현황 >

구분	시행기관	예산 / 결산 (2025)
IT 봉사단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280백만원 / 2,280백만원
대사협 청년봉사단	(교육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	2,201백만원 / 2,201백만원
PAS 청년봉사단	(교육부) 태평양아시아협회(PAS)	526백만원 / 526백만원
과학기술지원단	(과기부) 한국연구재단(NRF)	1,273백만원 / 843백만원
한의약봉사단	(보건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333백만원 / 333백만원

자료 : KOICA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이 시행기관인 과학기술지원단의 경우, 2025년 상반기 3개국, 3개 기관, 7명을 모집하였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2개국, 5명이었며, 최종 1명만이 합격함. 같은 해 하반기에도 3개국, 3개 기관, 3명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1명만이 접수하였고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여 신규로 선발된 인원이 없었음.

< 2025년도 과학기술지원단 모집 결과 >

	구분	지역	아프리카			합계
		국가	르완다	모로코	탄자니아	
상반기	모집	기관	1개	1개	1개	3개
		인원	4명	1명	2명	7명
		파견 분야	도시계획	분자 및 세포생물학	정보통신일반	-
			수자원관리			
			정보통신일반		분석화학	
			건축			
	지원		3명 (정보통신일반)	2명	없음	5명
	최종 합격		없음	1명	없음	1명
	구분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합계
		국가	르완다	에콰도르	페루	
하반기	모집	기관	1개	1개	1개	3개
		인원	1명	1명	1명	3명
		파견 분야	정보통신일반	IT보안	분자생물물리학	-
	지원		없음	1명	없음	1명
	최종 합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KOICA

또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가 시행기관인 청년봉사단의 경우, 과학기술지원단에 비하여 운영 규모가 크긴 하나, 2025년 목표 참여 인원인 1,950명에 미치지 못하는 1,775명이 참여하는 등 참가 인원이 계획 대비 다소 미달하였음. 또한 해당 기관의 사업 종료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운영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181].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물리적인 예산 통합에서 나아가 시행기관 간 운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1) KUCSS, 「2025년도 WFK 청년봉사단 파견사업 종료보고서」, 33~34쪽

마.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ODA 선진화」,「인도적 지원(ODA)」,「민관협력사업(ODA)」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7,437억 7,400만원이고, 이 중 7,436억 9,000만원을 집행함.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ODA)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ODA 선진화	1,271	1,271	-	-	-	1,271	1,212	-	59	95.4	95.4
인도적 지원(ODA)	677,503	677,503	-	-	-	677,503	677,477	-	26	100.0	100.0
민관협력사업(ODA)	65,000	65,000	-	-	-	65,000	65,000	-	-	100.0	100.0
합 계	743,774	743,774	-	-	-	743,774	743,690	-	85	100.0	100.0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용역의 특정 기관 장기 독점적 수행 개선 필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국내 민간단체(NGO)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사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KOICA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 동 사업의 참여 단체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체명	수행 연도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지역	총사업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5-’27	마다가스카르 남부지역 기후 이주민을 위한 회복력 강화 사업	HDP-N[182] (성장형/3년)	마다가스카르	1,810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5-’27	말라위 잘레카 난민 캠프 생계활동을 통한 식량 위기 대응 및 공동체 강화사업	HDP-N (성장형/3년)	말라위	2,122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5-’27	부르키나파소 야드가 지역 분쟁 취약 인구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HDP-N 사업	HDP-N (성장형/3년)	부르키나파소	1,95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5-’27	우간다 오봉기 구 팔로잉야 난민 정착촌 및 수용공동체 주민들의 교육, 보호, 생계 통합적 지원을 통한 회복력 증진 사업	HDP-N (성장형/3년)	우간다	2,956
플랜 한국위원회	‘25-’27	짐바브웨 치레드지 지역 엘니뇨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및 기후스마트농업, 사회통합을 통한 회복력 증진 사업	HDP-N (성장형/3년)	짐바브웨	1,875
월드비전	‘25-’27	케냐 칼로베예이 정착촌 난민 및 수용공동체의 평화 기반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사업	HDP-N (성장형/3년)	케냐	1,905
굿피플 인터내셔널	‘25-’26	에티오피아 아셀라 지역사회기반 청년주도 평화구축 사업	HDP-N (진입형/2년)	에티오피아	275
밀알복지재단	‘25-’26	미얀마 카친주 내전 피해 실향민 및 호스트커뮤니티 청년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사업	HDP-N (진입형/2년)	미얀마	838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5	2025 레바논 남부 분쟁 피해 가구 생계 지원 및 아동보호를 통한 회복력 강화 사업	RAPID[183]	레바논	580

단체명	수행 연도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지역	총사업비
월드비전	‘25	2025 레바논 남부 분쟁취약지역 다목적현금지원사업	RAPID	레바논	58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5	2025 레바논 중부 분쟁 피해 IDPs 및 시리아 난민 대상 다목적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	RAPID	레바논	600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5	2025 요르단 제라시캠프 팔레스타인 난민 대상 중동 분쟁 대응 WASH, 생계지원사업	RAPID	요르단	6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5	2025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피해 대응 식수위생 긴급구호사업	RAPID	팔레스타인	628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5	2025 미얀마 신빵웨, 코핀 지역 긴급식량지원 사업	RAPID	미얀마	40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5	미얀마 식량 위기 대응 만달레이 주, 샨 주 식량 및 비식량 지원 사업	RAPID	미얀마	400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5	미얀마 마궤주 국내 실향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긴급 식량위기 대응 사업	RAPID	미얀마	400
월드비전	‘25	2025 미얀마 북부 식량위기지역 IDP 및 수용 공동체 대상 현금기반지원 사업	RAPID	미얀마	500

자료: 외교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외교부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음. 이후 2018년부터 사업의 주관기관이 외교부에서 KOICA로 이관되며 사업 방향 또한 CSO[184]의 인도적 지원 활동 지원에서 한국 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음.[185] 이에 따라 예산 형태도 2018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KOICA는 사업 공모, 수행기관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KOICA는 동 위탁 업무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 위탁하여

182) HDP-Nexus 사업은 장기화된 분쟁, 기근 등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여 인도적지원·개발·평화 활동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생존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됨. 사업 기간은 최대 3년임.

183) RAPID 사업(Respons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긴급재난대응사업)은 자연재해 등 긴급재난 발생 후 피해 주민의 고통 완화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1년 이내임.

184)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

185)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파트너십 연구보고서」, 19쪽

수행 중임. KCOC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간단체 간의 협의체로 약 13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동 용역이 사실상 KCOC에 의한 독점적 수행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음. KOICA는 동 용역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KCOC가 계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탁하여 수행 중임.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운영지원 용역 위탁 수행 현황 >

연번	위탁 기간	수탁기관	계약금액 (단위: 원)	계약 방법	긴급입찰 여부	입찰 참여 기관 수
1[1]	2018.06.01. ~2018.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480,000,000	공모 약정	x	단독
	2019.01.01. ~2019.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480,000,000			
	2020.01.01. ~2020.12.31. [2]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530,000,000			
2	2020.12.16. ~2022.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202,460,326	수의 계약	o	단독
3[3]	2023.04.11. ~2023.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316,232,452	수의 계약	o	단독
	2024.01.01. ~2024.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551,154,245			
	2025.01.01. ~2025.04.1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81,080,764			
4[4]	2025.05.16. ~2025.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054,569,060	수의 계약	o	단독
	2026.01.01. ~2026.12.31.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154,194,020			
	2027.01.01. ~2027.05.16.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50,325,591			

자료: 외교부

1) 2018.06.01.~2020.12.31. 다년도 용역 공모심사 이후 연차별 별도 약정 체결

2) ‘20.11월 최종 약정금 지급 후, ‘21년 상반기에 사업 결과보고와 약정금 정산 잔액을 반납 완료함

3) 2023.04.11.~2025.04.11. 장기계속계약(분쟁취약지원팀 소관. 출연금으로 계약금 집행)

4) 2025.05.16.~2027.05.16. 장기계속계약(인도지원실, 분쟁취약지원팀 소관.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계약금 집행)

KOICA는 이에 대하여 국내 인도적 지원 분야의 인프라적 한계로 인하여 KCOC가 단독으로 응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KCOC가 장기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용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성격의 과업들이 하나의 용역으로 묶여 발주되고 있어, 역량 있는 타 전문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존에 사업을 수행해 온 KCOC에 유리한 입찰 환경이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입찰의 경쟁성이 저하되고 특정 기관 중심의 수행 구조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운영지원 용역 위탁 범위 >

1)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HDP-NEXUS사업, 긴급재난대응/RAPID사업) 실행 및 운영지원 ㅇ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신규사업 공모 지원 ㅇ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정보 관리 ㅇ 인도적지원 긴급재난대응/RAPID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인도적지원 RAPID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ㅇ 인도적지원 HDP-NEXUS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2) 인도적지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ㅇ 인도적지원 파트너기관 대상 인도적지원 사업 직무 기초/심화 역량강화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평가 지원 ㅇ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ICT 기반 성과관리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개발 ㅇ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및 보고집 발간 ㅇ 인도적지원 만성재난지원사업(’22-’24) 종료평가 4) 인도적지원 생태계 활성화 지원 ㅇ 세계 인도주의의 날 공동 캠페인 기획 및 운영 ㅇ 인도적지원 정책 동향 및 지식 아카이빙 ㅇ 인도적지원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실행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 방식 또한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보임. 우선, 일반 입찰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동 용역은 '긴급입찰'로 추진되어 제출 마감일로부터 18일 전에 입찰 공고가 되는 되어 충분한 공고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86]은 긴급입찰 사유를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 타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불가피 등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동 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사업 발주 또한 연중(5월)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조직과 전담 인력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기존 수행기관(KCOC)과 달리 신규 기관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사업 수행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탁할 경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KOICA는 신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용역의 내용 및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0.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 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5년도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46억 4,900만원, 기타사업비(위탁) 3억 7,900만원, 보조금수익 약 6,827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약 500만원 등 총 51억 139만원임.

< 한·아프리카재단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입액 (B)	증감 (B-A)	비고
1. 정부출연금	4,649	4,649	-	
2. 기타사업비(위탁)	375	379	4	전년이월 포함
3. 보조금수익	68	68	-	
4. 자체수입	-	5	5	이자수입 등
계	**5,092**	**5,101**	**9**	

다. 지 출

202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정부출연금 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7억

1,800만원, 경상운영비 5억 8,200만원, 사업비 23억 4,900만원으로 총 46억 4,900만원이었으며, 그 중 4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하여 전체 집행률은 98.7%임. 기타사업비(위탁, 보조금)로 편성된 예산은 4억 4,700만원으로, 그 중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임.

<한·아프리카재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감	전년이월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A-B-C)	집행률(E=(B+C)/A)
1. 인건비	1,718	-	-	1,718	1,717	-	1	99.9
2. 경상운영비	582	-	-	582	578	-	3	99.4
3. 사업비	2,349	-	-	2,349	2,295	-	54	97.7
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764	-	-	764	758	-	6	99.2
나.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92	-	-	692	656	-	36	94.8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893	-	-	893	881	-	12	98.7
소 계	**4,649**	**-**	**-**	**4,649**	**4,591**	**-**	**58**	**98.7**
4. 기타사업비	-	443	4	447	418	27	2	93.5
가. 2024년 범부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	-	4	4	2	-	2	58.5
나. 2025년 범부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375	-	375	348	27	-	92.7
다.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아프리카 정책포럼	-	68	-	68	68	-	-	100
총 계	**4,649**	**443**	**4**	**5,096**	**5,009**	**27**	**60**	**98.3**

<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사업출연금 합계	**2,349**	**-**	**2,349**	**2,295**	**-**	**54**	**97.7**	**97.7**
1.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764**	**-**	**764**	**758**	**-**	**6**	**97.7**	**99.0**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20	22.5	142.5	141	-	1.5	117.6	99.0
1.2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444	0	444	443	-	1	99.7	99.7
1.3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200	△22.5	177.5	174	-	3.5	86.9	97.9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1,116**	**△424**	**692**	**656**	**-**	**36**	**58.8**	**94.8**
2.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208	0	208	200	-	8	96.2	96.2
2.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524	△404	120	118	-	2	22.5	98.3
2.3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Af-PRO)	56	△10	46	45	-	1	79.4	96.7
2.4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328	△10	318	293	-	25	89.4	92.2
3.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469**	**424**	**893**	**881**	**-**	**12**	**187.8**	**98.7**
3.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27	0	227	225	-	2	99.2	99.2
3.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 대화) 및 연구증진	242	0	242	235	-	7	97.0	97.0
3.3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24	424	421		3	-	99.4

라. 검토의견

1) 총괄

□ 감사 공석 장기화 및 이사회 구성 부실 문제 해결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동법 제19조[187]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2024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재단의 감사 공석에 따른 결산보고서상 감사의견서 미첨부[188]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가 국회에서 지적[189]이 있었으며, 재단의 2025년 결산보고서 역시 감사의견서가 미첨부[190]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감사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재단 비상근 감사 임명권자인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검사역을 임명하는 한편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노력”하겠다고 밝힌바[191] 있음.

---

187)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8) 한·아프리카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Ⅶ. 감사의견서 부분(55p)
- 감사의견서는 비상근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후임 감사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비상근 감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한·아프리카재단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89)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8.

190) 한·아프리카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Ⅶ. 감사의견서 부분(59p)
- 감사의견서는 비상근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후임 감사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비상근 감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한·아프리카재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재단은 2024년 1월 31일 비상근 감사 사직 이후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채, 2025회계연도 전 기간에 걸쳐 감사가 공석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2026년 8월 10일에서야 비상근 감사를 임명하여, 2025회계연도 전 기간 동안 정식 감사가 아닌 검사역 임명이라는 임시 방편으로 감사 기능을 대체하였음.

한편, 「한・아프리카재단법」[192] 및 동법 시행령[193], 재단 정관[194]은 재단 이사회 방식으로 상근이사(이사장 포함)와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임이사는 2026년 4월부터 공석이며, 당연직 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공석임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

---

191) 외교부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87p

192) **「한·아프리카재단법」**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93)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94) **「한·아프리카재단 정관」**
제5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사회 구성 현황】

직 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 사 장	김 영 채	'24.09.23~'27.09.22	前 주나이지리아대사
상임이사	- (공석)	-	
비상임이사	- (공석)	-	
당연직이사	이 제 훈	재직기간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정 광 용	재직기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또한 최근 3년 동안 재단의 이사회 개최 현황을 보면, 개최방식이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직 이사 중 기회예산처 심의관(現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이사장과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총 2인만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음.

< 최근 3개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회 개최 현황 >

연도	일시	개최방식	참석 당연직이사
2024	02.23.(금) ~ 02.29.(목)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04.15.(월) ~ 04.22.(월)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05.13.(월) ~ 05.20.(월)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10.28.(월) ~ 11.04.(월)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12.19.(목) ~ 12.26.(목)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연도	일시	개최방식	참석 당연직이사
2025	01.03.(금) ~ 01.10.(금)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02.07.(금) ~ 02.14.(금)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04.11.(금) ~ 04.18.(금)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12.16.(화)	대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2026	02.11.(월) ~ 02.23.(월)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03.12.(목) ~ 03.24.(화)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07.27.(월) ~ 07.31.(금)	서면	- 외교부 아중동국장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이러한 이사회 운영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구성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주요 정책 및 예·결산 등 중요 안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정밀한 심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재단의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인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정 결산 절차의 준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임명된 감사가 조속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석 중인 상임·비상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임명하며,

재단은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 방안 등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임직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철저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195]은 공무상 여행 시 누적 항공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승급 등에 활용하여야 하고,

여행 후 7일 이내에 신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출장관리부서에 신고하여 해당 부서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마일리지의 관리부서인 출장관리부서는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를 교육・감독하고, 반기별로 항공마일리지 활용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196]하고 있음.

---

195) **한・아프리카재단「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항공마일리지의 신고 및 적립) 재단 임・직원은 **공무상 여행 후 7일 이내에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출장관리부서에 신고**하고, **출장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역을 관리**한다.
제5조(항공마일리지의 활용) ① 공무상 여행과 관련한 항공권 예약자는 **예약시 출장자의 누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으로 우선 활용**한다.
②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1. 「여비지침」 별표 2의 비즈니스석 탑승 대상자는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되는 운임을 지급받고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좌석승급(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비지침」에도 불구하고 「여비지침」 별표 2의 이코노미석 탑승 대상자가 8시간(편도) 이상의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이코노미석 운임을 지급받고 비지니스석으로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
3. 재단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관리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상 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이사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196) **한・아프리카재단「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항공마일리지 관리부서인 출장관리부서는 재단 임·직원들의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를 교육·감독한다.
② 출장관리부서는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절차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조치가 미흡한 경우, 출장관리부서는 해당 직원에게 자료보완 및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장관리부서는 반기별로 항공마일리지 활용현황을 점검,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된 공무항공마일리지는 국가 예산지출에 따른 일종의 과실금이므로, 이를 사적용도가 아니라 공무상 여행에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국적 항공사의 경우 10년, 일부 외항사[197]의 경우 짧게는 1년 정도로 그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가 지남에 따른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너스항공권 및 좌석승급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임.

그러나 외교부의 2025년 산하기관 정기감사[198]에 따르면, 재단은 감사대상 기간(2023년 11월 ~ 2025년 10월) 중 공무항공마일리지 활용 실적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장 사전 결재문에 기존 보유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며,

출장 종료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신고, 기록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업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해 재단은 해당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2018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모든 출장 관련 항공마일리지를 전수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출장 건수 152건 중 32건(21.9%)에서 마일리지 누락 등[199]이 확인됨.

197) 카타르항공 유효기간: 1년, 에티하드항공 유효기간: 2년, 에미레이트항공 유효기간: 3년

198) 2025년 산하기관 정기감사 결과(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 감사관실, 2026.2.

199) 불일치(ERP시스템 등록자료와 증빙자료 값이 다른 경우): 7건
증빙없음(ERP시스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3건
ERP 누락(증빙자료는 있으나 ERP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건

다만 재단은 전 직원의 보유 마일리지(개인+공무 마일리지)가 적립 마일리지(ERP시스템 등록 마일리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임.

공무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미흡 및 활용 부진은 그간 여러 부처 및 기관에 대해 국회의 지적[200]이 반복되어 왔음.

이에 재단 역시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을 2020년 8월 28일에 제정하여 관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제정 당시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재단 설립등기일인 2018년 6월 12일 이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침의 존재와 별론으로, 공무항공마일리지의 관리과 미흡하고 그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침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재단은 임직원의 규정에 따른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마일리지 활용의 경우 공무상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승급으로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개인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활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완전 누락(ERP 시스템 등록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1건

200) 2008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09.9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6.

□ 아프리카 측 인사 초청 지원 관련 규정 마련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서 아프리카 현지 인사(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를 국내로 초청하여 항공권, 숙박비 등 실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 한·아프리카재단의 아프리카 측 인사 초청 실경비 현황>

사업명	항공권	숙박비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 2025 미래경제포럼	-	3,200,000원 (2인, 4박)
2.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2,382,200원 (이코노미 1인)	999,240원(3박)
2.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1,550,000원 (이코노미 1인)	713,430원(3박)
2.4. 아프리카주간 등 사회문화 인식 제고 - 아프리카영화제	7,025,316원 (이코노미 3인)	1,994,711원 (2인 각 4박 /1인 2박)
2.4. 아프리카주간 등 사회문화 인식 제고 -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13,881,600원 (이코노미 6인)	1,235,200원 (6인 3박)
3.2. 연례국제학술대회(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 서울아프리카대화	17,086,300원 - 비즈니스 2인: 15,840,100원 - 이코노미 1인: 1,246,200원	3,339,600원 (3인 각 3박)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그러나, 재단에 따르면 현재 초청대상자의 본국 정부 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확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내부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재 한·아프리카재단 「여비지침」은 재단 소속 임직원이 해외출장 중 외국정부·국제기구·초청기관 등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201]만 두고 있음.

즉, 재단은 자신이 경비를 받는 상황에는 중복 방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나, 자신이 경비를 지급하는 상황(초청인사)에는 동일한 통제 장치를 두지 않은 비대칭적 규정 체계를 갖고 있는 것임.

이는 국고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동일한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재정이 소요될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내부통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초청 인사 경비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① 중복지원 확인 절차, ② 중복 확인 시 공제 또는 조정 기준, ③ 확인 근거자료 보관 방법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201) **한·아프리카재단「여비지침」**
제27조(여비의 조정) ③ 외국정부, 국제연합기구 및 초청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행사장 관련 임차 예산 절감 노력 필요

2025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 결산자료 확인 결과, 행사 관련 임차비 총 집행액은 11건 113,614,086원이며, 이 중 호텔에서 사용한 금액이 5건 76,661,086원(전체의 67.5%), 호텔 외 장소에서 사용한 금액이 6건 36,953,000원(32.5%)으로 확인됨.

<2025년 한ㆍ아프리카재단 행사 중 호텔 내 개최 관련 현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임차비 집행액
연례국제학술대회(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 서울아프리카대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154,500,000원	148,853,706원	- (외교부 집행)
연례국제학술대회(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 2025 한-남아공 미래대화 *남아공 프리토리아 The Capital Menlyn Maine	22,000,000원	21,562,032원	7,702,486원
2025 미래경제포럼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00,000,000원	99,822,800원	56,855,000원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1~2차, 종합포럼) *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룸 * 엘타워 토파즈홀 * 코리아나호텔 크리스탈룸	68,818,000원	64,626,900원	2,139,600원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오리엔테이션) *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룸	375,000,000원	350,219,599원	1,050,000원
아프리카의 날 기념행사 *그랜드 하얏트 그랜드볼룸	37,000,000원	35,302,700원	- (외교부 집행)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국회의원회관/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리니치, 센트럴파크, 첼시, 유니온스퀘어)	120,000,000원	118,177,012원	8,914,000원

(자료: 한ㆍ아프리카재단)

호텔 임차비 76,661,086원 중 2025 미래경제포럼 1건이 56,855,000원으로 전체 호텔 임차비의 74.2%를 차지하는데, 관련하여 재단은 국내외 정부관계자·기업인·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참

석자 접근성, 행사장 수용규모, 제반시설, 의전·보안관리 용이성을 종합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수용 가능한 무료・저가 공공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그 불가피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소규모 워크숍・오리엔테이션류 행사의 호텔 사용의 경우 불가피성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음.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룸, 임차비 1,050,000원)에 대해 재단은 "해당 사업은 중기부 총괄사업으로 행사당일 중기부 주최 기업초청 연계행사가 근처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어 이동시간과 예산을 고려해 포시즌스호텔과 가까운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함"이라고 밝힘.

그러나 동일 사업(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회(임차비 2,750,000원)는 호텔이 아닌 장소[202]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업들 – 한-아프리카 유니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1,250,000원)[203]·성과공유회(1,250,000원)[204],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경진대회 오리엔테이션(1,650,000원)[205]·결선심사(0원)[206] – 은 모두 호텔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됨.

202) 엘타워 오페라홀

203) 엘타워 코러스홀

204) 엘타워 코러스홀

205) 재단 대회의실, 엘타워 오페라홀

206) 외교타운 12층 내 KNDA홀

즉 성격이 유사한 오리엔테이션·워크숍류 행사 4건 중 유독 1건(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만 호텔을 사용한 것으로, 재단 스스로 워크숍·오리엔테이션류 행사가 호텔 없이도 정상 수행 가능함을 다른 사업에서 입증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 건의 호텔 사용 필요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7]은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와 관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행사장 선정에서 공공시설 우선 검토가 원칙임을 보여줌.

따라서 향후 재단은 행사장 선정에 있어 공공기관의 시설 임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20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26

2)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 협력 지원

□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 기업 선정 필요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사업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아프리카 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발굴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아프리카 시장조사, 현지 기업들과의 비즈매칭, 유명 현지 전시회 참가를 포함한 對아프리카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임.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계획 수립	⇨	공고 및 기업모집	⇨	심사평가	⇨	선발결과 통보
3월		4.1~4.25		4.28~4.30		5.2

⇨	1차 오리엔테이션	⇨	2차 오리엔테이션	⇨	전시회, 시장조사	⇨	사후조치 및 홍보
	5.8		5.19		6.9~6.12		6~9월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2025년의 경우 스낵, 면류, 음료 등 총 10개 식품기업을 선정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아프리카푸드쇼(Afica Food Show 2025) 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하였음.

재단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당 항공권 1인, 한국관 부스 참가/임차비, 한국관 구축비 등 기업당 약 1,200만원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달리,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선정된 지원기업 10곳 중 4곳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었음.

< 2025년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강화 사업 지원 기업 현황 >

연번	기업명	기업 구분
1	주식회사 소원컴퍼니	중소기업
2	㈜오픈소스랩	중소기업
3	(주)오리온	중견기업[208]
4	농심	중견기업, 준대기업
5	지엘	중소기업
6	주식회사 키자미테이블	중소기업
7	주식회사 일화	중견기업
8	대상주식회사	중견기업
9	신송식품㈜	중소기업
10	피엠더블유글로벌㈜	중소기업

(자료: 한 · 아프리카재단)

이는 자금력과 해외 판로 개척 역량을 상대적으로 갖춘 중견기업에게 지원 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비교표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준대기업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정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공정위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정자산총액: 5조원 이상[209](공정거래위원회 매년 지정)
공시 의무	일반 기업공시 기준 적용	일반 기업공시 기준 적용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주요 규제 및 혜택	- 조세 ·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 중소기업 지원 종료 및 유예기간 적용 - R&D 수출 중심 선별적 지원	-내부거래 공시 및 상호출자 제한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자료: 법령 기준 재작성)

208) 2026년 준대기업으로 신규 지정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시장은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선발하여 선도기업의 시장개척 효과가 중소기업의 후속진출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부 참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면서 준대기업에 속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선정이 향후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재단은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검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9) 공정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시 대기업으로 상위 분류되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됨.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210]에 따라 설치되어 재단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수 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재원[211]은 국제교류기여금[212],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운용 수

---

2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 제>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익금으로 조성됨.

2025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059억 8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108.9% 수준인 1,153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5,908**	**115,345**	**115,345**	**108.9**	**-**	**-**
자체수입	59,713	65,187	65,187	109.2	-	-
정부내부수입	335	-	-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45,860	50,158	50,158	109.4	-	-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초과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의 증가에 있으며, 자체수입[213](국제교류기여금, 기부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계획 대비 109.2% 수준인 651억 8,700만원이 수납되었음. 특히 자체수입 중 기부수입(민간출연금)이 당초계획액 20억 1,300만원 대비 559.3%에 해당하는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13) 자체수입액

구분	내용	금액
국제교류기여금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모금(법정부담금)	495억 6,550만원
기부수입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	112억 5,850만원
이자수입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	36억 7,600만원
기타 잡수입	재단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판매대, 구독료 및 행사 관련 지원금 환입액 등	6억 8,700만원
합 계		651억 8,700만원

112억 5,800만원으로 증가[214]하면서, 자체수입 초과의 주된 요인이 되었음.

재단은 2022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따른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발생하지 않음.

나. 지 출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1,153억 4,5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8.9%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516억 1,100만원으로 계획대비 121.8%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215](기관운영 경비)는 145억 9,800만원으로 계획대비 99.5%를 집행하였음.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5,908	115,514	115,345	108.9	-	20,124
사업비	42,363	51,969	51,611	121.8	-	358
기금운영비	14,665	14,665	14,598	99.5	-	67
정부내부지출[216]	19,699	19,699	-	-	-	19,699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여유자금운용	29,181	29,181	49,136	168.4	-	-

여유자금 운용액은 491억 3,600만원으로 계획액 291억 8,100만원 대비

214) 한국 체어 설치 및 운영 사업($1,450,000) 등 총 23건, $7,726,220 규모의 기부 수입 발생

215) 기금운영비 : 임직원 인건비,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216) 동 지출항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임.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재단의 기금적립금 상황을 고려하여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 예탁금액을 편성함. 단, 실제 예탁계획 제출 시 기금 상황에 따라 예탁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168.4%를 집행하였음. 집행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산 운용 수익 호조[217]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에 따라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증액에 의한 것임.

다. 기금 재정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5년도 자산은 886억 7,100만원으로 전년 889억 9,200만원 대비 3억 2,100만원(△0.4%)이 감소하였음. 자산 감소의 주요인은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기금 재정상태[218]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증감액(A-B)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A-B)/B
자산[219]	88,671	88,992	(321)	(0.4 %)
부채[220]	360	238	123	51.6%
순자산[221]	88,310	88,754	(444)	(0.5 %)

2025년도 부채는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800만원 대비 123백만원(51.6%)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미지급금[222]이 증

217) '25년도 말 기준 기금 자산운용 수익률은 6.97%

218)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4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재정상태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같은 것이며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219) 자산(Assets)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20) 부채(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됨.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21) 순자산(net assets)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가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순자산은 88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887억 5,400만원 대비 4억 4,400만원(△0.5%)이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는 재정운영결과(손실)에 따른 것임.

라. 재정운영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5년도 프로그램 순원가[223]는 전년도 913억 400만원 대비 293억 9,700만원이 감소(△32.2%)한 619억 700만원이었고, 감소 사유는 지정기부금운영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임.

< 기금 재정운영[224]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금 액(A-B)	증감 비율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61,907	91,304	(29,397)	(32.2 %)
Ⅱ.관리운영비	4,748	4,998	(250)	(5.0 %)
Ⅲ.비배분비용	4	9	(5)	(55.6 %)
Ⅳ.비배분수익	5,674	6,945	(1,271)	(18.3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60,984	89,365	(28,381)	(31.8 %)
Ⅵ.비교환수익 등	60,540	96,192	(35,652)	(37.1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444	(6,827)	7,271	106.5 %

222) 법인카드는 당월 사용분이 익월 15일에 결제되므로, 12월 사용분은 익년 1월 15일에 결제되며, 이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됨. 당해 연도 12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미지급금 역시 소폭 증가한 것임.

223) **「원가계산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4호,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2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관리운영비[225]는 전년도 49억 9,8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소(△5.0%)한 47억 4,800만원이었고, 감소 사유는 예산 절감 노력에 따른 것임.

비배분비용[226]은 전년도 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소(△55.6%)한 400만원이었고, 감소 사유는 외화평가손실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비배분수익[227]은 전년도 69억 4,500만원 대비 12억 7,100만원이 감소(△18.3%)한 56억 7,400만원으로, 이는 투자증권처분이익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비교환수익[228]은 전년도 961억 9,200만원 대비 356억 5,200만원이 감소(△37.1%)한 605억 4,000만원으로, 국제교류기여금(부담금) 수입 등이 전년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8억 2,700만원 대비 △72억 7,100만원 감소한 △4억 4,400만원임.

---

225)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그 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여비 등

226)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227)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 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228)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59
비교환수익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함.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마. 주요사업 개관

재단의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협력강화」, 「지정기부금 운영」, 「국제교류정보화」로, 총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총 계획액 1,059억 8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외교행정지원 계획액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제외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액은 423억 6,300만원이고, 이 중 계획액의 121.8%에 해당하는 516억 1,100만원이 집행됨.

주요사업 계획액 집행내역(총액 대비 비율)은 인적교류 및 정책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 154억 5,300만원(29.9%), 한국학 기반 확대 및 한국 전문가 육성 등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 151억 7,400만원(29.4%), 「지정기부금 운영」 사업 112억 5,800만원(21.8%),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 69억 5,900만원(13.5%), 「국제교류정보화」 사업 27억 6,600만원(5.4%) 순으로 각각 지출되었음.

< 국제교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A)	결산(B)	B/A	
계			81,013	42,363	51,611	121.8	38,017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81,013	42,363	51,611	121.8	38,017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7,738	14,773	15,174	102.7	13,505
		[401] 한국학기반확대	17,738	14,773	15,174	102.7	13,505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20,276	15,339	15,453	100.7	14,269
		[401] 글로벌인적교류	3,996	2,200	2,428	110.4	2,191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10,627	7,343	8,546	116.4	6,570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1,219	1,342	1,075	80.1	1,275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434	4,454	3,404	76.4	4,233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9,804	7,683	6,959	90.6	7,107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5,413	3,765	3,641	96.7	3,443
		[402] 글로벌문화교류	4,391	3,918	3,318	84.7	3,664
	[2635] 지정기부금운영		30,383	1,802	11,258	624.8	370
		[401] 지정기부사업	30,383	1,802	11,258	624.8	370
	[2636] 국제교류정보화		2,812	2,766	2,766	100.0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812	2,766	2,766	100.0	2,766

□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결산 심사 및 향후 기금 운용·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국제교류기금은 2024년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인하·면제 이후 수입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재단의 중장기 재정추계에서도 현행 단가 유지 시 2031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모금액 단가 조정 등 수입확충과 KF아세안문화원의 일반회계 이관 등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번 1번)

□ 둘째, 민간출연금은 2025년 당초 계획액 20억 1,300만원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112억 5,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다년도 협약에 따라 사전에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도 있었으므로, 확인 가능한 협약상 납부예정액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여 민간출연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연번 2번)

□ 셋째, 「글로벌인적교류」의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은 외교부의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과 해외 주요인사를 국내에 초청하여 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정책목적과 추진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와 재단은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5번)

□ 넷째, 「KF글로벌챌린저」는 최근 3년간 전체 파견자 78명 중 북미와 유럽 지역이 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아시아 지역은 2명에 그쳤으므로, 중국·일본·중앙아시아 등의 정책연구소·박물관·도서관 및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등 신규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실제 파견으로 연계하는 등 파견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연번 6번)

□ 다섯째, 「기타운영비」의 상용임금은 실제 소요보다 적게 편성한 뒤 보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연도 중 반복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일부 변경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실제 지급단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상용임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연번 9번)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국제교류기금	총 괄 (수 입)	-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고갈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면제 등에 따른 기금 수입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모금액 단가 조정 등 수입확충과 KF 아세안문화원의 일반회계 이관 등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	'23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		민간출연금 (수 입)	2,013	민간출연금 수입 계획의 연례적 과소 편성 개선 필요	재단은 신규·단년도 기부금과 다년도 협약에 따라 납부예정액이 확인되는 기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확인 가능한 협약상 납부예정액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여 민간출연금의 연례적 과소 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		총 괄 (지 출)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용역비 및 이전비의 적정 비목 집행 필요	재단은 보조인력 일급,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채용, 시설·전산 유지관리 용역비 및 인사발령 관련 이전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고 지출 성질에 맞는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며, 외교부는 재단의 비목 편성·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한국학 기반확대	14,773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자체 변경 추진 유의	재단은 추진 필요성이 사전에 확인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요액에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중단·축소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을 연도 중 자체변경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3년 시정요구 (주의)
5		글로벌 인적교류	2,200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과 KF「해외유력인사 초청」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필요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유력인사 초청'과 외교부의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은 개선을 검토하여 유사한 초청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할 것	
6				아시아 지역 파견 확대 등 KF 글로벌 챌린저 파견지역 다변화 필요	재단은 아시아 지역 파견이 축소된 원인을 점검하고, 중국·일본·중앙아시아 등의 정책연구소·박물관·도서관 및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등 신규 협력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실제 인턴 파견으로 연계함으로써 KF 글로벌챌린저의 파견지역을 다변화할 것	'24·25년 예산안 지적사항 (외통위)
7		글로벌 협력 강화	4,454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레지던트 펠로의 역할 수행 내실화 및 한국어 학습비 지원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재단은 레지던트 펠로가 단순한 연락·지원 기능을 넘어 자국의 정책수요와 현지 여건을 바탕으로 신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제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도록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국어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 평가 등 합리적인 성과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펠로별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8		한국문화 해외확산	3,765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 참가자 중복 선발 최소화 필요	재단은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 참가자 선정 시 과거 참가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참가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일인을 재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심사자료에 명시하여 참가자의 중복 선발을 최소화할 것	
9		기타운영비	3,597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준수 및 상용임금의 연례적 과소 편성 개선 필요	재단은 상용임금과 관련한 비목 간 또는 프로그램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실제 지급단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상용임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연례적 과소편성과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 검토의견

가. 수 입

1) 총 괄

□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고갈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법정부담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여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2025년 결산 기준 총수입의 43.0%, 2026년 계획 기준 총수입의 4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수입원임.

<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결산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계획
	계 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	**105,908**	**115,514**	**115,345**	**99.9**	**135,806**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730	2,730	3,676	134.7	2,730
기타경상이전수입	56,483	66,089	60,824	92.0	65,798
법정부담금	**54,470 (51.4%)**	**54,470 (47.2%)**	**49,565 (43.0%)**	**91.0**	**63,785 (47.0%)**
민간출연금	2,013	11,619	11,258	96.9	2,013
잡수입	500	500	687	137.5	500
정부예금회수	45,860 (43.3%)	45,860 (39.7%)	50,158 (43.4%)	109.4	45,860 (33.8%)
예탁원금회수	-	-	-	-	19,699
예탁이자수입	335	335	-	-	1,21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런데 코로나19 시기(2020~2022)의 부담금 부과 건수는 평균 127만 건(60~196만 건)으로 2019년 414만 건 대비 약 69.3% 감소하였고, 이후 2024년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229]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단가)이 인하·면제됨에 따라 향후 부담금 수입액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재단은 2026년도의 경우 2016년 대규모 여권 발급분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 수요 증가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2025년 대비 28.7% 증가(495억 6,500만원→637억 8,500만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230], 이는 일시적인 여권 갱신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면제에 따른 중장기적 수입 기반 약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 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

(단위: 만 건,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건 수	364	457	428	414	124	60	196	463	518	425	553
금 액	51,661	64,883	60,998	59,421	18,087	8,966	28,924	67,528	68,313	49,565	63,78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29) 2024년 3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 추진

230) 2026년 부과징수계획: 63,785백만원
- 10년 복수여권: 12천원×4,676,392건=56,117백만원
- 5년 복수여권: 9천원×852,032건=7,668백만원

<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대상 및 모금액 >

대 상	모 금 액			
	시행령 개정 전		시행령 개정 후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복수여권 10년	15,000원	미화 15불	12,000원	미화 12불
복수여권 5년	12,000원	미화 12불	9,000원	미화 9불
단 수 여 권	5,000원	미화 5불	면 제	
여행증명서	2,000원	미화 2불	면 제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2024.7.1.시행) 제5조제1항 [별표 1])

한편, 국제교류기금은 주요 수입원인 법정부담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지속되어 기금사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 재원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게 되고, 향후 적립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코로나19로 부담금 수입이 급감한 2020~2022년에는 기금 수입이 지출을 크게 밑돌면서 적립금이 2019년 1,863억 3,900만원에서 2022년 724억 7,100만원으로 61.1%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교류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수입	76,811	67,215	64,372	24,326	16,993	30,855	70,449	71,175	53,928	67,015
지출	49,581	57,415	65,556	55,886	62,421	65,564	68,704	65,261	54,950	52,750
적립금	**176,218**	**183,631**	**186,339**	**154,540**	**108,382**	**72,471**	**68,396**	**76,369**	**76,932**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와 같은 적립금 감소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단은 2023년 2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 감소가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사업비 증가율 시나리오에 따라 2028~2029년경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또한, 감사원도 2023년 3~4월 감사 과정에서 재단의 검토내용을 외부 전문인력 등의 자문을 거쳐 재검토하였는데, 기존 사업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후 교류재단은 2025년 3월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인하·면제와 재단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24년 687억 700만원→'25년 570억 2,800만원, △116억 7,900만원, △17.0%)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 추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하·면제된 모금액 단가를 유지하는 경우 2031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립금 고갈 예상 시점을 다소 늦출 수는 있으나, 물가상승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수입 기반 약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적립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검토 및 연구용역 결과 >

구 분	시나리오	적립금 잔액	고갈시점
교류재단 자체검토	순사업비 연 3.87% 증가	2029년 △253억원	**2029년**
	순사업비 연 4.46% 증가	2028년 △49억원	**2028년**

구 분	시나리오	적립금 잔액	고갈시점
감사원 재검토	사업 확장 지속	2030년 △230억원	**2030년**
	사업비 2023년 수준 동결	2032년 527억원까지 감소 후 증가 전망	고갈 없음
	사업비 △10%	2024년 896억원부터 증가 전망	고갈 없음
	사업비 △5%	2024년 868억원부터 증가 전망	고갈 없음
	사업비 △2.5%	2028년 817억원까지 감소 후 증가 전망	고갈 없음
연구용역	모금액 현행 단가 유지	2028년 964억원까지 증가 후 2031년 △28억원으로 감소	**2031년**
	2027년부터 복수여권 10년 15,000원, 5년 12,000원	2029년 1,386억원까지 증가 후 2036년 △165억원으로 감소	**2036년**
	2027년부터 복수여권 10년 20,000원, 5년 15,000원	2029년 2,124억원까지 증가 후 2044년 △167억원으로 감소	**2044년**
	2027년부터 복수여권 10년 25,000원, 5년 15,000원	2039년 4,347억원까지 증가 후 2048년 1,586억원 보유 전망	고갈 없음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 적립금 잔액 전망은 각 검토·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고갈연도 잔액, 적립금 감소 후 증가 전환 시점의 잔액 또는 분석 종료연도 잔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따라서 교류기금 적립금 고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이후의 수입기반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기금의 부담금 정비 이후 ① (수입) 폐지한 부담금을 다시 제도화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하거나, ② (지출) 부담금에 의존하던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경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2025년 1월 1일 폐지되었으나, 같은 해 3월 2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도입되었으며, 특히 법 개정 전에는 법률상 부과금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부과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개정법(3.25.)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부과금의 징수 근거와 부과수준을 명확히 하였음[231].

② 외교부 소관 타 기금이었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국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항공권에 포함하여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기금 폐지와 함께 해당 부담금도 폐지되었음. 다만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세부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음.[232]

< 부담금 정비 현황 >

구 분	국제교류기여금 (외교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문체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외교부)
조정내용	3,000원 인하	3% 부과금 폐지	1,000원 납부금 폐지
현 황	**별도 보전대책 미흡, 기금 고갈 전망**	**법적 정상화 및 부담금 재도입 (2025.3.25.)**	**일반회계 전면 전환 (2026)**
규 모	30% 축소	기존 규모 유지	기존 규모 유지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재단은 2026년 3월부터 '사업구조 재설계를 위한 KF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응책을 모색하고, ① 수입 측면에서 타 기금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기적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

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2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각각 1만원 및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에 따라 공항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었음. 이후 기금 수입 감소로 관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관광융자사업의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자, 공항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상향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5일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정을 통해 10년 복수여권의 모금액 단가를 기존과 같이 15,000원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15,000원의 모금액 상한선을 개정하여 한도를 상향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제교류기여금 인상은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던 정책 방향과 상충할 수 있는바, 단순히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성과 정책적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입 확충 외에도 ② 국제교류기금이 부담하는 사업 중 일반회계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별함으로써 기금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문화교류」의 「KF아세안문화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KF아세안문화원」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사업으로서 2017년 9월 개원한 이후 아세안 관련 전시·공연·행사, 이해교육 및 디지털 문화체험존 운영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상호이해 증진과 외교적 관계 강화에 기여해 왔음.

다만, 2024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이 해외 한국학 지원이나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 등과 달리, 비영리기관의 기금을 활용하여 학문적 순수성이나 권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일반회계도 적절히 추진할 수 있는 위탁형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회계 이관을 권고하였음.[233]

233) 2024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 4., p.211

또한,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도 「KF아세안문화원」 사업은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에 따른 외교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34)]

따라서 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단가 조정 등 수입 확충 방안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KF아세안문화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기금 부담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세안 관련 공공외교 사업의 정책목표, 사업주체, 운영방식 및 성과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34)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24. 11., p.245~246

2) 민간출연금

□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의 연례적 과소 편성 개선 필요

민간출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임.

2025회계연도 민간출연금은 당초 2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중 민간기부금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96억 6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수정계획액은 116억 1,9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112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민간출연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2,013	11,619	9,606	11,619	11,258	11,258	-	-	2,01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출연금은 민간의 자발적·임의적 출연에 의존하는 수입으로서, 기부자의 의사, 기부 목적, 협약 체결 및 납부 시점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수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출연금의 연도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은 매년 20억 1,3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반면, 실제 수납액은 각각 68억 1,100만원, 89억 7,000만원, 302억 1,800만원, 112억 5,800만원으로 매년 당초계획액을 크게 상회하였음.

< 민간출연금 연도별 결산 내역(2021～2025) >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1	2,013	2,013	-	2,013	1,779	1,779	88.4	100.0
2022	2,013	7,681	5,668	7,681	6,811	6,811	88.7	100.0
2023	2,013	10,952	8,939	10,952	8,970	8,970	81.9	100.0
2024	2,013	30,690	28,677	30,690	30,218	30,218	98.5	100.0
2025	2,013	11,619	9,606	11,619	11,258	11,258	96.9	10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당초 계획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에도 재단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과거 수납실적과 협약에 따른 납부예정액 등 민간출연금의 수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규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재단이 제출한 2025년도 지정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출연금 중 상당 부분은 2025년 중 새롭게 발생한 불확정 기부금이 아니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다년도 협약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납부금액이 확인 가능했던 기부금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25년 지정기부 내역 23건 중 13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중 체결된 다년도 협약에 따라 2025년 납부예정액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규모는 총 458만 달러임. 이는 전체 지정기부 수납액 772만 6,220달러의 59.3%에 해당하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적용된 원/달러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63억 2,040만원 규모임. 그러나

2025회계연도 민간출연금 당초 계획액은 20억 1,300만원으로, 협약상 확인 가능했던 납부예정액의 31.8%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미 체결된 다년도 협약에 따른 납부예정액을 당초 수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5년도 지정기부금 내역 >

구 분	협약유형	기부금액 (당해연도)	수혜처
1	다년(2021~2025년)	$200,000	미국 코넬대
2	다년(2021~2030년)	$300,000	미국 브라운대
3	다년(2022~2026년)	$60,000	미국 브라운대
4	다년(2022~2025년)	$500,000	미국 코넬대
5	다년(2022 · 2024 · 2025년)	$50,000	미국 예일대
6	다년(2022~2025년)	$200,000	미국 CSIS
7	다년(2023~2027년)	$200,000	미국 하버드대
8	다년(2023~2025년)	$1,000,000	미국 스탠포드대
9	다년(2023~2027년)	$120,000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10	다년(2024~2025년)	$70,000	미국 콘코디아 언어마을
11	다년(2024~2026년)	$330,000	미국 예일대
12	다년(2024~2027년)	$100,000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13	다년(2024~2027년)	$1,450,000	영국 IISS
소 계		$4,580,000	
14	다년(2025~2027년)	$1,000,000	미국 브라운대
15	다년(2025~2028년)	$250,000	미국 브라운대
16	다년(2025~2028년)	$250,000	미국 브라운대
17	다년(2025~2030년)	$20,000	미국 브라운대
18	단년	$140,735	미국 하버드대
19	단년	$400,000	미국 콘코디아 언어마을
20	단년	$200,000	미국 콘코디아 언어마을
21	단년	$200,000	미국 콘코디아 언어마을
22	단년	$5,000	미국 뉴욕대
23	다년(2025~2034년)	$680,485	미국 시카고대
소 계		$3,146,220	
총 계		$7,726,22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이 과소하게 편성될 경우 이에 연계된 지정기부사업의 지출 규모 역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235], 그 결과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단계에서 지정기부사업의 재원 규모와 활용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단은 신규·단년도 기부금 등 사전 예측이 곤란한 기부금과 다년도 협약에 따라 납부예정액이 확인되는 기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확인 가능한 협약상 납부예정액이 당초 수입계획에 누락되어 민간출연금이 과소 편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35) 민간출연금과 지정기부사업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기부신청 → 기부금품심의위원회 개최 → 3자 협약 체결(재단·기부자·수혜처) → 기부금품 수령 → 지정된 국제교류 사업비로 활용 → 결과보고의 절차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음.

나. 지 출

1) 총 괄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용역비 및 이전비의 적정 비목 집행 필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세출과목을 지출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비목별 집행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비목임.

반면,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금(110-04목),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비품 등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의 집행대상에 해당함. 또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 청사 시설관리, 장비 유지관리 및 전산 운영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목)의 집행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음. 아울러 인사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이전 관련 비용은 국내여비(220-01목)로 집행할 대상임.

< 비목별 비교표 >

비 목	세부내역	
일반수용비 (210-01목)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공고료 및 광고료 -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일용임금 (110-04목)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일반용역비 (210-14목)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210-15목)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국내여비 (220-01목)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 여비 -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재단은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지출 과정에서 일용임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및 국내여비 성격의 경비 총 48건, 1억 5,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5년도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내 용	건 수	집행액	적정비목
인건비성 경비	보조인력 일급	12	24	일용임금 (110-04)
시설 · 장비 수리 · 보수	비상발전기 부속품 및 항온항습기 수리 바닥타일 · 배관 · 전시실 진열장 보수	6	2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일반업무 대행용역	신입직원 채용 대행용역	2	54	일반용역비 (210-14)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내 용	건 수	집행액	적정비목
시설 · 전산 유지관리 용역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및 웹페이지 유지보수 실내 플랜테리어 조경 유지관리	24	18	관리용역비 (210-15)
인사이동 이전비	인사발령자 이사 위탁용역	4	37	국내여비 (220-01)
합 계		**48**	**15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인건비성 경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재단은 2025회계연도 중 한국학사업부, 전략기획부 및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의 보조인력 활용에 따른 일급 12건, 2,383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보조인력 일급 내역 >

(단위: 명, 건, 만원)

구 분	기 간	세부내역	인 원	건 수	집행액
한국학사업부	1~2월	1분기 보조인력 일급	1	2	409
전략기획부	1~3월	1분기 보조인력 일급	1	3	396
	4~5월	2분기 보조인력 일급	1	2	445
글로벌네트워크 사업부	4~6월	2분기 보조인력 일급	1	3	459
	10~12월	4분기 보조인력 일급	1	2	674
합 계			**5**	**12**	**2,38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단은 이에 대해 사업비 내 일용임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수용비의 집행대상 중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일용임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력 활용에 따른 보수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 집행내용을 보더라도 재단은 보조인력 채용 시 직접고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인력은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동 지출은 외부에 특정 업무를 소규모로 대행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수용비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와는 성격이 구분되며, 일용임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출의 성격에 부합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보조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인력 수요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일용임금 등 적정 비목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재단은 2025회계연도 중 아세안문화원 및 KF본부의 시설·장비 수리·보수비 6건, 1,962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시설·장비 수리·보수 내역 >

(단위: 건, 만원)

구 분	세부내역	건 수	집행액
경영관리부	KF본부 수장고 항온항습기 수리	1	173
아세안문화원사무국	바닥타일 보수	2	971
	비상발전기 부속품 수리	1	238
	세면기 하부 배관 교체	1	234
	상설전시실 진열장 하자보수	1	346
합 계		**6**	**1,962**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단은 이에 대해 해당 지출이 일반수용비의 집행대상 중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출은 책상·의자 등 사무용 비품의 소규모 수선이라기보다, 바닥타일·세면기 하부 배관 등 건축설비의 보수, 비상발전기·항온항습기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상설전시실 진열장 등 전시시설의 하자보수에 해당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KF본부 수장고 및 아세안문화원 상설전시실 등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에 직접 활용되는 공간의 수리·보수 수요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다. 채용 대행용역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재단은 2025회계연도 중 신입직원 채용 대행용역비 2건, 5,418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채용 대행용역 내역 >

(단위: 건, 만원)

구 분	세부내역	건 수	집행액
경영관리부	202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신입직원 채용 대행용역 1차 선금	1	4,387
	202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신입직원 채용 대행용역 2차 잔금	1	1,031
합 계		**2**	**5,418**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지출은 신입직원 채용절차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대행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단순 수수료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와는 성격이 구분됨.

구체적으로 채용 대행용역은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전형 운영 등 채용절차 전반을 일정한 과업 범위와 산출물을 전제로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일반업무 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일반용역비 집행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신입직원 채용 대행 등 전문업체를 통한 일반업무 대행 수요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일반용역비로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라. 시설·전산 유지관리 용역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재단은 2025회계연도 중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및 웹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와 아세안문화원 실내 플랜테리어 조경 유지관리비 등 총 24건, 1,8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시설·전산 유지관리 용역 내역 >

(단위: 건, 만원)

구 분	세부내역	건 수	집행액
커뮤니케이션부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및 웹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1~12월)	12	1,122
아세안문화원사무국	아세안문화원 실내 플랜테리어 조경 유지관리비(1~12월)	12	698
합 계		**24**	**1,82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지출은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및 웹페이지와 아세안문화원 실내 플랜테리어 조경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반복적으로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에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임. 집행지침상 관리용역비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동 지출은 단순 수수료나 일회성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가 아니라 관리용역비 집행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및 웹페이지 유지보수, 실내 조경 등 시설·전산 유지관리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리용역비로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마. 인사발령 관련 국내 이전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재단은 2025회계연도 중 인사발령자 이사 위탁용역비 4건, 3,741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인사발령자 이사 위탁용역 내역 >

(단위: 건, 만원)

구 분	세부내역	건 수	집행액
경영관리부	인사발령자, 복직자 및 지역 간 전보 직원 이사 위탁용역비(상반기)	2	2,540
	인사발령자 이사 위탁용역비(하반기)	2	1,201
합 계		**4**	**3,741**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단은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비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동 규정은 여비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국내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236]

한편, 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물품 보관·운송료,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상하차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보관·운송 관련 경비를 의미함. 반면, 동 지출은 인사발령 또는 복직 등에 따라 직원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재단 「여비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이전비 관련 경비에 해당함.

따라서 재단은 향후 인사발령자 이사비 등 국내 이전 관련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국내여비로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재단은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집행 과정에서 보조인력 일급, 시설·장비 수리·보수비, 채용 대행용역비, 시설·전산 유지관리 용역비, 인사발령 관련 국내 이전비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

---

236) **한국국제교류재단 「여비규정」**

제19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①**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

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일용임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및 국내여비 등을 일반수용비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출의 성질에 맞게 지출과목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따라서 재단은 향후 일반수용비가 타 비목 성격의 경비를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별 지출 성질에 맞는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외교부는 재단의 비목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한국학진흥

「글로벌한국학진흥」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학기반확대」는 해외대학의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장기적인 한국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 지원과 방한 연구·연수 등을 통해 차세대 한국 연구자 및 지한(知韓) 인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액은 147억 7,3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152억 800만원이고, 151억 7,400만원이 집행됨.

< 글로벌한국학진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경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한국학기반확대	14,773	15,208	-	435	-	15,208	15,174	-	34	13,505
계	**14,773**	**15,208**	**-**	**435**	**-**	**15,208**	**15,174**	**-**	**34**	**13,50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자체변경 추진 유의

2025년도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한국학 강좌운영」 내역사업에는 교수직 설치, 현지교원고용지원, 객원교수 파견, 한국학 온라인강의 및 공통경비가 편성되었고, 「한국 전문가육성」 내역사업에는 대학원생 장학지원과 박사후과정·한국어·외교관공무원·방한연구 펠로십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재단은 2025년 4월 KF 글로벌 e-스쿨 사업 축소와 한국어펠로십 사업 중단 등을 이유로 자체변경을 실시하면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한국학포럼 및 전문가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획사업의 소요를 반영하였음. 같은 해 7월에도 객원교수 파견사업 일몰 및 국내외 펠로십 규모 축소 등을 통해 기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재단은 「한국학 강좌운영」 내역사업에서 '한국학 네트워크 강화' 사업 6건에 10억 4,100만원을, '한국 전문가육성' 내역사업에서 '한국전문가 네트워크강화' 사업 3건에 1억 6,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집행규모	집행액
한국학 강좌운영	교수직 설치	29개교	5,706
	현지교원고용지원	8개교	434
	객원교수 파견	21명	670
	한국학 온라인강의(KF 글로벌 e-스쿨)	186개교	4,850
	한국학 네트워크 강화	**6건**	**1,041**
	소 계		12,701
한국 전문가육성	대학원생 장학지원	147명	1,167
	박사후과정펠로십	18명	514
	한국어펠로십(IUC)	29명	151
	외교관 · 공무원펠로십	17명	255
	방한연구펠로십	14명	223
	한국전문가 네트워크강화	**3건**	**163**
	소 계		2,47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회계연도 중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재단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두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2025년 1월에 수립한 부서별 업무계획에는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음. 한국학사업부는 미국 중서부·런던·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지역의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산·관·학 협력 한국학 포럼과 국내외 한국어·한국학 학회 협력사업을, 펠로십사업부는 하노이 한국학 포럼과 LA·베이징 해외사무소 수혜자 워크숍 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하였음.

이처럼 재단은 두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추진계획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채, KF 글로벌 e-스쿨과 한국어펠로십 등 기존 사업의 중단·축소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잔여재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 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시부터 세부 산출내역 명시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단은 추진 필요성이 사전에 확인된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액을 충실히 반영하고,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도 중 자체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협력네트워킹

「국제협력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인적교류」는 「해외유력인사 초청」을 통해 각국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 및 지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차세대지도자교류」를 통해 미래 지도층 청년과의 상호 교류로 양국 간 우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책공공외교강화」는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을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를 통해 한미 동맹 발전과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외교 기반확대」는 「국민공공외교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글로벌 협력강화」는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을 통해 對중앙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외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액은 153억 3,9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155억 6,800만원이고, 154억 5,300만원이 집행됨.

< 국제협력네트워킹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경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글로벌 인적교류	2,200	2,439	-	239	-	2,439	2,428	-	11	2,191
정책공공외교강화	7,343	8,565	-	1,222	-	8,565	8,546	-	19	6,570
공공외교 기반확대	1,342	1,114	-	△228	-	1,114	1,075	-	39	1,275
글로벌 협력강화	4,454	3,450	-	△1,004	-	3,450	3,404	-	46	4,233
계	15,339	15,568	-	229	-	15,568	15,453	-	115	14,26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과 KF 「해외유력인사초청」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필요

「글로벌 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해외유력인사초청」은 외교·안보, 경제,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해외 유력인사와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지한(知韓)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재단은 1992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 10억원을 자체변경하여 계획현액을 9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 중 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9건의 사업을 통해 해외 유력인사 51명을 초청하였음.

한편, 외교부도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정책공공외교 기반구축'을 통해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은 한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급 인사 등을 개별적으로 방한 초청하여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한(親韓) 인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에는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개국의 주요인사 10명을 개별 초청하였음.

< 외교부 및 KF 해외 주요인사 초청사업 비교 >

구 분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	KF 해외유력인사 초청
사업목적		- 한국 정책 이해 제고 - 친한 인사 네트워크 확대	- 상호교류 확대 - 지한(知韓) 인적 네트워크 강화
주요대상		- 장 · 차관급 **정부인사** - 주요 **의회인사** - 주요 외교목표 관련 **정부인사**	- 의회 · 정무 · 외교안보 ·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 민간 유력인사**
선정방식		- 재외공관 협의 · 후보 발굴 → **외교부 선정**	- 재외공관 대상 신청공고 · 접수 → **KF 심의위원회 선정**
운영방식		- **개별 초청**(1:1 맞춤형 프로그램)	- **그룹 초청**
주요일정		- 관계부처 · 기관 고위인사 면담, 기업 방문, 문화시찰 등	- 유관기관 방문 및 면담, 강연 · 인터뷰, 산업시찰, 한국문화 체험 등
방한기간		- 4∽5일	- 6박 7일
2025	결산	- 편성: 2억 2,400만원 - 집행: 1억 6,800만원	- 편성: (당초)10억원→(변경) 9억 7,000만원 - 집행: 9억 6,300만원
	실적	- 10개국 10명	- 9건 51명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와 재단은 두 사업이 초청대상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외교부 사업은 정부의 주요 외교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현직 정부 고위급 인사 등을 개별 초청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KF 사업은 민간 유력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을 그룹 초청하여 보다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이라는 것임.

다만, 실제 KF 사업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재단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정부 외교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지역별 맞춤형 사업 및 전략적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해외유력인사초청」을 통해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베미래지향교류' 고위급 초청 사업[237]을 실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공립대학인 킹사우드대 총장을 방한 초청[238]하는 등 정부 외교정책과 연계한 고위급·전략지역 주요인사 교류를 추진하였음.

또한 두 사업은 재외공관·외교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청대상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면담·산업시찰·문화체험 등 유사한 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KF 사업은 대상 선정 후에도 재외공관·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한일정을 확정하고 있어, 유사한 정책목적의 사업을 외교부와 소관 공공기관이 각각 추진할 경우 역할이 중첩되고 한정된 재원이 분산 투입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외교법」 제7조제4항[239]은 공공외교 사업을 계획·

237) 「KF, 한-베 미래지향 교류사업으로 양국 관계 강화」, KD Press, 2025. 7. 29.

238) 「사우디 킹사우드대 총장 KF 초청으로 방한…미래산업 협력 논의」, 연합뉴스, 2025. 7. 1.

239) **「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시행할 때 유사·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2[240]는 공공외교위원회가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과 외교부의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지역 파견 확대 등 KF글로벌챌린저 파견지역 다변화 필요

「글로벌 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KF글로벌챌린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사업임.

2025년 인턴십 협력기관은 박물관 7개, 도서관 6개, 싱크탱크 6개, 국제기구 2개 등 총 21개이며,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8개국에 23명이 파견되었음.

한다.

240)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2025년 KF글로벌챌린저 파견 현황 >

순번	국 가	기관유형	기관명	파견인원
1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에네르기벤데	1인
2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카운슬	1인
3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1인
4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1인
5		박물관	보스턴 미술관	1인
6		박물관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1인
7		박물관	시카고미술관	1인
8		박물관	오리건대 조던슈니처미술관	1인
9		박물관	피바디에섹스박물관	1인
10		도서관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1인
11		도서관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동아시아도서관	1인
12		도서관	컬럼비아대 도서관	1인
13		도서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도서관	1인
14		도서관	UC어바인 랭슨도서관	1인
15	벨기에	국제기구	유럽의회	2인
16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1인
17	영국	박물관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1인
18		박물관	영국박물관	1인
19	오스트리아	국제기구	잘츠부르크 글로벌	2인
20	캐나다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재단	1인
21	프랑스	도서관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도서관	1인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런데 최근 3년간 KF글로벌챌린저의 지역별 파견인원을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지역에 대부분의 인원이 파견된 반면 아시아 지역 파견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 파견자는 2023년 태국 1명, 2024년 우즈베키스탄 1명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에는 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인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전체 파견자 78명 중 북미 지역 파견자는 49명으로 62.8%, 유럽 지역 파견자는 27명으로 34.6%를 차지한 반면, 아시아 지역 파견자는 2명으로 2.6%에 그쳤음.

< KF글로벌챌린저 지역별 파견인원 현황(2023～2025년) >

(단위: 명, %)

지 역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북 미	18(60.0)	17(68.0)	14(60.9)	49(62.8)
유 럽	11(36.7)	7(28.0)	9(39.1)	27(34.6)
아시아	1(3.3)	1(4.0)	-	2(2.6)
계	30(100.0)	25(100.0)	23(100.0)	78(100.0)

(주: 북미는 미국·캐나다, 유럽은 독일·벨기에·스웨덴·영국·오스트리아·프랑스, 아시아는 태국·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구분함)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KF글로벌챌린저는 청년들에게 해외 주요 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특정 권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정책·문화 및 사회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견지역을 균형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일본 및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지역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단은 아시아 지역 파견이 축소된 원인을 점검하고, 중국·일본·중앙아시아 등의 정책연구소·박물관·도서관 및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등 신규 협력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발굴한 협력기관이 실제 인턴 파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KF글로벌챌린저의 파견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레지던트 펠로의 역할 수행 내실화 및 한국어 학습비 지원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글로벌 협력강화」의 내역사업인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와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2016년 제10차 한-중앙아협력포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합의에 따라 설치하기로 결정되어 2017년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개소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파견한 레지던트 펠로는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사무국 업무와 한-중앙아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레지던트펠로초청사업 시행지침」은 레지던트 펠로의 신청 자격을 ① 외교부 외무공무원으로 동 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타 중앙정부 부처 소속으로 정부기관에서 대외협력 및 유사부서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③ 국책연구기관 소속으로 동 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241] 2025년에는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 국적 각 1명씩 총 4명이 파견되었고, 이 중 키르기스스탄 펠로를 제외한 3명은 2025년 신규 파견됨.[242]

241) **제5조 (신청 자격)** 사업 참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 및 근무경력
1. "중앙아 5개국" **외교부 외무공무원**으로 동 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중앙아 5개국" 외교부 외 **타 중앙정부 부처 소속**으로 정부기관에서 대외협력 및 유사부서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중앙아 5개국" **국책연구기관 소속**으로 동 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42) 202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조교수가 1년 간 신규 파견되어 레지던트 펠로는 총 5명임.

< 2025년 레지던트 펠로 파견 현황 >

연 번	국 가	소 속	파견당시 직위	파견기간
1	카자흐스탄	외교부	외교부 인사과 전문관	25.03.06.∽27.03.05.(2년)
2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前주말레이시아 키르키즈대사관 참사관	24.01.25.∽27.01.24.(1년)
3	타지키스탄	외교부	외교부 법률국 담당관	25.02.21.∽26.02.20.(1년)
4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외교부 사무국 2등서기관	25.02.26.∽27.02.25.(2년)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레지던트 펠로는 본국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으므로 재단은 레지던트 펠로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무국 업무와 한-중앙아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료, 생활지원금, 주거지원금, 보험료, 임시숙박비 및 한국어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 「레지던트펠로초청사업 시행지침」 제정 당시에는 항공료와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펠로 본인으로 하고 생활지원금 월 250 만원, 주거지원금 월 90 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 개정으로 항공료와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인까지 확대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300 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주거지원금은 미혼 월 80만원, 기혼 월 120만원 한도로 세분화하였음.

< 레지던트펠로 지원기준 및 2025년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제정 당시	2019년 개정 이후 (2025년 기준)	2025년	
			집행액	세부내역
항공료	실비: 왕복 최단거리 이코노미 등급 (출발지 - 서울 - 도착지)		3	신규 펠로(3인)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2인		
생활 지원금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136	펠로(4인)
주거 지원금	- 월 90만원	- 미혼: 월 80만원 한도 - 기혼: 월 120만원 한도	40	펠로(4인)
보험료	실비: 상해 및 실손 의료보험		1	펠로(4인) 가족(2인)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2인		
임시 숙박비	1일 15만원 한도		4	신규 펠로(3인)
	- 입국 시 14일 범위	- 입국 시 14일 범위 - 출국 시 7일 범위		
한국어 학습비	- 1개월 1회 150만원	- 연간 150만원 한도 - 매월 수강률 80% 이상	5	펠로(4인)
기 타	-	-	5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등
계			194	

(주: '기타'는 시행지침상 펠로 지원항목이 아닌 사업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사업운영비임)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레지던트 펠로의 역할 수행 내실화 필요

「레지던트펠로초청사업 시행지침」은 레지던트 펠로가 사업기간 동안 한-중앙아 양 지역 간 교류 강화와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무국에서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다각화, 환경·기후변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사업을 수행·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한-중앙아협력포럼 개최 업무에 협조하고, 주한 중앙아 공관 및 소속 회원국 외교부와 재단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중앙아 관련 컨설팅에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43]

재단에 따르면, 2025년 레지던트 펠로들은 자국 정부와의 업무연락, 홈페이지 관리, 유관기관 면담·자문, 포럼·연수 지원 등 사무국과 중앙아 각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 주요 활동실적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게재 906건, 유관기관 면담·행사 참여 142건, 컨설팅 87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K-난방 도입 및 관광분야 MOU 체결 지원, 키르기스스탄 노후 콘크리트댐 후속 협력수요 발굴 등을 주요 사례로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활동실적은 연락·지원 업무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어, 중앙아 각국에서 파견된 펠로가 자국의 정책수요와 현지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제안하는 기능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43) **제12조 (펠로의 의무)** 초청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펠로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펠로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운영**, **한-중앙아 양 지역 간 교류 강화,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기본취지에 따라 초청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펠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한-중앙아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사업을 수행·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교통·물류: 중앙아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및 운송 네트워크 확대
2.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3.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 한국경제특구 운영, 공기업 민영화 경험 공유, ICT 등 신기술 협력
4. 환경 및 기후변화: 산림 분야 협력 및 친환경 사업 확대
5. 보건·의료: 의료인력 양성 및 양 지역 간 의료 분야 교류 활성화
6. 교육·문화: 차세대 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 확대
③ 펠로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를 위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주한 중앙아 **공관 및 펠로가 소속된 회원국 외교부와 재단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펠로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시로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중앙아 관련 **컨설팅에 응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단은 레지던트 펠로가 단순한 연락·지원 기능을 넘어 한-중앙아 간 신규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제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 지침에서 정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어 학습비 지원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한국어 학습비는 1인당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매월 강의 수강률이 80% 이상인 경우 실비로 지원하며, 2025년에는 펠로 4명에게 총 542만원이 지급되었음.

< 2025년 레지던트 펠로 한국어 학습비 지원 현황 >

(단위: 만원)

연 번	국 가	집행액	학습기간	비 고
1	카자흐스탄	140	5개월	추가학습(1개월) 자비부담
2	키르기스스탄	150		-
3	타지키스탄	140		-
4	투르크메니스탄	112		-
계		542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레지던트 펠로가 국내에서 사무국 업무와 한-중앙아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한국어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 생활 적응과 업무 수행을 돕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지원기준은 한국어 강의 수강률 80% 이상이라는 출석요건만을 두고 있을 뿐, 강의 수강 전후의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 등 실질적인 학습성과를 확인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비 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예산 지원과 학습성과 간의 연계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단은 강의 수강 전후의 한국어 능력평가, 교육기관의 단계별 수료평가,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펠로별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한국어 학습비 지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문화교류협력강화

「문화교류협력강화」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문화해외확산」은 「문화외교역량강화」를 통해 해외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예술 특강·공연 등을 개최하고, 해외 박물관·미술관의 한국 관련 전시 및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설치를 지원하며,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확산과 문화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또한 「한국지식문화보급」을 통해 한국문화예술 소개 계간지 「Koreana」 등 한국 소개 출판물을 제작·배포하고, 해외 대학·도서관 등에 한국 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며 한국문화 복합홍보공간인 코리아코너의 개설·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글로벌문화교류」는 「글로벌센터」를 통해 주한공관·외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며, 「아세안문화원」을 통해 아세안 관련 전시·영화·문화행사 및 이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한-아세안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액은 76억 8,3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6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계획현액은 70억 1,900만원이고, 69억 5,900만원이 집행됨.

< 문화교류협력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경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한국문화해외확산	3,765	3,670	-	△95	-	3,670	3,641	-	29	3,443
글로벌문화교류	3,918	3,349	-	△569	-	3,349	3,318	-	31	3,664
계	7,683	7,019	-	△664	-	7,019	6,959	-	60	7,107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 참가자 중복 선발 최소화 필요

「한국문화해외확산」의 내내역사업인 '해외 박물관 한국 전문가 육성(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은 1999년부터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예술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작가 스튜디오 방문 및 작가와의 대화, 한국 미술 관련 특강 등을 실시하여 한국 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외 문화예술 분야의 지한(知韓)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개최 워크숍에는 미국 소재 기관 관계자 18명, 대한민국 개최 워크숍에는 미국·영국 등 10개국 소재 기관 관계자 13명 등 총 31명이 참가하였음.

이 중 6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워크숍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재참가자로 전체 참가자의 19.4%를 차지하였고, 재참가자 전원이 미국 개최 워크숍에 참가함에 따라 해당 워크숍의 재참가 비율은 33.3%로 나타났음.

<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 개최 현황(2025년) >

개최지	참가자 소속 국가 수	참가 인원 (A)	재참가 인원 (B)	재참가 비율 (B/A)
미 국	미국 1개국	18명	6명	33.3%
대한민국	미국 등 10개국	13명	-	-
계	10개국	31명	6명	19.4%

(주: 재참가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워크숍 개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6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였으며, 연도별 참가 인원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명, 2023년 34명, 2024년 29명, 2025년 31명임. 이 중 14명이 각각 2회씩 참가하여 실제 참가자는 122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참가자는 2022년 4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2명, 2025년 6명임.

이에 따라 재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참가자 115명 중 14명(12.2%)이 과거 참가자로 나타났고, 특히 2025년에는 재참가자가 6명으로 2023년 및 2024년의 각 2명보다 증가하였음.

<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 참가 현황(2021～2025년) >

연 도	개최지	참가자 소속 국가 수	참가 인원 (A)	재참가 인원 (B)	재참가 비율 (B/A)
2021	대한민국	3개국	21명	-	-
2022	미 국	3개국	21명	4명	19.0%
2023	영 국	10개국	34명	2명	5.9%
2024	대한민국	14개국	29명	2명	6.9%
2025	미 국	1개국	18명	6명	33.3%
	대한민국	10개국	13명	-	-
	소 계	10개국	31명	6명	19.4%
총 계			136명	14명	12.2%*

(주: 1. 재참가자는 해당 연도 이전에 KF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2. 2021년은 분석기간의 기준연도이므로 재참가 인원 및 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함.
3. 총계의 재참가 비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참가자 115명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워크숍의 주제가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기존 참가자의 재참여가 한국 미술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고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음.

그러나 워크숍의 참가 규모가 회당 2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한 참가자를 반복하여 선발할 경우 신규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지한(知韓) 전문가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향후 재단은 워크숍 참가자 선정 시 과거 참가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참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인을 재선발하는 경우에는 워크숍 주제와의 관련성, 참가자의 소속·직무 변경 여부, 후속 활동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심사자료에 명시함으로써 참가자의 중복 선발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건비」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기타운영비」는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로, 재단은 현지에 기반한 각종 국제교류사업의 개발·관리, 국제교류 동향 조사 및 성과평가, 유관기관 인사와의 지한(知韓)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주요 사업 대상국 7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계획액 및 계획현액은 146억 6,500만원이고, 145억 9,800만원이 집행됨.

< 기금운영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인건비	11,068	10,797	-	△271	-	10,797	10,797	-	-	11,456
기타운영비	3,597	3,868	-	271	-	3,868	3,801	-	67	3,647
계	**14,665**	**14,665**	**-**	△271 271	**-**	**14,665**	**14,598**	**-**	**67**	**15,10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준수 및 상용임금의 연례적 과소편성 개선 필요

재단은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있음. 이 중 11명의 인건비는 기본경비인 「기타운영비」 세부사업에, 나머지 5명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인 「공공외교기반확대」·「글로벌 협력 강화」·「글로벌문화교류」 세부사업에 각각 상용임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담당 업무	인원	근무지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00)	국제협력 네트워킹 (2633)	공공외교 기반확대 (2633-403)	영문 교열원	1명	제주
		글로벌 협력 강화 (2633-40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명	제주
	문화교류 협력강화 (2634)	글로벌 문화교류 (2634-402)	KF 갤러리 운영	3명	서울
외교행정지원 (7000)	기금운영비 (7076)	기타운영비 (7076-201)	사무행정 등	11명	제주, 서울, 부산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가. 보수에서 상용임금으로의 비목 변경절차 미준수

2025회계연도 「기타운영비」의 상용임금 당초 계획액은 8억 9,900만원이었으나, 재단은 「인건비」 의 보수 집행잔액 2억 3,500만원을 「기타운영비」 세부사업의 상용임금으로 자체변경하여 계획현액을 11억 3,400만원으로 증액한 후 전액 집행하였음. 재단은 2019년 이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보수 집행잔액을 상용임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최근 7년간 변경액은 총 10억 9,000만원임.

< 최근 상용임금 자체변경 내역(2019~2025) >

(단위: 백만원)

연 도	~에서			~으로		
	세부사업	비 목	금 액	세부사업	비 목	금 액
2019	인건비 (7076-101)	보수 (110-01)	110	기타운영비 (7076-201)	상용임금 (110-03)	110
2020			80			80
2021			70			70
2022			105			105
2023			190			190
2024			300			300
2025			235			235
합 계			1,090			1,09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110목) 내 상호 간 자체전용을 허용하면서도 상용임금(110-03)으로의 전용은 그 위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자체전용권의 위임범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도 준용되므로[244], 재단이 보수 집행잔액을 상용임금으로 자체변경하면서 재정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집행지침에 따른 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재단은 인건비(110목) 내 비목 간 변경은 재단의 자체변경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향후 상용임금으로의 비목 변경 시 집행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의견임.

24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5, p.319

나. 프로그램 간 상용임금 집행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미준수

재단은 2025회계연도에 「기타운영비」의 상용임금을 2억 3,500만원 증액한 후, 이 중 8,300만원을 주요사업비 세부사업에 배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글로벌문화교류」 사업에 배치된 근로자에게 8,000만원을, 「공공외교기반확대」 사업에 배치된 근로자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음.

< 상용임금 증액분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연 도	상용임금 증액분	세부사업			
		기타운영비	공공외교 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문화교류
2019	110	95	2	6	7
2020	80	51	4	14	11
2021	70	36	-	15	19
2022	105	40	7	15	43
2023	190	116	-	19	55
2024	300	214	-	12	74
2025	**235**	**152**	**3**	**-**	**8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런데 「기타운영비」는 「외교행정지원(7000)」 프로그램에, 「글로벌문화교류」 및 「공공외교기반확대」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프로그램에 각각 속하므로, 「기타운영비」에 편성된 상용임금을 해당 주요사업비에 집행하려면 프로그램 간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분야·부문·프로그램을 '주요항목'으로,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주

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관리주체가 자체변경할 수 있음.

반면,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규모가 20% 이내이면 원칙적으로 자체변경할 수 있으나,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금별 변경 협의대상 지출항목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야 함. 국제교류기금의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이러한 협의대상 지출항목에 해당함.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245]

따라서 재단이 「기타운영비」 상용임금 증액분 중 8,300만원을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부사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집행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이에 대해 재단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상용임금을 기본경비인 「기타운영비」에 통합 편성해 줄 것을 재정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245) 금융성 기금은 지출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20%를 기준으로 함.

다. 상용임금 비목의 연례적 과소편성

최근 3년간 「기타운영비」에 편성된 상용임금의 직렬별 기본연봉을 살펴보면, 당초 단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반면 준전문직렬·교열직렬·사무행정직렬·기능직렬 모두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친 변경 후 단가가 당초 단가를 상당 폭 상회하여, 재단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제 지급단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기타운영비 상용임금의 직렬별 기본연봉 변경 현황(2023～2025) >

(단위: 만원)

직 렬	2025		2024		2023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준전문직렬	2,863	4,063	2,829	4,586	2,829	3,646
교열직렬	2,836	4,086	2,803	4,393	2,803	3,363
사무행정직렬	2,476	3,556	2,447	3,856	2,447	2,936
기능직렬	2,698	3,328	2,666	4,109	2,666	3,19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국가재정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세부항목 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은 실제 지급수준보다 낮은 단가로 상용임금을 편성한 후 연도 중 세부항목 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을 연례적으로 반복하

고 있음. 이처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은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당초 과소편성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존사업의 보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변경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항목 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단은 상용임금과 관련하여 비목 간 또는 프로그램 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최근의 실제 지급단가와 임금인상률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상용임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과소편성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Ⅳ.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이 개정(2008. 12) 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246]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산	일반회계	5,416,159	5,359,453	56,706	1.0
	국제교류기금	88,671	88,992	△321	△0.4
	국제질병퇴치기금	-	7,526	△7,526	△100.0
	계	5,504,830	5,455,971	48,859	0.9
부채	일반회계	67,076	57,115	9,961	14.9
	국제교류기금	360	238	122	51.6
	국제질병퇴치기금	-	111,500	△111,500	△100.0
	계	67,436	168,853	△101,417	△150.4
순자산	일반회계	5,349,083	5,302,338	46,745	0.9
	국제교류기금	88,310	88,754	△444	△0.5
	국제질병퇴치기금	-	△103,973	103,970	△100.0
	계	5,437,393	5,287,118	150,275	△2.8

가. 자 산[247]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도 5조 3,594억 5,300만원 대비 567억 600만원(1.0%)이 증가한 5조 4,161억 5,9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요인은 재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은 886억 7,100만원으로 전년 889억 9,200

246)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47)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만원 대비 3억 2,100만원(0.4%)이 감소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인은 연기금 투자풀 완전위탁펀드 전환에 따라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외교부 일반회계가 승계하였음.

나. 부 채[248]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도 571억 1,500만원 대비 99억 6,100만원(14.9%)이 증가한 670억 7,6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부채는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8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51.6%)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에 따른 것임.

248)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순자산[249](=자산-부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도 5조 3,023억 3,800만원 대비 467억 4,500만원(0.9%) 증가한 5조 3,490억 8,300만원으로 재정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순자산은 88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887억 5,400만원 대비 4억 4,400만원(0.5%)이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는 주로 유·무형자산 감소에 따른 것임.

249)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250]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5(A)	2024(A)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 순원가	일반회계	3,823,993	3,603,081	220,912	6.1
	국제교류기금	61,907	91,304	△29,397	△32.2
	국제질병퇴치기금		91,324	91,324	△100.0
	계	3,885,900	3,785,709	282,839	△126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47,077	242,283	4,794	2.0
	국제교류기금	4,748	4,998	△250	△5.0
	국제질병퇴치기금		247	247	△100.0
	계	251,825	247,528	4,791	△103.0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215	51	164	321.6
	국제교류기금	4	9	△5	△55.6
	국제질병퇴치기금		1,957	1,957	△100.0
	계	219	2,017	2,116	166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233,340	236,474	△3,134	△1.3
	국제교류기금	5,674	6,945	△1,271	△18.3
	국제질병퇴치기금		534	534	△100.0
	계	239,014	243,953	△3,871	△120
Ⅴ.재정운영 순원가(Ⅰ+Ⅱ+Ⅲ-Ⅳ)	일반회계	3,837,945	3,608,941	229,004	6.3
	국제교류기금	60,984	89,365	-28,381	△31.8
	국제질병퇴치기금		92,993	92,993	△100.0
	계	3,898,929	3,791,299	293,616	△126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0	-	0	-
	국제교류기금	60,540	96,192	△35,652	△37.1
	국제질병퇴치기금		40,929	40,929	△100.0
	계	60,540	137,121	5,277	△137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3,837,945	3,608,941	229,004	6.3
	국제교류기금	444	△6,827	7271	106.5
	국제질병퇴치기금		52,064	52,064	△100.0
	계	3,838,389	3,654,178	288,339	13

250)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251]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교부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17개의 프로그램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3조 6,030억 8,100만원 대비 2,209억 1,200만원(6.1%)이 증가한 3조 8,239억 9,3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경제외교 프로그램에서 1,110억원,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에서 405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913억 400만원 대비 293억 9,700만원(32.2%) 감소한 619억 7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지정기부사업이 축소한데 기인함.

25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422억 8,300만원 대비 47억 9,400만원(2.0%) 증가한 2,470억 7,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및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49억 9,8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5.0%) 감소한 47억 4,8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감축 노력에 의한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1억 6,400만원(321.6%) 증가한 2억 1,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대손상각비 승계에 의한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전년도 대비 외화평가손실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364억 7,400만원 대비 31억 3,400만원(1.3%) 감소한 2,333억 4,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자산재평가에 따라 자산평가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69억 4,500만원 대비 12억 7,100만원(18.3%) 감소한 56억 7,400만원 이었고, 이는 여유자금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이자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마.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비교환수익은 2024년과 2023년 모두 발생하

지 않았음.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961억 9,200만원 대비 356억 5,200만원(37.1%) 감소한 605억 4,0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여권발급 부담금 징수 규모 축소에 따라 부담금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바.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252]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3조 6,089억 4,100만원 대비 2,290억 400만원(6.3%) 증가한 3조 8,379억 4,500만원이며,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8억 2,700만원 대비 72억 7,100만원 증가한 4억 4,400만원임.

252)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253]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5,302,338	5,197,052	105,286	2.0
	국제교류기금	88,754	83,691	5,063	6.0
	국제질병퇴치기금	-	△51,909	51,909	△100.0
	계	5,391,092	5,228,834	162,258	3.1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3,837,945	3,608,941	229,004	6.3
	국제교류기금	444	△6,827	7,271	-
	국제질병퇴치기금	-	52,064	△52,064	△100.0
	계	3,838,389	3,654,178	184,211	5.0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3,929,253	3,613,551	315,703	8.7
	국제교류기금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3,929,253	3,613,551	315,703	8.7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44,564	100,676	△145,240	-
	국제교류기금	-	△1,765	△1,765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44,564	98,912	△147,005	-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5,349,083	5,302,338	46,745	0.9
	국제교류기금	88,310	88,754	△444	△0.5
	국제질병퇴치기금	-	△103,973	103,973	△100.0
	계	5,437,393	5,287,118	150,274	2.8

253)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5조 3,023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2억 8,6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 기초순자산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조달 및 이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3조 6,135억 5,100만원 대비 3,157억 300만원이 증가한 3조 9,292억 5,3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1,006억 7,600만원 대비 1,452억 4,000만원 감소한 △445억 6,400만원으로, 그 주요 감소원인은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현금성자산 분류로 인해 투자승권평가손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17억 6,500만원 증가하였음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5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5조 1,970억 5,200만원 대비 1,052억 8,600만원이 증가한 5조 3,023억 3,800만원이며,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887억 5,400만원임.

Ⅴ.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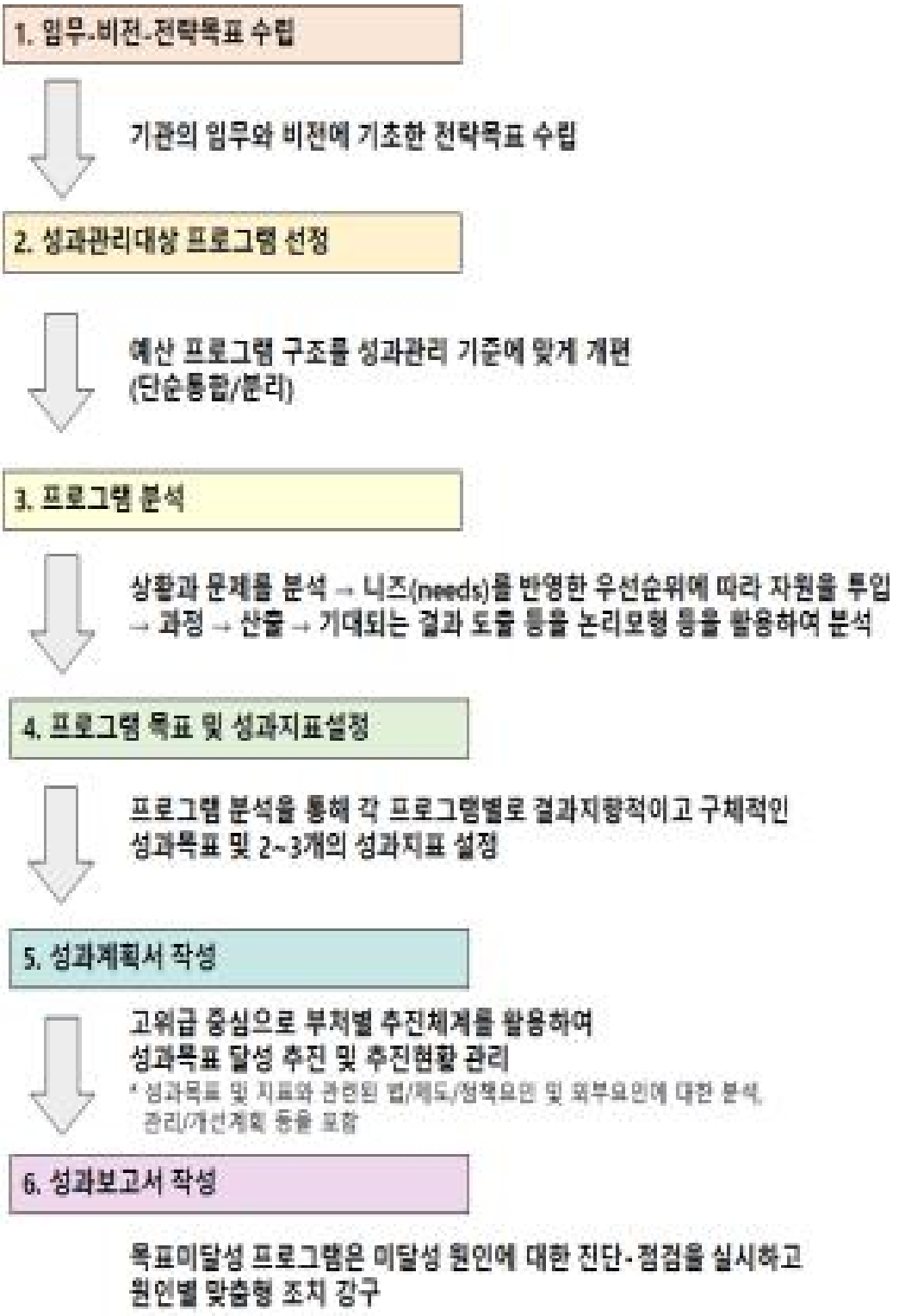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관리 주요 절차 >


1. 임무-비전-전략목표 수립
기관의 임무와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 수립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예산 프로그램 구조를 성과관리 기준에 맞게 개편
(단순통합/분리)
3. 프로그램 분석
상황과 문제를 분석 → 니즈(needs)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투입
→ 과정 → 산출 → 기대되는 결과 도출 등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
4.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설정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2~3개의 성과지표 설정
5. 성과계획서 작성
고위급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추진 및 추진현황 관리
* 성과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
6. 성과보고서 작성
목표미달성 프로그램은 미달성 원인에 대한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원인별 맞춤형 조치 강구

2. 성과체계 현황

외교부의 임무는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이며,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2	28	88

외교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 4조 3,463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2조 2,130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2조 1,921억원임.

< 외교부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43,645	42,646	43,463	42,424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22,775	21,867	22,130	21,921
	정보화	1	1	1	1
	R&D	0	0	0	0
	소계(A)	22,776	21,868	21,868	21,921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982	3,845	6,368	6,100
	기본경비	2,242	2,177	4,052	3,913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727	16	197	0
	보전지출	238	1,477	292	491
	기타	13,680	13,262	10,424	9,999
	소계(B)	20,869	20,778	21,333	20,503

2025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Ⅲ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에 1조 9,583억원(89.3%), “전략목표 Ⅴ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에 1,233억원(5.6%) 등 외교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상위 2개 전략목표에 전체 재원의 94.9%인 2조 816억원을 투입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141	0.6
□ 전략목표 2 :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48	0.7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9,583	89.3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705	3.2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233	5.6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1	0.5

< 외교부 2025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전략목표 Ⅴ	전략목표 Ⅵ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프로그램목표 Ⅱ-1	프로그램목표 Ⅲ-1	프로그램목표 Ⅳ-1	프로그램목표 Ⅴ-1	프로그램목표 Ⅵ-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아세안·동남아·유럽 및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Ⅱ-2	프로그램목표 Ⅲ-2	프로그램목표 Ⅳ-2	프로그램목표 Ⅴ-2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국제안보·사이버·군축·비확산·수출통제·제재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목표 Ⅲ-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3.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외교부의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2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16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6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은 0개, 달성(100~130%)은 16개, 미달성(100% 미만)은 0개임.

< 외교부 2025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6	12	16	-	16	-
		100%	-	100.0%	-

< 전략목표별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166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Ⅱ.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62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9,603	성과지표 수	5
		달성 / 미달성	5 / 0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751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325	성과지표 수	3
		달성 / 미달성	3 / 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4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 202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

(단위 : 억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액		평가 결과	비 고
			'25년	'26년		
<합 계>			20,695	15,897		
1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	75	사업개선	
2	일반회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	36	사업개선	
3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출연	47	47	사업개선	
4	일반회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5	14	사업개선	
5	일반회계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	33	사업개선	
6	일반회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3,073	2,765	사업개선	단위사업 평가
7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21	2,460	사업개선	단위사업 평가
8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44	801	사업개선	단위사업 평가
9	일반회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057	898	사업개선	단위사업 평가
10	일반회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430	1,272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11	일반회계	공공외교 역량강화	158	189	사업개선	
12	국제교류기금	한국학기반확대	148	135	사업개선	
13	국제교류기금	정책공공외교강화	73	66	사업개선	
14	국제교류기금	글로벌협력강화	44	42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15	국제교류기금	한국문화해외확산	38	34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16	국제교류기금	글로벌문화교류	39	37	사업개선	
17	일반회계	글로벌연수(ODA)	680	736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18	일반회계	국제기구협력(ODA)	800	350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19	일반회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452	529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20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	33	사업개선	
21	일반회계	국내외교육훈련	71	72	사업개선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액		평가 결과	비 고
			'25년	'26년		
22	일반회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	9	사업개선	
23	일반회계	협력사업 지원(ODA)	614	916	사업개선	
24	일반회계	인도적 지원(ODA)	6,775	3,415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25	일반회계	민관협력사업(ODA)	650	495	사업개선	
26	일반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5	67	사업개선	
27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	68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28	일반회계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65	70	사업개선	
29	일반회계	해외진출기업활동 지원	28	37	사업개선	
30	일반회계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7	30	사업개선	
31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8	24	사업개선	보조사업 평가
32	일반회계	재외국민 보호	140	140	사업개선	

Ⅳ.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1.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총괄표

가. 조치상황별

(단위 : 건수)

부처명	합계 (a+b)	결산			예비비		
		소계(a)	조치완료	조치중	소계(b)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63	63	54	9	-	-	-

나. 시정요구수준별

(단위 : 건수)

부처명	합계 (a+b)	결산						예비비					
		소계(a)	시정	주의	제도개선	변상	징계	소계(b)	시정	주의	제도개선	변상	징계
외교부	64(1)	64(1)	1	21(1)	42(1)	-	-	-	-	-	-	-	-

2.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상황 요약표

구 분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31)
외교부	(1) 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주의	조치완료
	(3)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시정	조치완료
	(4)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조치완료
	(5) 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 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주의	조치완료
	(7) 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주의	조치완료
	(8) 한·아프리카 재단의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주의	조치중
	(9) 한·아프리카 재단의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 국내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1) 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제도개선	조치완료
	(12) 한국 소재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주의	조치완료
	(14)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부처간 면밀한 협의 및 사전 설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사전검토·현지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6) 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 중
	(17) 유상 ODA 인정액 제고방안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8)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미교부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구 분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31)
	(19) 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1)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2) 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3) 인도네시아 ODA 사업 추가지연 방지 위한 제반 사항 면밀 검토 필요	주의	조치완료
	(24) 아시아 지역 ODA 사업 집행률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5)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실적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	주의	조치완료
	(26) 학위과정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7)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전반적 점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8)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약정금 교부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9) 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0) 예산 집행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부적절	주의	조치완료
	(31) 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조치 이행 미흡	제도개선	조치중
	(32) 인도적지원 용역 다빈도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3)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완료
	(34)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 관련 체계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35) 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필요	주의	조치완료
	(36)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지원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7)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8)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서비스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운영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9)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주의	조치완료
	(40)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1)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제도개선	조치완료
	(42)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주의	조치완료
	(43)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예산 실효성 확보	제도개선	조치완료

구 분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31)
	(44) 정보외교시대, 신속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필요	주의	조치완료
	(45)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6)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7)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주의	조치완료
	(48)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9) 재외공관장 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50) 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제도개선	조치완료
	(51)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미정산에 따른 지연가산금 발생	주의	조치완료
	(52) 국별협력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53) 사업 착수 전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면밀 파악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4) 정세불안 수원국에 대한 ODA 집행관리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5) 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 준수 필요	주의	조치완료
	(56)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주의	조치완료
	(57)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기금운용계획 일관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8)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59) 다른 부처와 공동 사업 추진시 계약당사자 및 예산 소관 일치 필요 등	주의	조치완료
	(60)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중
	(61)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2) 타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3) 계약기간 조정을 통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나.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12.31)</th></tr>
<tr><td>(1)관유물대여로 관리 철저 필요</td><td>○[지적사항]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5%인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에 대하여 편성한 4억 2,900만원 중 1,000만원(2.3%)이 수납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td><td>제도개선</td><td>○ 국립외교원은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대상 6실 중 3실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장애인단체에 무상사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유상임대 대상 3실에 대하여도 유상사용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공실 없음.

○ 관유물대여료 산정기준 고도화를 위하여 ①입주업체의 수익 감소로 장기간 공실이었던 사무실은 무상사용허가 ②민간임대 허가 업종을 추가*하여 공익법인에 유상사용허가를 완료함으로써 수익감소로 인한 허가취소 가능성을 낮춰 세입 추계가 용이하도록 개선 조치 완료
* 입찰 공고 허가 업종에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주되게 하는 업체'를 추가

<2025년 외교타운 민간임대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tr><th>업체명</th><th>사용허가 기간</th><th>연간 사용료
(징수 결정액)</th><th>비고</th></tr><tr><td>아이갓에브리씽 카페
(102호)</td><td>2025.01.01.
~2027.12.31.</td><td>무상</td><td>장애인복지법 제48조</td></tr><tr><td>아시아아너스
소사이어티 협회(201호)</td><td>2025.11.07.
~2027.12.31.</td><td>5.9
(유상)</td><td>국유재산법 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td></tr><tr><td>세움 회계법인
(202호)</td><td>2024.11.07.
~2027.12.31.</td><td>39.3
(유상)</td><td>국유재산법 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td></tr></table></td><td>조치완료</td></tr>
</table>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12.31)</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최경주복지회
(304호)</td><td>2025.11.03.
~2027.12.31.</td><td>38.3
(유상)</td><td>국유재산법 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td></tr>
<tr><td>재외동포협력센터
(305-306호)</td><td>2024.10.14.
~2028.12.31.</td><td>무상</td><td>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2">합 계</td><td>83.5</td><td></td></tr>
</table>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7일</td><td></td></tr>
<tr><td>(2)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td><td>○[지적사항]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된 반면, 집행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불용률은 28.5%로 매우 높음.
- 2024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행정비용이 일부 감소했다고 하나, 장기간 누적된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적 · 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결과임.
- 조직 개편에 따라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구체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하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 국민적 관심 유도 부족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절차를 재정비할 것</td><td>주의</td><td>○ '25년 하반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북핵문제 관련 협의 내역사업 실집행률을 81.4%로 제고
- 고위급 협의 및 북핵수석대표·실무그룹협의는 참여국 간 일정 등 협의하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국내외 정세·여건 변화에 특히 민감한바, 올해 ▲탄핵 및 대선 국면 ▲미·일 신행정부 출범 상황 고려, 상반기에는 협의가 활발히 개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각종 외교행사(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및 주요국과의 각급 협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우리 대북정책 설명 및 지지 확보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함.
-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 관여 및 공조 의지 강화로 인해 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3)대몽골 외교 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는 한·몽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정무 분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집행률은 30.6%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 한몽 간 주요 고위급 교류가 다자·방한 계기 추진되어 양국 간 고위·실무급 소통이 활발함에도 불구,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의회외교 협력 강화 △학계와의 소통 심화 △한몽 간 미래지향적 관계 마련을 위한 차세대 간 소통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률 개선 - 실제로 '25년 집행률 75% 달성으로 집행부진이 개선되었으며, '26년 예산 규모 자체 조정(20% 감액)을 통해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상 집행 노력 경주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과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17.1% 및 31.7%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함.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전액 미집행하였고,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총 예산 8,200만원 중 국외여비 3,800만원을 타 사업에 지출하고도 1,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제도개선	○ 올해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과 '한-인도 카라반 사업' 모두 80% 이상(각각 86.8%, 80.2%)의 집행률을 달성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외통위의 집행 부진 지적 및 서남아유력인사 초청사업으로의 통합 고려 권고에 따라 '26년 예산안부터 서남아유력인사 초청사업으로 통합 - '한-인도 카라반 사업'의 경우 ▲인도 진출 우리 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인도 반도체 라운드테이블 참석, ▲주총리 면담, ▲하이데라바드 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을 통해 인도 지방 주요도시와의 아웃리치 및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 향후 동 사업 집행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더욱 제고할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지적사항]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은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분절되어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단위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 관리의 기준이 되는바, 세부사업 내 구성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외통위 지적을 수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내 내역사업 재편성 방안 검토 - 내역사업 중 하나인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 유사 사업 정비 목적으로 '26년 예산안부터 편성 제외 및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 틀 내에서 운영할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6)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지적사항]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 특정 내내역사업의 연례적 부진에 대해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내역사업들의 경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통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것	주의	○ 2026 회계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집행률이 전무했던 내내역사업(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을 전액 삭감하여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예산을 편성하였음. - 향후 유럽지역 정세 변화 등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 제고와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7)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 개황 원고 작성 및 검수 사례비 등 총 2억 5,0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함. - 동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개황책자 수요는 예측 가능했던바, 예산 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주의	○ 사업 추진 전 연계사업을 포함한 예산 세목을 검토하여,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4년 결산심사 내용을 유념하며 사업 준비 및 예산 편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한·아프리카 재단의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지적사항] 한·아프리카재단은 「한 · 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감사를 두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감사 공백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서가 누락되어 있음. - 재단의 「감사규정」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은 감사 공백 기간 동안 검사역 또한 임명하지 않은바, 결산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	주의	○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감사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노력중 - 감사의 부재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감사 공석 기간 동안 재단은 검사역을 임명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행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중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9)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2024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은 총 4만원으로 초과근무 실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성 및 집행액임. -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공제를 피하기 위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데 기인하며, 특근매식비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 운영 왜곡을 초래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도개선	○ 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이 4만원에 불과한 것은, 직원들의 사용 기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직원들은 저녁식사로 인한 퇴근 시간 지연 및 초과근무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또한, 특근매식비 지급 및 초과근무시간 공제에 대한 명확한 자체 규정 없이, 설립 초기부터의 관행에 따라 운영되어 온 점은 규정 정비 시급 - 우선적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 시간, 단가 및 정산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 신설('25.8.12) - 12월 23일 기준 전년대비 6배 집행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12일	조치완료
(10)국내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지적사항] 한 · 아프리카재단의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사업의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산액 대비 53.6%, 38.5%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함.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동창회원 등 대상자 관리	제도개선	○ 기존 발간해오던 에세이집을 재발간하여 동창회 구성원 신규 발굴 및 금년 참여한 동창회 구성원 활용 에세이집 홍보 효과 제고 - '25년 총 10명의 동창회 구성원 신규 발굴 및 에세이집 발간 기념회 개최를 통한 사업 홍보 효과 제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미흡, 콘텐츠 활용계획 부족, 낮은 대국민 접근성과 파급력, 홍보전략 부재 등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		○ 부산외대 아프리카연구소와 공동으로 강연회 개최하여 기존 에세이집 홍보 효과 제고 및 강연회로의 접근성 확대 - 부산외대에서 개최한 '아프리카의 날' 계기 Af-PRO 강연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약 110여명 참석 - 기존 에세이집 콘텐츠 활용하여 개최함으로써 기존 에세이집 홍보 효과 제고 ○ '25년도 예산 집행률 96.7% 달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1)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및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행사의 경우, 행사에 수반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등 필수 부대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하여 집행 시 행정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제도개선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준비 과정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고 있음. - 2026년 중 개최 예정인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의 경우,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및 정책성등급조사를 거치고 유사 장관급 행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것			
(12)한국 소재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지적사항]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은 행정 경비에 비하여 활동성 경비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며, 부서별 집행률도 20%P 이상의 편차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한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한국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기관별 성과계약서를 도입하고, 분담금의 성과와 연동된 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FY24('24.9.1-'25.8.31) 회계보고서 및 외부 기관 회계감사 보고서 검토 결과, 활동성 경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 집행률 제고 및 부서별 집행률 편차 완화 확인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7일 ○ TCS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TCS 분담금 성과 제고를 위한 협의체계 검토 논의 진행 - 추후 TCS 예산의 실효적 집행 관련 점검 및 체계적 모니터링 지속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3일	조치완료
(13)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임.	주의	○ '25년 하반기 면밀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내역사업 집행률 89%, 국외여비 집행률 84% 달성('25.12.31예산 현액 대비 기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 회의·세미나 개최 횟수, 인력 운영 규모 등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53.1%임. ○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2025년도 역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4)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부처간 면밀한 협의 및 사전 설계 필요	○[지적사항] 정부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도록 각 부처에 각각 31억원씩 배정하였는데, 외교부는 당초 준비기획단 인건비로 책정된 9,300만원에 1억 1,1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집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책연구비 1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	제도개선	○ 동 사업이 외교부와 국방부에 분할 편성되었으나, 준비기획단이 외교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국방부 예산으로 준비기획단에 속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음.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는 단년도 사업으로 '2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음. -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편성 단계부터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 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실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5)국별협력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사전검토·현지관리 강화 필요	○[지적사항] 국별협력사업(ODA)에서 수원국 법 · 제도 요건, 선행 절차 미이행, 선행사업 종료 · 사후관리 지연, 수원국 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 현지 정세 불안, 수원국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예시로,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은 법 개정 동향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해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이 발생했고, '케냐 아띠리버센터 사업'은 기본약정서 미체결로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법 · 제도 요건 및 선행 절차, 현지 정세, 행정절차 소요 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사업 일정에 반영할 것	제도개선	○ 사전 조사(예비조사, 기획조사 등) 내실화 추진 -「통합 사업발굴 지침」을 조기 배포(7월→4월)하여 현행 대비 3개월 이상 예비조사 기간 추가 확보 - 대형사업, 공공협력사업 등의 예비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수원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성조사* 진행 독려 *** 예비조사 전, 또는 예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사업제안서(PCP) 검토 의견을 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 심사 의견은 기획조사에 반영 강화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성과 달성도 등 이행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사업 일정에 반영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9일 (KOICA 사업발굴지침 배포)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16)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	○[지적사항] 최근 4년간 종료된 94건의 국별협력사업 중 종료보고 기한(사업종료연도 다음 해 1월 말)을 준수한 사업은 48건이며 나머지 46건은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였음. ○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과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종료보고가 누락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되어 기간 도과 후 종료보고가 진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종료연도의 ODA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 · 감독할 것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종료보고 규정 개정 추진 예정 - 종료사업의 사후관리 등 내실화를 위해 종료보고 시점에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수원국 측의 사업평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보고 기간 현실화(1월말→6월말 검토중)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종료 보고 적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6년 상반기 (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 개정 예정)	조치중
(17)유상 ODA 인정액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지적사항]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무상 ODA 인정액 비율을 37~43:63~57 수준으로 관리할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2년부터 양자 ODA 인정액 중 유상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도개선	○ 유상 ODA는 외교부가 아닌 기재부 소관 사항으로 기재부에 관련 내용 전달 완료하였으며, 외교부는 필요시 국조실 및 기재부 주관 유상 ODA 관련 협의에 지속 참여 예정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31%보다 낮아지면서 목표 범위를 이탈하였음. - 차관 집행액의 절반 이하만 유상 ODA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업들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상 ODA 인정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8)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미교부 지양 필요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2.6%임. 이와 같은 편차는 예산당국이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함. ○출연금 미교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ODA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의 미교부를 최소화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출연금의 분기별 교부계획	제도개선	○ '25년 외교부의 코이카 출연금 교부율은 99.7%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교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수립 등 집행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9)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집행현황에 따르면 71개의 신규 사업 중 33개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신규 국별 사업 중 집행액이 전무한 경우도 있음.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초년도에 협의의사록 미체결 및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등의 이유로 착수가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도개선	○ 사업 초년도 착수율 제고를 위한 평가 지표 개선 - 신규사업의 초년도 착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조직의 보다 적극적인 수원국 협의가 필요한바, 이를 유도하기 위한 내부 평가 지표를 개발 및 반영함('25년부터 시행) - 내부 평가 지표 고도화를 위해 26년부터는 현행 R/D체결 및 집행계획 수립 일정 외 사업비 집행 착수 시점도 지표에 반영키로 확정('26년부터 시행 예정) - 한편, 사업발굴지침 조기배포,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등의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5년 신규사업은 '25.10월 기준 전년대비 R/D 체결율*이 약 50%p 증가 * R/D는 신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필수단계로 R/D 체결을 앞당길 시 초년도 집행률 향상 기대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9일 (KOICA 신규지표 수립)	조치완료
(20)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지적사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당해 연도 내 집행 완료가 원칙이나, 2023~2024년 동안 사업에 착수한 연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제도개선	○ 사업비 연내 집행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사업 심사 시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경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필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단년도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 사례가 반복되어, 사업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저해하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림.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액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 일정 및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수원국 협의 지연, 사업 설계 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		- '26년 사업발굴 조기 착수를 통한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예정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이월률 감소 추세** **- (23년) 본예산 대비 이월률 18.6% → (25년) 본예산 대비 이월률 13.6%**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6일 (KOICA '26년 신규사업 발굴 안내)	
(21)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지적사항]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에서 개별 사업의 취소가 연쇄적으로 패키지 내 다른 사업 취소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수원국 현지의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패키지 내의 타 사업인	제도개선	○ 해당 패키지 사업은 국조실 주도로 형성되었는바, 관련 사항을 국조실에 전달하였으며,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공동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타부처·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공동 관리해나갈 계획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취소되어 패키지 전체의 전망이 불확실함. ○여러 ODA 사업을 패키지로 결합할 경우, 특정 사업의 집행 부진이 같은 패키지 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패키지 전체의 성과 저해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ODA 사업 패키지의 사전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 필요	○[지적사항]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법 · 제도 요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수원국 토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부동산 가격산정 모델 및 가격정보 종합시스템' 직접 구축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 ○이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ODA 사업의 사업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법 · 제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제도개선	○ (심사단계 의견반영 강화) '27년 신규 국별협력사업 심사 운영 가이드라인상 심사 시 나온 의견을 집행계획 작성에 필수 반영토록 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안내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3일 (KOICA '27년 신규사업 심사운영가이드라인 확정)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있다는 의견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23)인도네시아 ODA 사업 추가지연 방지 위한 제반 사항 면밀 검토 필요	○[지적사항]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 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현지 시공업체 현지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추후 MOOC 시스템 적용 및 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 중임.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 MOOC 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와 스마트 교실 및 스튜디오 기자재 지원 사업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선행사업 종료 보고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 한 후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추가지연사유 해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 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 시공업체 선정이 현지입찰 과정에서 유찰된 바 있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25.4월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중이며,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수행자(PMC) 및 시공사 공정률 등 면밀 모니터링 실시중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14일 (시공사 계약체결일)	조치완료
(24)아시아 지역 ODA 사업 집행률 개선 필요	○[지적사항] 인도의 경우 2023년도 42%, 2024년도 22.3%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D) 협의 단계에서 수원국의 비협조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제도개선	○ (계속사업 공정관리 강화) 인도 교환각서 체결('25.1.20.), 협의의사록 체결('25.3.7.) 완료 후 추가 기획조사('25.5월)를 통해 수원국과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수행자(PMC)와 계약체결('25.11.3.)을 완료함으로써 계속사업 지연 사유를 해소하여 예산집행률 100%를 달성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 ODA 사업을 현지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할 것		○ (신규사업 발굴 시 현지 수요 반영) 인도 현지 수요 및 인도 정부 측 관심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 승인과정의 지연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발굴단계부터 인도 주요부처와 긴밀히 협조중임. - 인도 측 수요 지속 모니터링을 위해 주한인도대사관, 인도 주요부처(인도 외교부, 재무부 등)의 국장급 이상 면담 및 네트워크 구축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7일 (R/D 체결일)	
(25)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실적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	○[지적사항] 사업현장에서의 수요와 파견 계획간의 불일치로 일부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저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에 있어 개발국과 파견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할 것	주의	○ (WFK 시행기관 사업) WFK 시행기관과 연2회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해 파견 달성율 제고 및 성과 협의를 실시하고, '26년도 예산의 경우 기관별 파견 가능한 수준의 예산 및 파견 목표치로 감액 조정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4일 (정례협의회 개최) ○ (글로벌협력의료진) 사업현장 수요와 파견 계획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3분기 중 글로벌협력의사와의 간담회 2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현장 수요조사, 선발절차, 복무관리,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완료, 2025년 하반기 국별 수요조사 및 선발전형을 진행하여 신규 의료진 선발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완료하였으며, 2026년 1분기 중 현장 파견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19일 (제도개선 완료일)	
(26)학위과정 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지적사항] 학위연수의 운영에 있어 이월액의 발생 규모가 점점 늘어나 최근 3개년 누적액이 약 16억 6,3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취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집행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	제도개선	○ 2025년도 학위연수 사업비 집행 절차 개선 - 2025년도 이월액 없음 ○ 조치완료일 : 25년 12월 5일 (이월예산 최소화 조치 완료)	조치완료
(27)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전반적 점검 필요	○[지적사항]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운영에 있어 2019년 이후 SEED3 진입 기업이 전무하여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CTS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ODA가 아닌 민간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갈 우려가 있음. ○TIPS 연계형의 사업공모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설정한 10대 분야와 동일함.	제도개선	○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의 세부유형 SEED 1,2,3는 모두 우리나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사업 예산항목으로, 관련 법률 및 예산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중. 다만, 민간의 SEED3 수요에 적극 대응하라는 요구로도 해석됨에 따라, CTS 목적성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 체계 개선과 2026년 SEED3 공모운영 계획을 수립함. - (CTS 목적성 점검) 기업 지원 관점(비즈니스)과 ODA 관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CTS의 성과 측정방식은 당해연도 종료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 특성 상 연간 종료사업이 매우 적어 비현실적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CTS의 목적성을 재확립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외교부는 CTS 사업 예산안 편성·집행 시 SEED3 단계 예산을 타 단계로 전용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SEED3 예산을 SEED1, 2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담은 '단계 간 전용 관리지침'을 제정할 것		(사회적가치) 성과를 균형 있게 창출하되, 최종 목표로서 글로벌 난제 및 개발효과성 강화'를 명료화 - (CTS 특화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ODA 관점(글로벌사회적 가치)과 기업 관점(비즈니스 창출)의 성과가 균형 잡히도록 반영된 계량·비계량 관리 성과관리 체계 개선 - (평가 역량 확보방안) 기업·기술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을 가진 기술평가 기관(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 구체화 및 공식 협업 체계 수립 - (SEED3 재개) 재확립된 CTS 목적성을 기준으로 SEED 단계별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기준 재정립 → SEED3 운영 재개를 통한 CTS 지향점 명료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6일 (성과관리 개선방안 수립일) - 2025년 12월 12일 (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일)	
(28)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약정금 교부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국제기구와 약정 체결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국제기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있음. - 특히 2024년 교부금 중 당해 연도 전혀 집행이 없는 사업도 있음.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에 매년 추가	제도개선	○ (실집행률에 따른 차년도 약정액 지급 검토)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5.5월 국제기구 사업약정서 개정을 통해 실집행률 관리 조항 강화 및 사업진척도에 따른 약정액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실집행률 일정수준 미달 시 국제기구측으로부터 잔액활용계획 접수 등 차년도 약정금 지급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교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내부 미집행 잔액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일 사업의 약정금 교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외교부는 신규 국제기구협력 사업 추진 시 약정서에 실집행 현황 보고 의무 및 집행 부진 시 교부금 조정 조항을 포함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26일 (국제기구 기본약정서 개정일)	
(29)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단순 물자지원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물자 및 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연차점검과 종료평가의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도개선	○ (가이드라인 개정)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전략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 단순물자지원 사업 추진 지양을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추진시 효과성 제고 방안을 면밀히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6일 (KOICA 전략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0)예산 집행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부적절	○[지적사항]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사무국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이미 무기계약직 2인 고용 및 3억 5천만원 상당의 자회사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코웍스의 인력 또한 증원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용역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더욱이 KDRT 사무국 관련 코이카 현원이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것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조치할 것	주의	○ (내부 인력 충원 완료) 직원 1명을 신규 충원(2025.11.21.)하여 2025년 12월 기준 KDRT 사무국은 총 6명이 근무 중 (팀장 제외, 무기계약직원 포함) ○ (위탁 계약 종료 예정) KDRT 사무국 행정업무 위탁계약의 계약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금번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 없이 내부 인력을 통한 업무 추진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31)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조치 이행 미흡	○[지적사항] 인도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고 외교부가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상 공약 이행에 사용되고, KDRT 관련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이 수행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조치할 것 ○외교부는 국회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 관련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제기구와의 사업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중 - 올해부터 시작된 UNDP, UNICEF, WFP 3개 중점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은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해당 국제기구 본부 및 현지사무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 -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해 향후 협력 대상 기구·규모 선정에 반영해나갈 예정 ○ 조치예정일 : 2026년 중	조치중
(32)인도적지원 용역 다빈도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 검토 필요	○[지적사항]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사무국 예산에서 KOICA 인도지원처 관련 홍보·연구·정산 용역 등 다수용역이 2024년에 집중하여 수행되었음. - KDRT 사무국 예산으로 인도지원처 전반 홍보 용역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및 범위를 일탈할 소지	제도개선	○ (예산과목구조 분류) 2026년 보조금 예산과목구조를 'KDRT(긴급구호) 역량강화'와 '인도적지원 네트워크 기반 강화'로 구분하여 예산과목과 집행내역 간의 합목적성 제고(KOICA 각목명세서 반영 완료/'25.11.6.) - 2026년 인도적지원 관련 홍보·연구·정산 등의 용역 예산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용역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관련 각종 용역 수행 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인도적지원 네트워크 기반 강화' 과목에서 사용 계획 ○ (용역별 성과지표 설정) KOICA 인도적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역의 입찰계획 및 계약 체결시 해당 용역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예정 - (사전타당성 조사 의무화)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연구용역의 경우 2026년 추진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KOICA 연구업무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 완료('25.12.10.) - (성과관리체계 수립) 각 용역이 네트워크 및 기반강화 제반 성과 제고에 기여하도록 성과관리·환류 체계 수립 완료('25.11.7.)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0일	
(33)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지적사항] 지난 11월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가입을 선언하며 연내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밝힘에 따라 동 사업에서 GAAHP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인도적지원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도적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 GAAHP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재난의 인도적	제도개선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 관련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제기구와의 사업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중 - GAAHP*은 당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주도한 핵심 성과사업이었으며, 관련 사업**은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맞게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세계식량계획:WFP)와 협력해 추진 *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G20 정상회의라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님. ○ GAAHP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동 지원은 정상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긴급재난이나 만성재산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과 같이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사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외교부는 정상공약 이행 관련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2024년 당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창설 -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해 25.8월 기준 101개국 가입 ** GAAHP 사업 : ▲(가나) 북부 지역 내 장기 가뭄의 영향을 받는 취약인구 지원 사업(500만불), ▲(케냐) 만성재난 지역 취약인구의 식량안보 개선 사업(500만불)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34)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 관련 체계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서도 외교적인 시정 활동 및 시정 결과 회신 등 협조가 미흡하였음.	주의	○ (간편 오류 신고 서비스)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 서비스」를 통해 오류 신고가 가능함. 외교부는 문체부와 협업, 동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외국 교과서 등 한국 관련 오류정보 배포·발견 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외 그 누구라도 간편하게 신고하고 오류에 대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간편 오류 신고 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오류시정 감독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근 5년간('21-'25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요청 내용을 총망라, 75개 재외공관(79개국 담당)에 시정 활동하도록 지시('25.4.25.)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시정노력하여, 요청받은 75개 공관 모두 시정 활동을 회신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25일	
(35)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필요	○[지적사항] 일부 재외공관은 일반수용비를 행사 내 식음료 구입, 차량 등 임차, 항공운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 집행을 도모할 것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 전재외공관에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25.10.23.) 각 공관 예산 배정에 앞서 세부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의 등 예산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친한외국인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23일	조치완료
(36)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지적사항]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대학교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제도개선	○ 시험준비반 운영 지원에 대해 재검토했으며,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시험준비반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임.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지원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외무영사직 시험대비반의 운영 지원에 사용되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표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심사할 것 ○외교부는 향후 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중간 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아울러,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 시험준비반 운영이 포함된 대학교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은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함. - 앞으로는 각 대학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 타당성을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중	
(37)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지적사항] 전문가 심리상담의 횟수 제한,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고위험군 케어의 최대 연 1회 제한 등 불만족이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남.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추후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외교부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할 것	제도개선	○ 2026년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대상공관 및 횟수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심리상담 진행 횟수, 고위험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중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38)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서비스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운영 개선 필요	○[지적사항]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의 집행률이 50% 안팎에 그치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됨. ○해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충원 지원 및 사업 추진 절차상 차질 등 반복으로 위기대응 체계의 실효성 저하 및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외교부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보강 및 해외안전망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영사콜센터 운영, 해외위기 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우선 집행 관리할 것 ○외교부는 불용액 발생 사유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한 사전경보제 및 부처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전세기 파견, 신속대응팀 파견 등 예비비적 성격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긴급대피 지원(전세기 운영)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2025년 50% 수준으로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 현실화 노력 지속 중임. ○ (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 2025년에 영사협의회를 6회* 진행하였으며 집행률 93% 달성함. * 제24차 한일(1.15.), 제22차 한중(3.13.), 제18차 한러(5.21.), 제7차 한-태국(7.9.), 제6차 한-필리핀(9.30.), 제2차 한-캄보디아(10.2.)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9일	조치완료
(39)교육평가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3년부터 '여권실무교육연구	주의	○ 양 사업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두 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여권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동일 기간 중 여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교육 효과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책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 - 교육과 평가 간 기능 분리가 미흡할 경우, 정책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실질적 환류(feedback)가 어려워 여권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 저하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으나, 여권실무교육센터 위탁운영사가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도 수행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 2025년도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은 타 업체로 선정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23일	
(40)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지적사항]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제도개선	○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7조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교부훈령] 등을 통해 설립 및 운영의 명시적 근거 旣마련 ○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데, 이를 위해 1년 동안 약 1억 5,000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하였으나 관계부처 심사과정에서 不 추진 결정 ○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현재 외교부 청사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센터 사무공간 및 회의실, 연구실 등으로 활용중이나, 청사 내 유휴 공간이 마련될 경우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예정 ○ 상기 내용들과 경제안보외교 현안의 논의·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등을 여야 간사실을 통해 소관 상임위 보고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31일	
(41)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지적사항] 재외공관 경제안보 전문관 예산이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채용이 가능함. ○인력 충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인 6명 중 일부만 채용된 상태임. - 2024년에는 미국(워싱턴),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각 1명씩 총 4명이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이	제도개선	○ 경제안보전문관 예산상 비목 문제(일용임금→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추가 편성)를 재정당국과 협의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허 ○ 국회 예산 증액 단계에서 전문관 제도의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기존 4억 → '26년 예산 6억 요구)했으나 미반영 ○ 상기 내용들과 경제안보외교 현안의 논의·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등을 여야 간사실을 통해 소관 상임위 보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전문관 채용 관련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것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31일	
(42)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지적사항] 외교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의 집행을 위해 20개의 다른 내내역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감액 규모가 50% 이상이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관행을 조성할 것	주의	○ 편성된 예산 하에서 행사를 개최코자 노력하였으나, ▲회의 일정 및 규모 확대 ▲UNEP 측의 회의 개최 추정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고, 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전용 및 세목 조정 진행 - 추후 사업비 집행 시 최초 사업 편성 취지에 걸맞게 한도 내에서 내실 있게 집행토록 노력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3)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예산 실효성 확보	○[지적사항] 주요국은 각자의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2024년 예산 불용률 40%로 제대로 된 전략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제도개선	○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인태지역·유럽 유사 입장국들과의 인태 관련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예산 8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2025년도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태 전략의 중요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계획 · 성과 · 현안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44)정보외교시대, 신속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필요	○[지적사항] 외교정보기획국 신설('24.5.28.)에 따른 예산 집행 순연과 해외 싱크탱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률이 78.6%로 저조함.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4.6.) 후속조치인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발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기조변화 및 '24.12. 계엄으로 인하여 발간이 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정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유한 외교정보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집행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외교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	주의	○ 국 신설에 따른 예산 수요·집행 소요시간 관련 사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 불용을 최소화하겠음. - 2024년도 결산 이월액 54백만원 중 49.6백만원 집행 ('25.6.13.) - 상기 집행액을 포함한 2024년도 실질 예산 집행률은 83.14% ○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24.6월) 기반, 폭넓고 신속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제1차 외교정보 교류·분석 협의회(24.7월) 개최, 정보국장 간 비화 유선 통신망 구축(24.9월) 등을 추진했고,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정세 보고서 작성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여타 우방국 외교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 및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공조체제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13일	
(45)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지적사항] 정착지원금 지급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성격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이나 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정착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외교부는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25.12.11)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정착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수요에 기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1일	조치완료
(46)재외공관 행정직원	○[지적사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8.7년에 불과하여 퇴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도개선	○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외교부는 그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인력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석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소요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시적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것 ○외교부는 국가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수요 예측, 순환배치 실시 및 고도화, 결원보충을 위한 한시정원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본급 인상, △주거지원 확대, △의료 지원 확대, △기타 복리후생 신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 행정직원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행정직원 결원율 감소 및 행정직원 근속기간도 지속 증가 ○ 외교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행정직원 증원을 위해 매년 전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 증원 소요조사 실시 중 - 다만, 당초 행정직원 제도는 현지 채용을 근간으로 마련되었고, 행정직원은 현지 재외공관이 개별적으로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행정직원을 직접 채용하는바, 공무원과 달리 재외공관 순환 근무도 미실시 ○ 외교부는 행정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외공관 외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직원 증원을 위해 노력 경주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47)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지적사항] 2021년부터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일부를 공관직원 교체여비 부족을 사유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매년 관행적으로 전용하여 사실상 교체여비의 일부로 집행해 왔음.	주의	○ '25년도 예산은 이전용 없이 국회가 승인한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25년 대비 '26년 예산을 감액(814백만원)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를 적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승인한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			
(48)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지적사항] 2024년 청년인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인턴 80%와 단기 인턴 2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단기 인턴의 채용 규모가 59%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함. ○단기 인턴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청년인턴 채용 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수립한 청년인턴 채용계획(장기 65%, 단기 35%)대로 '26년 인턴 채용 추진 예정 - '26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총 100명) : 장기 인턴(6개월) 65명, 단기 인턴(3개월) 35명 ○ 조치예정일 : 2026년 중	조치중
(49)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지적사항]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인원의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부족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자체 전용하여 집행함.	주의	○ 2026년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을 증액(1,528백만원→1,801백만원(+273백만원, +17.9%)) 편성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50)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지적사항]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 500만불 대비 23.6%인 118만불만 이행되었음. - 이는 편성환율 대비 시장환율 급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외교부가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자 기금 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GAVI에 대한 지원이 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반영되지 못하였음.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은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당초 지원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	제도개선	○ 외교부는 환율 상황 등 제반여건을 더 면밀히 살피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 ※ 2024년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500만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초 계획하였으나, 연중 환율 지속 상승으로 최종 118만불 지원 - 다만, GAVI측은 당해년도 우리측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원액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연중 협의하면서 지원액 확정), 이와 별도로 ACT-A 사업을 통해 5천만불을 기여해 GAVI측은 우리 지원을 높이 평가 중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51)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미정산에 따른 지연가산금 발생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에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항공사에 대한 수수료인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기금 폐지를 위한 외교부의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2025년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사업 이관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징수위탁 수수료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속하게 지급할 것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불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	주의	○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 조치를 위해 예산당국 및 공항공사측과 지속 협의 중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 관련 예산이 최종 반영됨. *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 조치 예산 약 116억원 편성 / 이중 징수위탁수수료 관련 예산은 약 6억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52)국별협력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지적사항]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 간의 차이가 큼. -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가 전체의 16.4%인데 반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는 전체의 82.9%임.	주의, 제도개선	○ (실소요 기반 예산편성) 2026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시, 연차별 실소요 반영을 위해 국별사업현황, 수원국 협조도, 행정절차 소요기간, 사업별 문제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 편성 ○ (사업 간 예산 조정 관행 개선) 개도국에서 다년도로 진행되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이는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의 자원배분 전략, 성과 달성도 등을 충분하게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ODA 현장의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차별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외교부는 국가별 협력사업(ODA)을 추진하면서 사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개별 사업간 예산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등의 관행에 대해 관련자 주의조치와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주의)		ODA 사업에 내재된 위험요소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집행 현장 정보 반영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경주 -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된 '중점협력국 수원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 * ▲수원국 ODA 수원 체계 ▲공여국·국제기구 지원 현황 ▲중장기 개발전략 및 정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협력전략(CPS) 작성 및 사업 유효성 판단 등에 활용 ○ (예산 집행관리 강화) 편성예산의 과다 전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KOICA 내부 예산교육 실시(25.5월, 10월)를 통한 집행관리 강화 노력 경주 ○ 조치완료 예정일 : 2025년 12월 29일 (신설지표 확정일)	
(53)사업 착수 전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면밀 파악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은 타지키스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KOICA 국가지원계획(CP)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1억 6,900만원 중 18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22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타지키스탄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기능 디지털	제도개선	○ 사전 조사(예비조사, 기획조사 등) 내실화 -「통합 사업발굴 지침」을 조기 배포(7월→4월)하여 현행 대비 3개월 이상 예비조사 기간 추가 확보 - 대형사업, 공공협력사업 등의 예비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수원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성조사* 진행 독려 * 예비조사 전, 또는 예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전환 이행 지원사업('24-'27/650만달러)'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성과관리 체계 등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실집행액이 전무하며 협의의사록 체결이 미완료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조사 단계를 강화할 것		- 사업제안서(PCP) 검토 의견을 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 심사 의견은 기획조사에 반영 강화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성과 달성도 등 이행점검 체계 고도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9일 (KOICA 사업발굴지침 배포)	
(54) 정세불안 수원국에 대한 ODA 집행관리 검토 필요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의 미얀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수원국 현지의 정세불안으로 인하여 다른 수원국에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사업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제도개선) ○외교부는 미얀마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정세를 전면 재평가하고 사업의 존속 여부와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제도개선)	제도개선	○ 미얀마와 같은 정세 불안 지역의 경우,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상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국제기구 등 타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경주 -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사업 집행계획에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외교부 배포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에 수원국 위험 평가 및 관리 방안과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제도 강화 - 또한, 코이카 모니터링 체계의 일부인 분기업무보고 시 사업추진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관리 유도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3일 (KOICA 분기업무보고 양식 개정 안내)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외교부는 수원국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 구조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사전 설계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제도개선)			
(55)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 준수 필	○[지적사항]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를 위한 매체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광고 시행일 전에 의뢰를 해야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용역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절차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	○ '25년 용역 제안요청서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가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음. ○ '25년 제3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광고 시행일('25.8.11.)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요청을 완료('25.8.5.)하고, 광고 종료 후 재단 측 요청에 따라 정산 및 행정절차 완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5일	조치완료
(56)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지적사항] 동 사업은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마련과 기획조정실 소관 운영 기본경비 마련을 위한 것임 - 국외여비로 당초 예산을 초과한 148억 4,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의 28.4%인 32억 8,900만원이	주의	○ 2025년도 교체여비는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예산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로 전년 대비 약 35억이 증액된 13,916백만원이 편성되어,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 이·전용 사례는 없음. 다만 환차손 및 실소요액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 부족액은 세부사업 내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충당함. - 항공·해상운임의 경우 중동정세, 홍해사태 등 국제 정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부족하여 예산 전용과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 매년 관련 예산이 실집행액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 감안 필요 -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주요 항공사와의 항공운임 우대계약 지속 확대, △각 지역별 이전비 기준액 산정을 통한 이전비 자체 상한선 설정,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 중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7)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기금운용계획 일관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여금 수입 감소와 적립금 급감이라는 재정 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2024년도에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구조조정 또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에 따른 것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허용됨을 감안할 때, 재단은 기금운용계획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설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통하여 '24년 대비 '25년 기금 지출 규모를 117억 삭감했으며, '26년에도 39억을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함.('24년 687억 → '25년 570억 → '26년 531억) ○ 또한 ▲기금집행 전망 조사, ▲이슈 대응 회의 개최 등 기금 집행 자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횟수를 최소화하였음.('23년 7회 → '24년 5회 → '25년 4회) ○ 향후에도 ▲사업 전반 지속 점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기금 고갈에 대비하도록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기금 운용계획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8)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은 한일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협력 및 인적교류·경제 등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에 따라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투명함. - 당초 2022년 한 · 일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 아래 개최하기로 계획했던 1차 포럼도 순연되어 2024년 5월에 개최되는 등 2025년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 과정이 계획 대비 지연 · 축소된 면이 있음. - 또한 2025년 추진계획도 당초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신협력비전 제시'에서 '연내 추진 검토' 및 '향후 한일관계발전 방향 제시'로 수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이 목표한 시점에 도출	주의	○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소관 사업 전반의 예산 집행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25년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집행률은 80%로 '24년 집행률(67.5%) 대비 크게 제고되었음. ○ 2026년에는 소관 사업 전반의 예산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관련사업 성과 도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되지 못할 우려 존재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할 것			
(59)다른 부처와 공동 사업 추진시 계약당사자 및 예산 소관 일치 필요 등	○[지적사항] 국방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고위급회의'와 관련한 일반용역 계약에서 외교부만이 계약당사자임에도 국방부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4년에 종료된 광고의 정산대금 2,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이는 2024년 11월에 광고사업이 원활히 종료되었음에도 대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다른 부처와 공동	주의	○ 일반용역 예산이 외교부, 국방부에 분할 편성되어 있어, 외교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외교부·국방부 간 MOU 및 예산처리원칙* 에 근거하여 REAIM 관련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으나, 향후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할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체결 예정임. * 국방부는 국방부 소관 예산 집행계획 관련 사항을 외교부에 위임 ○ 2024년 광고료 정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별도의 정산 요청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방식인데, 당시 동 재단의 시스템상 미정산대금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음. 향후 정부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대금을 면밀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진행 사업에서 계약당사자와 예산의 소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외교부는 업무수행 시 연내 집행금액을 면밀하게 살펴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0)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 필요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자·장비 지원·현금지원 등을 하는 사업임. ○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대한 국제부담금 납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제외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하여 외교부 소관의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교부는 2024년에 내역사업 해외긴급구	제도개선	○ 외교부는 현행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OCHA 및 CERF에 대한 국제부담금을 향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시켜 관련 심의 및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 - 다만, OCHA 및 CERF에 대한 분담금은 그 특성상* 인도적 지원 예산 내에 편성하고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기구에 대한 영향력 및 기여 성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 내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부터 국제기구분담금법상 심의 및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 * OCHA는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각 주체(정부, 국제기구, NGO 등)간 협조 강화 및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 즉 인도적 지원 관련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며, CERF는 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수의 공여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실제 사업을 이행하는 국제기구 등에 지원하는 기금 ○ 조치예정일 : 2026년 상반기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호에서 CERF와 OCHA에 총 312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대한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			
(61)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지적사항]외교부는 내내역사업인'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의 수행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학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의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할 것	제도개선	○ 향후 사업 수행 대학교 선정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공고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6년 중	조치중
(62)타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은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	제도개선	○ '25.12월 외교부 영사안전국 조직 개편 계기에 영사콜센터의 명칭을 '영사안전콜센터'로 변경하여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더욱 차별화함.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사업과 기능 및 대상 측면에서 중복되는 성격을 가짐. ○두 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는 모두 민원상담과 사건사고 대응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큼. ○[시정요구사항] 외교부의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기능·명칭이 유사해 국민들의 혼동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 신고 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외동포청의 365 민원콜센터와 명확히 차별화해 나갈 것		○ '25년 12월 외교부 영사안전국 직제 개정으로 영사안전콜센터를 직제화하고 공무원 정원 7명을 확보함. - '26. 2월 중 상담실 내 상담관 지도·관리 담당 공무원 4명을 24시간 교대로 배치하여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중	
(63)계약기간 조정을 통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지적사항] 외교부는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지 않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제도개선	○ 2025년부터 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 사업 기간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계약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해소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2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12.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연례적 사고이월을 해소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